

#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법제연구 : 제도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법체계  
개선방안

김은정





#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법제연구 : 제도

## -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법체계 개선방안 -

- Legal Study for Improvement of SDGs Implementation System -

연구책임자 : 김은정(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Kim, Eun-Jung

2018. 10. 31.



## 연 구 진

연구책임	김은정	연구위원
심의위원	이순태	선임연구위원
	박광동	연구위원
	조용성	고려대학교 교수



## 요약문

### I. 배경 및 목적

- ▶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2030은 ‘사회-경제-환경’ 을 기준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발전을 고려하여 현재세대의 발전 수요를 충족하여야 한다는 원칙하에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한계를 바탕으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제시
  - MDGs는 저개발국 빈곤퇴치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00년부터 이행되어 왔으나, 그 범위의 한정과 개발도상국의 의견 배제 등의 한계 등으로 개선 필요성 제기
- ▶ 우리나라는 2016년 SDGs 관련 보고서를 UN에 제출하면서 국내의 새로운 이슈로 사회 형평성 문제와 성평등에 관한 사항을 제기하였고, 관련 이행방안 마련에 있어 전부처의 협업을 바탕으로 한 유기적 연계를 강조
  - 이에 우리 정부는 SDGs 2030에 관하여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과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자 노력 중임
- ▶ SDGs 목표에 맞는 사회-환경-경제 전 부문을 균형있게 포함하면서 세부 이행방안을 통하여 양질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

## II. 주요 내용

▶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는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있으나, 현재에는 미래 세대를 위한 현재 세대의 개발 범위와 사회-환경-경제 부문간의 균형있는 발전이라는 점에서 그 개념이 통용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지속가능발전 2030은 기존의 개발도상국들에게만 적용되었던 MDGs의 성과와 한계에 관한 개선 내용을 토대로 전 국가 및 전 부문을 위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음
-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내 제도로는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대표적이며, 이 외 각 분야별 상세 내용은 개별법에서 다루어지고 있음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경우에는 2009년 제정되어 국내 기후변화 및 에너지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법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 동법 제정에 따라 구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현행과 같은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
- 최근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모색을 위하여 기후변화대응법을 제정하고, 아울러 「지속가능발전법」을 기본법으로 개정하는 입법안이 발의되었으며, 논의 중임
  - 이러한 제·개정의 논의의 경우 그 한계는 현행 법체계하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제안된 법률안에 조금 더 구체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큰 변경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제·개정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

▶ **SDGs 국내 이행체계의 경우에는 정책집행·이행인력 및 예산의 적정성·SDGs 성과 점검 및 환 체계**

- 정책집행의 경우에는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에 따른 집행실태 분석에 따라 각 부처별 전략이행과제들을 통하여 그 이행계획과 향후 성과등에 관한 부분을 평가



- 이 경우 상위목표나 세부과제간 우선순위를 선정하거나, 목표의 불균형 달성을 방지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와 같은 관리부처의 역할이 중요
  - 현재는 환경부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국무조정실 산하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하여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립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SDGs 관련 업무 담당 인력 및 예산의 적적성에 있어 현재의 경우 담당자의 수가 미흡하며, 이는 관련 법체계 정비를 통한 개선 필요
- 현재에는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분야 업무가 수행되고 있으며, 관련 부처 또한 그 업무를 주 업무로 두고 있지 않기에 체계적 지원 혹은 관리가 부족한 상태임
  - SDGs의 경우 부처간 협업 및 연계가 중요하며, SDGs 지표 등의 경우에도 한 분야나 부처 업무가 아닌 통합된 성과가 반영되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와 조정 업무가 중요
- 성과점검 및 환류체계에 있어서 UN SDGs 달성 목표가 연계되어 있고, 성과에 해당되는 지표의 경우 이에 대한 통합적 판단과 그 성과를 위한 체계적 계획수립 및 추진이 중요
- 그 통계적 수치가 지표와 연관되는 만큼 통계청과의 협업 및 관련하여 조율하는 부처 등 관리체계 수립이 전제되어야 함
  - 국내 성과를 활용할 지표 개발에 있어서 이행전력 연계와 이행전략 및 세부이행 계획 수립 등 기획단계에서부터 성과지표에 대한 고민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환류체계에 있어 이에 대한 평가와 적절한 보완 및 개선 등의 조치가 제도화되어 운영되어야 하며, 각 부처별 강제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 시급

### Ⅲ. 기대효과

- SDGs 2030을 위한 목표 수립 및 평가 체계 등의 개선을 위해서는 세부 영역별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하여 현행 관련 국내 법체계를 분석하고, 향후 제도적 관점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가 필요
  
-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이행방안 논의 중인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SDGs 목표들을 고려하여 국내 사회-환경-경제에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 법체계 개선 방안 제시

▶ 주제어 : 지속가능발전, 사회-환경-경제, SDGs, MDGs,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Abstract

### I. Backgrounds and Purposes

- ▶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2030 consist of 17 goals and 169 sub-goals that have been set within the limits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according to the principle that the current generation's demand for development should be met in consideration of development in the social, environmental, and economic sectors for future generations.
  - The MDGs have been implemented since 2000 to eliminate poverty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n underdeveloped countries. The need to improve the MDGs has been pointed out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ir scope and the failure to listen to the opinions of the developing countries.
  
- ▶ In its submittal of an SDG report to the UN in 2016, the ROK pointed out new domestic issues such as social equity and gender equality and stressed the need for closer cooperation among the government ministries in preparing means of addressing and dealing with such issues.
  - The ROK government aims to hold systematic discussions about the establishment of the SDGs 2030 and how to implement them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 ▶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related systems with which to come up with detailed methods of implementing them, and to develop the social, environmental, and economic sectors in a balanced way that is appropriate to the SDGs.

## II. Major Content

- ▶ The meaning of “sustainable development” has been interpreted differently in different periods and different countries, but at present it can be said to be focused on the scope of the current generation’s development for future generations and the need to achieve balanced development among the social, environmental, and economic sectors.
  - The SDGs 2030 are differentiated as they comprise universal and comprehensive goals for the entire country and all sectors based on improvements of the results and limitations of the MDGs, which were applied only to existing developing countries.
  - The country’s main systems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clude the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Detailed contents on each sector are provided in the individual laws.
    - As regards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enacted in 2009, it has served as the basic law on sustainable development related to domestic climate change and energy, etc. Following its enactment, the previous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as replaced by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ct.

- Recently, a legislative proposal was made for both the enactment of a law to cope with climate change and the revis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ct into a framework act for address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limate change more positively. The relevant discussion is now under way.
  - It is necessary to engage in more specific discussions about the aforementioned enactment or revision, as they are specific about the content dealt with in the current legal system.
  
- ▶ Propriety of policy execution, relevant personnel, and budget concerning the SDG-related domestic execution system; checks of SDG results, and feedback system
  - As for policy execution, an evaluation of the execution plan and future results has been conducted through the strategic subjects of execution of each ministry based on the Third Basic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In this case, it is important to designate a ministry to serve as a control tower that sets the order of priority among superordinate goals and sub-goals and prevents imbalances in the achievement of such goals.
    - At present, a review is under way to launch the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will report directly to the President, by integra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ttee, which reports to the Environmental Minister, and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Green Growth (PCGG), which is controlled by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into one entity.

- At present, the number of personnel in charge of SDG-related business is insufficient, making it necessary to rectify the matter by revising the relevant law.
  - At present, all SDG-related business is carried out under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and the relevant ministries do not regard it as their main business, thus resulting in a lack of systematic support or management.
  - With regard to SDG-related matters,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relevant ministries is essential. Reciprocal management and coordination concerning the SDG-related indexes is also important, as it needs to reflect the integrated results of measures and policies implemented by diverse sectors and ministries.
  
- As regards the system of checking results and feedback, measures for achieving the UN SDGs should be interlinked. As for results-related indexes, it is important to form an integrated judgment and set up a systematic plan for achieving good results.
  - As statistics are linked with the relevant index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of cooperation with Statistics Korea and joint management with the relevant ministries.
  - In the development of indexes that will use domestic results, consideration needs to be given to performance indexes including linkage to past records on performance and the establishment of a plan for detailed execution from the planning stage.
  - Such measures as evaluation of the feedback system and adequate improvements should be institutionalized, with each ministry taking the appropriate such measures.

### III. Expected Effects

- In order to establish the objectives of the SDGs 2030 and improve the relevant evalu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current domestic legislation to attain SDGs in subcategories and to come up with effective methods of improving them from the perspective of institutions.
-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in which SDG execution methods are being discussed worldwide,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 way of improving the domestic legislation so as to bring about substantial effects in the social, environmental, and economic sectors in consideration of the SDGs.

▶ Key Words : Sustainable development; society-environment-economy (social, environmental, and economic sectors); SDGs; MDGs; The 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CSD)





# 목차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법제연구 : 제도  
-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법체계 개선방안 -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요약문 .....	5
Abstract .....	9

## 제1장 서론 /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0

## 제2장 SDGs의 논의 현황 및 국내 이행체계 / 23

제1절 SDGs의 의의 및 목표 체계 .....	25
1. SDGs 의의 .....	25
2. SDGs 세부 내용 .....	28
제2절 SDGs 국내 이행체계 .....	33
1. SDGs 이행을 위한 추진 체계 .....	33
2. SDGs 성과 점검 및 환류 체계 .....	41

## 제3장 SDGs 국내 이행체계 및 해외 사례 / 45

제1절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	47
1. 지속가능발전의 의의 .....	47
2.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내 제도 .....	50
제2절 주요 국가의 SDGs 제도 현황 .....	55
1. 독 일 .....	55
2. 영 국 .....	59
3. 캐나다 .....	61

# 목차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법제연구 : 제도  
-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법체계 개선방안 -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제4장 SDGs 국내 이행을 위한 개선방안 / 65

제1절 지속가능발전 이행환경 개선방향 .....	67
제2절 델파이조사 결과 분석 .....	71
1. 델파이조사 개요 .....	71
2. 델파이조사 결과 .....	72
제3절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안 .....	75

## 제5장 결 론 / 89

참고문헌 .....	95
부 록 .....	101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는 ‘사회-경제-환경’을 기준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현재세대의 발전 기준과 그 범위에 있어 전 부문을 고려하기 위하여 기존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새롭게 2016년부터 2030년까지의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말한다. 기존의 MDGs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관련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이 운영되어 왔다면, 현재 논의 중인 SDGs 2030은 그보다 폭넓게 전 회원국가를 대상으로 전 부문에 있어 각국의 정세에 맞는 발전 원칙과 그 성과를 도출하도록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SDGs의 17개 목표는 사회 형평성,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보전, 그리고 미래세대를 고려한 경제성장 등 다양한 부문을 다루고 있다. 이는 UN에서 식량안보, 기후변화, 육상 생태계 및 해양에 관한 부분을 2017년에 추가하였고, 에너지문제를 필두로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와 생산활동 등에 관하여는 2018년에, 그리고 2019년 과제로는 평화와 포용을 강조한 사회, 양성평등과 이에 관한 교육 확산, 그리고 양질의 보건 등에 있어서의 관계 등이 새롭게 검토되어 제안됨으로써 반영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각 회원국은 2년 단위로 자발적 평가를 통한 성과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6년 UN에 제출한 국별 보고서에서 빠르게 성장한 산업부문에 따른 산업화의 부작용과 같은 문제,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의 과열화, 노령화 문제와 일자리 등 사회양극화문제, 대도시 인구집중 및 저출산·고령화 등의 사회문제를 제기하

면서, SDGs 2030에 대한 평가 지표에 있어 관련 22개의 주무부처와 협업하여 새로운 국가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이에 2016년 1월 제3차 지속가능발전계획 수립과 140대 국정과제 등에 SDGs 관련 내용을 포함하였다.

SDGs 2030의 경우 및 주요 국가의 경우에는 그 이행 목표 수립에 있어서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통로를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평가지표 개발에 있어서도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단지 정량적인 수치만의 성과가 아닌 정성적인 실질적 개선과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의 경우 단기간에 달성하고, 1회성으로 종료되는 부분이 아닌 만큼 우리 또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실질적 개선을 만들어 내기 위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따라서 동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과 세부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고, 주요 국가의 이행체계 현황 등을 비교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국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전문가에게 델파이조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국내 SDGs 2030의 평가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인 제도적 관점의 개선안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의 사회·경제·환경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개선에 이바지 하여 국내의 사회적·경제적 형평성 도모와 환경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동 연구 수행에 있어서 MDGs와 SDGs 간의 논의 배경과 주요 세부 사항을 살펴보고, 국내에서의 지속가능발전 논의 동향과 관련 제도를 분석하기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SDGs 이행방안 수립에 있어서 운영 현황과 지표개발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고, 주요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 및 운영 절차 등을 바탕으로 국내 제도 개선안에 참고한다. 개선안 마련에 있어서 현행 제도 운영에 관한 델파이조사를 통하

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인식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에 관한 의견을 분석하여 이를 제도 개선안에 반영한다.

동 연구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국내외 자료를 분석하고, 주요 국가의 사례에 있어서도 해외 문헌 및 국내 문헌을 중심으로 정리하기로 한다.





## 제2장

# SDGs의 논의 현황 및 ● 국내 이행체계

제1절 SDGs의 의의 및 목표 체계

제2절 SDGs 국내 이행체계



## 제2장

# SDGs의 논의 현황 및 국내 이행체계

## 제1절 SDGs의 의의 및 목표 체계

### 1. SDGs 의의

UN에서는 국제 사회에 있어 지속적으로 문제화 되었던 빈곤, 환경 및 인권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논의를 계속하여 왔으며, 이에 관한 논의의 결과를 2000년 UN 총회에서 채택하여, 2001년에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라는 이름으로 발표하였다.<sup>1)</sup> MDGs가 2015년까지 그 목표 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는 MDGs의 8개 주요목표와 18개 세부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이후 2007년에 세부목표 3개와 지표 12개가 추가되어 총 8개 목표와 21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었다.<sup>2)</sup> MDGs는 그 대상이 개발도상국의 빈곤 및 기아의 퇴치, 인권에 있어서 양성평등의 증진과 여성인권 신장, 질병 등 보건 분야의 향상으로 유아사망률 감소 및 모자보건의 증진과, 말라리아 등 질병 퇴치 및 환경에 있어 지속 가능한 개발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이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MDGs는 개발도상국의 빈곤과 인권 신장 등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경우 하루 1.25달러 미만인 빈곤층의 비율이 1990년 47%에서 2015년 14%로 감소하였고, 초등학교 취학률의 경우에는 2000년 83%에서 2015년 기준 91%까지 개선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한다.<sup>3)</sup>

1) SDGMUN, 2016-2030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no.1 SDGMUN, 2015, at 3.

2) 박성현,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UN의 밀레니엄 발전 목표(MDGs)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관한 고찰”, 품질경영학회지 42(4), 539면.

3) MDGs 최종보고서(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15)

아울러 이러한 개선은 단시간 내에 개선되거나, 종결될 수 없기에 지속적으로 논의와 이행이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MDGs가 SDGs로 전환되어 그 논의의 범위 확장에 그 의미가 있다.<sup>4)</sup>

하지만, MDGs의 경우 국제 사회, 특히 개발도상국의 빈곤과 인권 등의 문제에 있어 개선의 효과가 있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으나, 그 목표 설정이 선진국 중심으로 만들어짐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수요와 참여가 미흡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있었으며, 이에 개발도상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개선 의지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빈곤과 인권 문제에 치중하여 지속가능발전 등 환경의 문제에 있어 그 논의가 활발하지 못했다는 점 또한 MDGs의 경우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제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5)</sup> 이 밖에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불평등 문제나 국제 공조에 있어 개도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sup>6)</sup>

2015년에 종료되는 MDGs를 이어 새로운 목표 수립과 그 이행을 위하여 2012년부터 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15년 9월에 MDGs를 연속하여 이행할 새로운 이행목표로 SDGs가 발표되었다.<sup>7)</sup> SDGs는 기존 MDGs의 한계 등으로 지적된 비판을 반영하여 UN의 회원국인 193개의 국가의 전원 합의를 목표로 약 5년간 회원국가 및 관련 기업과 시민단체 등 전 부문의 의견을 위한 논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펼쳤으며, MDGs를 이어나가면서 새로운 이슈를 목표로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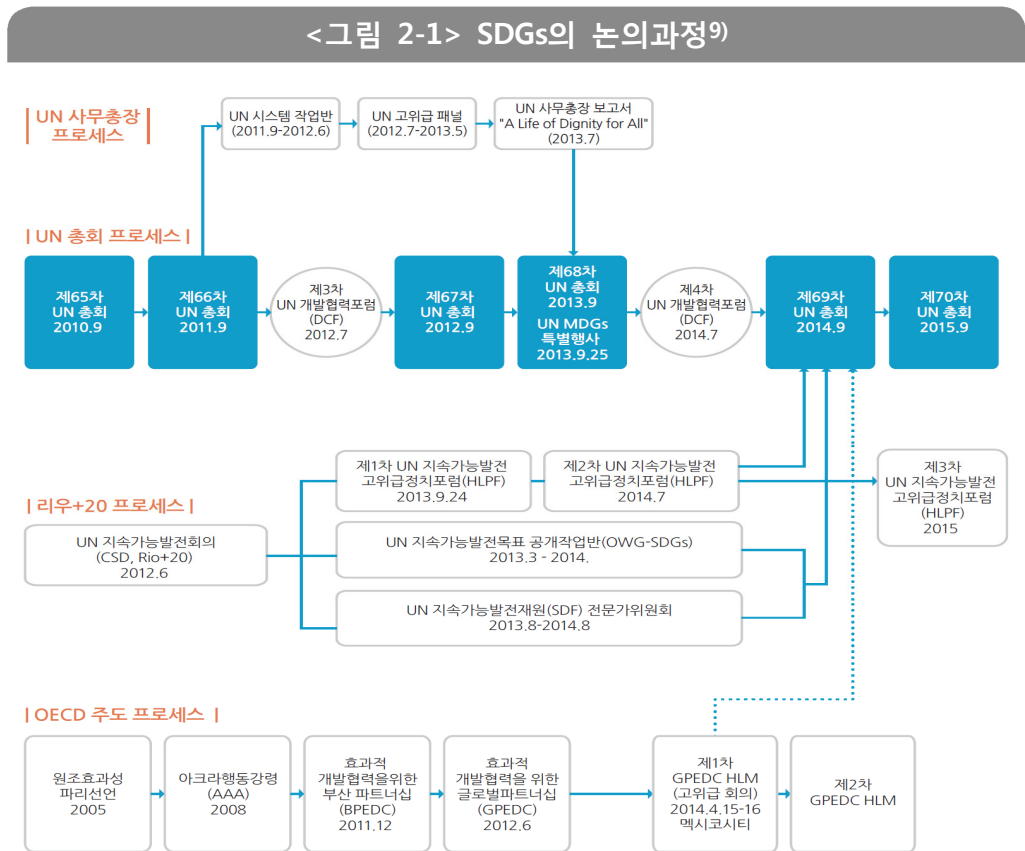
4) 김태완·이주미,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추진 전략과 주요 내용: 빈곤 및 불평등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16 (10), 79-80면.

5) 박성현, 앞의 논문, 535-6면.

6) ① 사회발전과 인간개발을 강조함으로써 경제발전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 ② 개도국 내의 MDGs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의 문제나 개도국의 필요 및 역량 등 개도국에 대한 고려 부족, ③ 경제상황과 기후변화 등 국제적 현상이나 원조 분절화나 정책일관성 부족 등 공여국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한 고려 부족, ④ 개도국에게만 MDGs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여하여 MDGs의 이행이 개도국만의 책무라는 잘못된 인식 제공, ⑤ 정량화 된 평가로 인해 개발의 ‘질’에 대한 고려 부족 등이 제시되었다(임소진, 국제사회의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수립동향 및 한국 ODA의 기여방안, KOICA 개발정책 포커스 (14), 2면).

7) 김태균, SDGs 시대의 출범과 한국개발협력의 당면 과제, 국제개발협력학회동계학술대회, III-3세션, 752면.

따라서 SDGs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등 모든 UN의 회원국가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현실에 맞는 국제적 목표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sup>8)</sup> 무엇보다 빈곤과 인권 등 사회 부문에 집중했던 MDGs와 달리 경제·사회·환경 세 기준을 중심으로 각 부문 간의 균형을 고려한 목표와 이행방안을 수립하여 국제적 수준을 맞추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MDGs보다 그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SDGs 논의과정은 아래 그림 <그림 2-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8) 박성현, 앞의 논문, 537면.

9) 이성훈, Post-2015 개발의제란 무엇인가: 한국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Issue Brief, 한국개발협력민간협의회·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2014, 19면.

이러한 SDGs는 MDGs가 종료된 이후인 2016년부터 적용되며, 그 기한은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달성하여야 할 세부 목표와 이행지침 등을 담고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에 관하여는 해석상 다양한 논의가 있으나, 공통적인 내용으로는 “미래 세대를 고려한 현재 세대의 발전으로 환경과 경제 및 사회 각 분야 별 균형있는 발전”으로 정리할 수 있다.<sup>10)</sup> 특히, UN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 경제, 환경’의 각 부문별 균형있는 발전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sup>11)</sup> 아울러 SDGs의 기본정신에 관하여는 ‘소외되는 자가 없도록 하는 것(No one is left behind)’으로 이행과정에 있어서의 포용성의 강조라고 보기도 한다.<sup>12)</sup>

## 2. SDGs 세부 내용

### 가. MDGs와 SDGs의 구분

MDGs와 SDGs를 살펴보면 MDGs의 경우에는 8개 목표와 21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던 것에 반하여 SDGs는 기존의 목표보다 11개가 추가되어 17개 목표로, 세부목표에 있어서는 148개가 추가된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10) 지속가능발전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담론으로 시대적 조류와 상황에 따라 활용 방법과 개념이 바뀌고 있으며, ① 세대간 형평성 ② 삶의 질 향상 ③ 사회적 통합 ④ 국제적 책임의 원칙 하에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근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지속가능발전포털, <http://ncsd.go.kr>). (2018.10.24. 방문)

11) 김인 외 24인,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등에 관한 연구, 환경부, 25면.

12) SDGs의 의의는 SDGs를 담고 있는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보고서에서는 SDGs가 21세기 인류와 지구를 위한 헌장이며(51항), 향후 15년간 인류,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의 5개 가치를 바탕으로 인류와 지구를 위해 주요영역의 활동을 촉진할 것(서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 과정은 회원국, 국제기관, 전문가, 중앙과 지방, 시민사회, 민간, 학계 등 모든 이들을 포함하며, 반드시 성공할 것(52항)임을 밝히고 있다(오정화·박영실,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에 대한 국가통계 대응방안 수립, 통계개발원, 3면).

**<표 2-1> MDGs와 SDGs의 구성요소별 비교<sup>13)</sup>**

구분	MDGs(2001~2015)	SDGs(2016~2030)
구성	• 8개 목표, 21개 세부목표	•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
대상	• 개도국	•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를 포함(보편성)
분야	• 빈곤층과 의료 부재 등 사회 분야 중심	• 환경 등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외에 경제발전 등을 고려하여 경제·사회·환경을 축으로 지속가능발전 고려(변혁성)
참여	• 정부중심	• 정부, 시민사회, 민간 등 모든 이해관계자 참여(포용성)
재원	• ODA 재원 중심	• ODA를 포함하는 공공 및 민간 재원

SDGs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관련 국가와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논의 과정을 거친 후 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방안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MDGs에서 구체화되지 못했던 환경부문과 타 부문과의 균형을 맞추고자 한 부분 또한 세부목표의 증가가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표 2-2> MDGs와 SDGs의 목표별 비교<sup>14)</sup>**

MDGs	SDGs	비교
• Goal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 Goal 1. 모든 지역에서 빈곤퇴치 • Goal 2. 기아 해소, 식량안정성 확보 및 지속가능농업	• 기아(hunger)와 식량문제, 영양 상태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 • 농업 분야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개선책 모색

13) 지속가능발전포털(<http://ncsd.go.kr/app/sub02/20.do>) (2018.10.24. 방문)

14) 지속가능발전포털([http://ncsd.go.kr/app/sub02/20\\_tab3.do](http://ncsd.go.kr/app/sub02/20_tab3.do)) (2018.10.24. 방문)

MDGs	SDGs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oal 4. 유아사망을 개선</li> <li>• Goal 5. 모성보건 개선</li> <li>• Goal 6. AIDS, HIV 및 말라리아 등 전염병 퇴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oal 3. 모든 연령층의 모든 사람들의 건강한 생활과 웰빙 보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에는 전염성 질병으로부터의 보호 방안에 관한 대응이었던 것에 반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 보장을 모색</li> <li>• 그 취지와 달리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검토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oal 2. 기초교육 보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oal 4. 양질의 교육 및 평생 교육 촉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적인 교육 보장을 목표로 하던 부분을 질적인 수준과 평생 교육 체계로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oal 3.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 향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oal 5. 성평등 및 여성능력 배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oal 7.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oal 6. 물자원의 보편적 공급 및 수질 등 위생 관리</li> <li>• Goal 7. 에너지 안보에 관한 보장</li> <li>• Goal 11. 안전하고 회복력을 갖춘 도시와 환경조성을 통한 지속가능성 보장</li> <li>• Goal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통한 산업 안정화</li> <li>• Goal 13. 기후변화 적응력 확보</li> <li>• Goal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수생태계 보장</li> <li>• Goal 15. 지속가능한 생태계, 산림을 위한 관리 및 사막화 등 토지 산성화 방지, 생물다양성 보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io+20에서 논의되었던 환경관련 쟁점들이 세부 목표로 구체화되어 제시</li> <li>•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있어 각국의 활동 및 책임에 관한 부분은 여전히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DGs에 신설된 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oal 8.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 고용 시장 및 양질의 일자리 보장</li> <li>• Goal 9.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산업화 및 혁신 성장</li> <li>• Goal 10. 국내외적인 불평등 해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이슈 외에 경제부문과 사회 부문에 있어서 성장 및 평등의 개념이 추가되었으며, 고용시장에 있어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통한 질적 개선 포함</li> </ul>



MDGs	SDGs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oal 8. 공생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oal 16. 안정과 포용성이 보장된 사회 확대 및 이를 위한 관련 기관 등 조직 구축</li> <li>• Goal 17. 전 지구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DGs 이행을 바탕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의 중요성 및 그 성과 강조</li> </ul>

### 나. SDGs의 주요 내용

SDGs의 17개 목표는 세부적으로 사회, 경제, 환경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행 수단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각 분야별 169개의 세부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표 2-3> SDGs 17개 목표의 주요내용<sup>15)</sup>

번호	SDGs의 목표	주요내용
1	No Poverty	• 전 지구적 모든 지역에서, 어떠한 형태든지 빈곤 퇴치
2	Zero Hunger	• 지속가능한 농업 등을 바탕으로 한 식량자원 확보와 공급을 통한 기아 퇴치
3	Good Health and Well-being	• 모든 연령층의 건강과 삶의 질 보장
4	Quality Education	• 기초교육을 포함한 양질의 교육과 평생교육 보장
5	Gender Equality	• 성평등과 여성 능력 강화
6	Clean water and Sanitation	• 깨끗한 수자원 확보와 위생 관리

15) 김태완 · 이주미, 앞의 보고서, 78면.

번호	SDGs의 목표	주요내용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	• 에너지 안보와 친환경 에너지 확대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산업과 혁신 성장과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
10	Reduced Inequalities	• 국내외 불평등 줄이기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소비와 생산 활동
13	Climate Action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이행
14	Life Below Water	•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 등 해양 보호
15	Life on Land	• 지속가능한 토지 확보를 위하여 산림과 생태계 등 보호
16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	•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 마련
17	Partnership for the Goals	• 지속가능성 보급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이러한 SDGs의 17개 목표들은 사회·경제·환경의 부문의 관한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이행 방안으로 볼 수 있으며, 각 부문과 관계된 목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세부 목표들 또한 MDGs의 목표 안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부분으로도 볼 수 있으나, SDGs의 경우 그 중심 이슈를 사회·경제·환경으로 구분하고, 관련 세부 목표를 구체화하여 균형있게 달성하고자 했다는 부분이라 향후 그 성과에 있어 기대되는 측면이라 볼 수 있다.

<표 2-4> SDGs와 사회·경제·환경 부문과의 관계<sup>16)</sup>

부문	SDGs 17개 목표 중 관련 목표
사회	• 1,2,3,4,5,10번 목표
환경	• 6,11,12,13,14,15번 목표
경제	• 7,8,9번 목표
국제 협력 및 공조	• 16,17번 목표

## 제2절 SDGs 국내 이행체계

### 1. SDGs 이행을 위한 추진 체계

#### 가.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국내에서는 MDGs 목표 달성을 위하여 2006년부터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 왔다. MDGs 하에서는 이러한 이행계획은 5년 단위로 운영되었기에 제1차 이행계획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제2차 이행계획 수립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로 운영되었다. 이후 SDGs 체제 하에서 제시하는 목표 달성에 관하여는 2016년에 동년부터 2035년까지의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및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지금도 관련 이행계획 및 성과 등을 평가하며 관련 세부 사항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 수립의 근거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적 합의를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아울러 「지속가능발전법」 제14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년마다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이

16) 김태균 외, 앞의 보고서, 54면 재구성.

러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구성·운영되며, 소속은 환경부장관으로 민간 위원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하며, 그 주된 기능은 다음과 같다.<sup>17)</sup>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변경의 사전 심의
- 이행계획의 협의·조정
- 국가이행체계의 추진상황 점검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검토
-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수립 및 지속가능성의 평가업무
-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
- 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등
-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 등
-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정책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해결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에 대한 자문

따라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2011년에는 사회적 형평성과 기후변화대응, 환경자원의 지속성 강화를 위한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4대 전략, 25개 이행과제로 구성된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1~2030)을 수립하였으며, 2016년 1월에는 “환경·사회·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비전으로 하여 4대 목표(건강한 국토 환경, 통합된 안심 사회, 포용적 혁신 경제, 글로벌 책임 국가), 14개 전략, 50개 이행과제로 구성된 ‘제3차 지속가능발전목표(2016~2035)를 수립하였다.<sup>18)</sup>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4대 전략 분야로 ① 환경 및 자원의 지속가

17) 2000년에는 대통령 소속으로 출범하였으나, 2010년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전환되었다.

18)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12~’14)」, 2016.8., 5면.

능성 강화, ② 기후변화적응 및 대응체계 확립, ③ 사회적 형평성 및 국민건강 증진, ④ 경제 및 산업구조 지속가능성 제고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sup>19)</sup>

<표 2-5>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주요 내용<sup>20)</sup>

부문	주요 내용
환경 및 자원의 지속가능성 강화 (10개의 이행과제 + 34개 세부이행 과제 + 49개 성과지표)	1) 환경 및 자원의 통합관리를 통한 효율적 이용체계구축 2) 도시·산림·연안·해양 생태계의 건강성 및 생산성 증대 3) 지속가능 교육·홍보를 통한 녹색생활 실천문화 확산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체계 확립 (6개의 이행과제 + 19개 세부이행 과제 + 30개 성과지표)	1)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사회 구현 2) 기후변화 대응 시나리오 개발 등을 통한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3) 기후산업육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및 시장 선점
사회적 형평성 및 국민건강 증진 (5개의 이행과제 + 16개 세부이행 과제 + 28개 성과지표)	1)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2) 환경변화에 따른 국민건강 보호
경제 및 산업구조 지속가능성 제고 (4개의 이행과제 + 15개 세부이행 과제 + 22개 성과지표)	1) 자원순환형 산업구조 구축을 통한 국가의 자원순환성 향상 2) 환경 친화적 생산·소비·기업경영 체계의 구축 3) 녹색산업 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즉, 국내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을 위하여 4대 전략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수행을 위하여 총 25개의 이행과제로 세분화하여 이에 대한 성과점검과 국가지속가능성평가를 통하여 평가 및 환류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에 대한 평가 결과 등에 관한 보고서는 2016년 8월에 공표되었으며, 각 분야별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개선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19)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앞의 보고서, 12면.

20)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앞의 보고서, 12면.

<표 2-6>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상 향후 과제<sup>21)</sup>

부문	향후 과제
환경 및 자원의 지속가능성 강화	1) 지속가능한 수자원관리, 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 국제 협력 강화에 있어 낮은 달성률 평가 부문 개선 2) 물이용요금 현실화 및 상수도 수요관리 강화 3) 물순환 체계 강화 4) 산림보호, 연안오염도 개선, 연안생태계 보호 등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5)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체계 확립	1) 탄소저감을 위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신사업 발굴 강화 등 낮은 달성률 평가 부문 개선 2) 기후변화(온실가스 배출량,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농업(식량자급률) 등의 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결과 개선
사회적 형평성 및 국민건강 증진	1) 빈곤, 남녀평등, 영양상태, 건강관리 등 평가 결과 개선 필요 2)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기반 확충 3) 고용-복지 연계강화 4) 다양한 사회구성원별 지원 강화 등 5) 유소년을 포함한 국민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어린이 건강증진, 감염병에 대한 예방·관리 강화 등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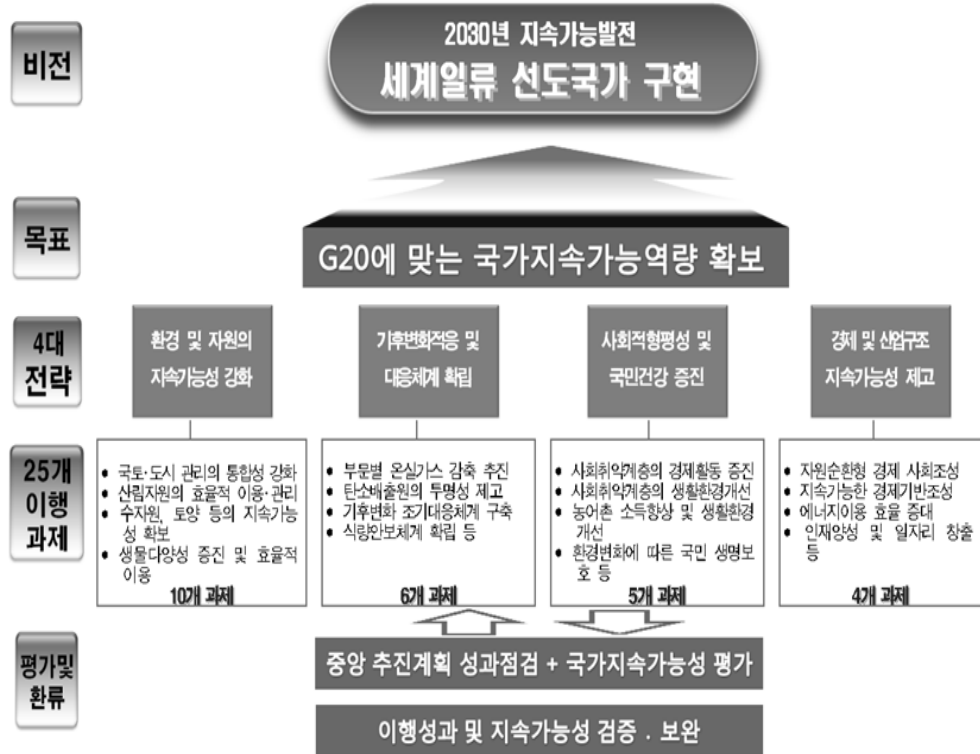
21)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앞의 보고서, 81-82면.

부문	향후 과제
경제 및 산업구조 지속가능성 제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에너지 이용의 효율 증대 낮은 달성률 평가 개선 필요</li> <li>2) 경제이행(경제성장률, GDP 대비 순투자율), 에너지사용(1인당 에너지 소비량,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 에너지원단위), 폐기물 관리(생활 및 일반폐기물 발생량, 지정폐기물 발생량) 등 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결과 개선 필요</li> <li>3)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추진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향상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li> <li>4) 폐기물 관리 강화 및 자원순환 사회 실현을 위해 재사용·재활용 확대를 통한 자원순환 촉진 추진</li> <li>5) 경제적 성과 향상을 위해 미래산업 육성기반 조성, 첨단융합 및 기후변화대응기술 개발 투자 확대 등 추진 필요</li> </ol>

#### 나.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년 1월에 논의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년)에서는 “환경·사회·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목표로 14개 전략 50개 이행과제를 구성하였으며, 그 논의에 있어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사용, 신재생에너지 비중, 비정규직 차별, 양성평등, 재해·안전 등 제2차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취약 분야를 반영하였으며, 양극화, 에너지, 지역 불균형, 일자리, 취약한 거버넌스, 저출산 고령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등 국내외적으로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위협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하였다.<sup>22)</sup> 하지만, 제2차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가 2016년 8월에 공표되었고, 동 기본계획이 2016년 1월에 발표되었다는 시점을 고려한다면 동 3차 기본계획에 제2차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에 있어 주요 사항이 모두 반영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SDGs 등 관련 지표와 성과 등의 경우 단기간 내에 달성이 완료될 수 없으며,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이행체계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본계획 수립의 시점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22) 관계부처합동,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 2016.1., 29면.

<그림 2-2> 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상 비전 체계도<sup>23)</sup>

제3차 기본계획과 제2차 기본계획의 특징을 살펴보면 제3차의 경우에는 환경에 있어 화학물질 사전관리 및 피해구제, 생태계 서비스기반 국토환경관리, 친환경 자원순환경제 구축, 건전한 물순환 체계 확립, 시장기반 온실가스 감축 등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 사회부문에 있어서 양성평등, 장애인·다문화가족 지원, 사회안전 확충, 예방적 건강 관리 등 정책 강화, 경제부문에서는 일자리창출, 비정규직 등 고용안전성, 공정거래 기반 확충 등 정책 강화 등을 전략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환경·사회·경제 부문간 통합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고 방안 또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다루고 있다.<sup>24)</sup>

23) 관계부처합동, 앞의 보고서, 30면.

24) 관계부처합동, 앞의 보고서, 29면.



이러한 3차 기본계획의 경우 화학물질과 미세먼지 등 국내에서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졌던 부분을 지속가능발전과 연계하여 우선 추진 과제로 정하여 개선을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위험 최소화를 통한 깨끗한 대기질 확보 등에 관한 정책과 이행방안 마련에 관한 세부 내용이 수송부문에 있어서 배출 오염원을 줄이기 위하여 친환경자동차 확대와 경유차 제작에 대한 규제 강화, 사업부문에 있어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기준 강화, 가정에서의 생활오염원 관리대책 강화로 정하고, 관계 부처를 환경부로 정하고 있다는 점 등은 관련 이행방안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차원에서의 접근이라기보다는 미세먼지 감축이라는 단면적인 접근으로 그 성과 및 평가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

2016년 8월에 수립된 동 3차 기본계획에서 미세먼지에 관한 이행방안의 세부 내용이 2013년 미세먼지감축을 위한 대책으로 마련된 관리방안과 같은 수준의 내용이며, 이에 대한 효과없이 그 심각성으로 인하여 미세먼지에 있어 종합관리대책이 올해 새롭게 범부처적으로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3차 기본계획의 경우 여전히 각 부처별 업무나 권한 하에서 관련 이행방안을 구분하여 마련하였고, 또 기존에 논의되던 정책 등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미세먼지에 관한 부분이 대기오염 등에 관한 관리 및 규제가 필요한 부분으로 환경부가 주무부서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미세먼지의 오염원에 있어서는 사업자 및 에너지원에 관한 관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분야에 있어서 효율적인 개선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 등과의 협의를 통한 보다 입체적인 이행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관련 부문에 있어 각 부처별 업무 및 권한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범부처적 컨트롤 타워를 통하여 이행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기존에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정책 등과 새롭게 이행되어야 하는 부분의 연계점과 타부처 업무와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및 종합적인 성과 달성에 있어 지속가능발전에서 말하는 사회-경제-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부처별 SDGs의 국내이행을 위한 이행방안 수립에 관한 담당 부서 혹은 연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담당자 등의 지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각 부처 간의 협업과 조정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있어서의 공유 등 연결 시스템과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SDGs의 세부 목표 수립이 기존의 MDGs와 달리 UN내 모든 회원국가와 시민단체 등 전 계층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하는 포용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이행에 있어서도 부처 간의 협업과 조정 외에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SDGs의 세부 목표의 범위가 전 부문으로 광범위하며, 이와 관련된 부문과 부처가 모든 부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컨트롤타워인 범부처적인 총괄책임기관이 마련되어야 하고, 각 부처별 세부 목표에 관한 정책과 관련 제도 등의 공유를 통하여 각 부처별 중복 혹은 이행에 있어 우선순위 등을 마련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그 권한과 운영에 변동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에 국내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환경부 소속 위원회로 이동하는 등의 논의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SDGs 2030의 효과적인 목표 달성에 있어서 현행 체계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볼 수 있다.

아울러 SDGs 이행에 있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상당수의 선진국의 경우 연방제 등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역할이 국민의 편익과 국가 발전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 지속가능발전기본법 하에서는 지방정부의 이행에 있어서 그 역할을 중시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제 21’이라는 조직을 통한 지방정부의 이행방안 수립과 그 이행을 촉구하여 왔으나, 「지속가능발전법」 하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방의제21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SDGs의 성과와 목표 달성 등을 위해서 지방의제 21등 민관협의체 운영에 있어 가이드라인과 같은 표준조례안 등을 마련하거나 관련 사례에 관한 안내 등을 통한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2. SDGs 성과 점검 및 환류 체계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검토와 당시 수립된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통한 평가 결과에서는 향후 개선과제에 관하여 낮은 평가를 받은 분야에 관한 노력을 제3차 기본계획 수립 시 담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전략 1~4의 각각의 분야에서 낮은 분야를 받은 부분을 위의 표 2-6과 같이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전략1의 환경 부문에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하여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펼친 결과 연안·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의 추진 및 토양 오염관리체계 강화 등에 관한 정책과 제도 및 이행에 대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았고,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국내의 ODA 규모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sup>25)</sup> 전략2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이행체계 수립에 있어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업, 교통 등 다양한 정책과 이행에도 불구하고,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 및 기후변화 적응에 있어서의 이행의 미흡 등이 지적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되었다.<sup>26)</sup> 전략3과 4에서는 사회 양극화에 관한 지속적인 해결 방안과 환경성질향 예방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등으로부터의 국민 생명·건강 보호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의 확대와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 등에 있어서의 노력 증진이 필요하다고 요구되었다.<sup>27)</sup>

기존에 우리의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가 논의 되었던 2006년에는 총 77개의 지표로 운영되었으며,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의 84개 지표로 운영되게 되었다.<sup>28)</sup> 이러한 지표는 ‘분야·영역·항목-지표’라는 틀로 구성되어 운영되며, 2001년 지표 체계는 4개분야

25)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앞의 보고서, 17면.

26)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앞의 보고서, 18면.

27)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앞의 보고서, 18면.

28) 2015년 이후 지표의 유용성, 데이터 가용성, 지표간 중복성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여러 차례 변경, 추가, 삭제 작업이 있었다(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앞의 보고서, 86면).

(사회, 환경, 경제, 제도), 15개 주제(형평성, 건강, 교육, 주택, 안전, 인구, 대기, 토지, 해양, 연안, 담수, 생물다양성, 경제구조, 소비·생산, 제도형태, 제도용량), 39개 세부주제, 57개 핵심지표로 구성되어 있었고, 우리 또한 이를 참고로 지표체계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sup>29)</sup> 이후 SDGs 2030 체계 하에서는 총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6년 3월에는 모두 241개로 이루어진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글로벌 지표에 관한 합의가 있었고, 우리나라 또한 환경부, 통계청과의 협업을 통해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241개의 SDGs 지표의 활용가능성과 이에 맞는 지표 개발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sup>30)</sup>

우리나라 또한 SDGs 2030 체계 하에서 관련 평가 지표에 따른 성과를 UN에 보고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지표 수립과 성과관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이에 SDGs 목표 수립과 달성을 위한 평가 지표를 국내의 상황에 맞게 확보하는 것과 그 이행을 위해 각 담당 부처 및 담당 부문의 적극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 또한 검토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성과의 확산 등은 계속해서 논의되고, 수행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점에서 그 논의가 활발히 있어야 한다고 본다. 각 지표들이 부문별로 구분되어 있으나, 세부항목에 있어서는 서로 연계된 종합적인 지표이기에 단편적 혹은 개별적 이행은 실질적 효과에 기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SDGs의 경우 그 목표와 이행방안 수립에 있어 각 세부 목표별 쟁점사항이 하나도 빠짐없이 검토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국내 성과와 그 확산을 위한 검증된 체계 하에서 그 운영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에 앞서 관련 부처 간의 정책과 이행방안에 관한 협업 등 절차 상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단지 국가 평가지표의 높은 평가률을 위한 수단으로 SDGs 2030의 평가체계를 활용한다면 단지 수치화된 형식적인 지표에 불과하여 장기적인 차원에서 무의미하면서 행정 낭비적인 결과에 불과하게 될 수 있다. SDGs 2030에 관한 논의가 “아무도 낙오시키지 않는다”라는 목표로 전 회원국을 상대로 세부 항목을 바탕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고

29)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앞의 보고서, 86면.

30)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앞의 보고서, 86면.

려할 때 단지 성과지표와 계량화된 평가 결과 개선에 근시안적인 노력을 펼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여 삶의 질 향상 및 미래세대를 위한 발전을 만들어 내어야 할 것이다.

현행 「지속가능발전법」 제14조에 따르면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제시한 이행과제별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2년 주기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 지표를 점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기존의 평가 지표에 맞추어 그 지표의 운영 및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SDGs 2030체계 하에서 논의 중이며, 2020년에 완성될 SDGs의 글로벌 지표 241개의 내용에 관하여 국내 적용을 위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작성 및 관련 지표를 개선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환류체계의 체계화 등 의무화를 위한 논의를 통하여 SDGs의 성과관리 및 개선을 위한 논의 또한 위의 작업과 함께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환류체계는 일반적인 정부 업무 평가에 있어서 평가결과를 통한 인센티브 혹은 개선·보완을 위한 조치 등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나, SDGs의 평가체계 하에서는 이러한 환류체계에 관하여는 각 부처별 자발적인 노력 등 재량으로 맡겨져 있다. 평가 지표 개발 및 관련 성과관리에 있어서 환류체계를 통한 개선의 실질적 효과와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제3장

# SDGs 국내 이행체계 및 ● 해외 사례

제1절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제2절 주요 국가의 SDGs 제도 현황





## 제3장

# SDGs 국내 이행체계 및 해외 사례

## 제1절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 1. 지속가능발전의 의미

‘지속가능발전’은 1971년 스위스 Founex에서부터 개발과 환경보호라는 논의에서부터 출발하였으며,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되었던 UNCHE 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sup>31)</sup>에서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32)</sup> 이후 1973년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및 1987년 4월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에서 “우리의 공동의 미래”라는 브룬트란트보고서(The Brundtland Report)가 발표 되었으며, 이를 시작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 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현세대의 니즈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발전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 전 분야에서 그 발전에 앞서 먼저 환경친화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sup>33)</sup>

31) 1972년 6월 스톡홀름에서는 하나뿐인 지구라는 슬로건 하에서 UN인간환경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and Environment: UNCHE)가 개최되었는데, 동 회의에서는 지구환경 보전이 세계 공동의 과제임이 명시됨과 동시에 UN인간환경선언과 UN환경계획(UNEP)의 만들기로 결정되었다. 이에 동회의를 통하여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도적 접근이 시작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김성배,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정의의 기초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34면).

32) 김기숙,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법적 지위와 적용사례분석”, 국제법학회논집 제52권 제3호, 2007, 13면.

33)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동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이 세계무역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경제성장이 저하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건전한 정책을 채택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게 자본과 기술을 이전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이후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UN 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발전에 있어서의 차별성 문제에 관하여 ‘공동의 그러나 차별된 책임’이라는 원칙을 발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가 지켜야 할 기준으로 환경에 관한 체계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sup>34)</sup>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명확한 해석이나 정의는 내려지지 않았으며, 그 해석상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는 각국 및 각 부문별로 그 적용에 있어 우선 순위와 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며, 지속가능발전이 세부 지침이기보다는 대명제적인 개념으로 세부 목표와 이행수단을 구축하는 데에 있어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원칙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의를 포괄적인 개념 외에 명확히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시대에 따라 세부 개념과 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나, 기본 개념에 관하여는 ① 국가간 협력 원칙, ② 자발적 노력 원칙, ③ 환경에 대한 책임 원칙 등으로 정의 할 수 있다.<sup>35)</sup>

‘① 국가간 협력 원칙’이란 경제·사회 부문에 있어서 국가간 거래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이행에 있어 반드시 환경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sup>36)</sup> 이는 국제사회에서 국가간 거래나 협력의 경우 상당 부분이 경제적 발전을 위한 것으로 그 효과 또한 경제적 부문으로 한정되어 해석되고 있으나, 이는 사회적인 부문 까지 확대되어 해석되어야 하며, 그 가운데 지속가능발전의 기준을 두어야 하고, 이를 통하여 환경적 고려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37)</sup>

---

환경용량 내에서의 개발을 골자로 하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개념을 제시하고 있다(김성배, 앞의 보고서, 36-7면).

34) 국제사회가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추구해 나가는데 필요한 선언적 지침으로 알려진 리우선언은 5개항의 전문과 27개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인류가 추구해야 할 공동의 당면과제로 설정하고 있다(장인호, “헌법상 과제로서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40면).

35) 한국법제연구원 율김(gyula Bándi, Marcel Szabo & Akos Szalau 지음), 지속가능성, 법 그리고 공공선택, 한국법제연구원, 2016, 53-9면의 분류를 참고하여 작성함.

36) 김기숙, 앞의 논문, 23면.

37) 1994년 12월 17일에 체결된 ‘리스본 에너지헌장조약(Lisbon Energy Charter Treaty)’은 에너지 분야의 계약 당사자들 간 장기협력을 위한 국제 협약으로 동 조약에 따라 각 당사국은 천연자원에 관한 각국의 권리를 인정하

‘② 자발적 노력 원칙’이란 개발에 있어서 환경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국제기구나 국제협약을 통한 것으로 해결하기보다 각국에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친환경적인 부문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것을 장려하는 원칙으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09년에 채택된 ‘국제재생에너지기구에 관한 규정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IRENA), 2009)’에 따르면 회원국들에게 지속가능발전 확대를 위하여 태양열, 풍력, 바이오에너지, 지열에너지, 수력 및 해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의 확대 보다 활성화하여 기존의 석탄 발전 등의 에너지원의 전환을 촉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sup>38)</sup>

‘③ 환경에 대한 책임 원칙’이란 지속가능발전과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을 통하여 각 부문별 경제 성장과 개발에 있어서 환경과 미래세대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이에 대한 제한을 두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하여 각국의 적극적이며,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과 같은 국가나 지역 공동체에 있어서 개발을 위한 정책 혹은 제도 등을 수립하는 데 있어 국제 협약과 같은 규제나 기준 외에 스스로 환경과 미래세대 보호라는 관점에서 사전 예방적 차원의 기준이나 제한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은 단지 환경 보호나 제한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차원에서 교육이나 관련 지원 등을 통하여 양질의 성장을 전제한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sup>39)</sup>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은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MDGs라는 체제 하에서 국가 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관련 성과를 위한 실천계획, 취해야 할 대책 및 평가체계 등의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sup>40)</sup> 또 2015년부터는 SDGs 2030 체제 하에서 앞서 제2장에서

게 되었다. 다만, 동 협약 제19조에 따라 조약 서명국들은 유해한 환경영향에 있어서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행하겠으며,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을 고려하기로 약속하였다(한국법제연구원 율김(gyula Bányai, Marcel Szabo & Akos Szalau 지음), 앞의 책, 54면).

38)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IRENA) Article 2 Paragraph (b).

39) the Agreement on the Conservation of Gorillas and their Habitats Section 1 (6) paragraph (h) of the action plan provided for under Article 8 of the Agreement.

40) 정영근·장민수, “지속가능발전의 논의와 발전방향”, 질서경제저널 제10권 1호, 한국질서경제학회, 2007, 70면.

설명했던 바와 같이 관련 세부 목표에 관한 평가지침 등이 논의를 통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sup>41)</sup>

## 2.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내 제도

### 가. 구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우리 정부는 2007년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제 논의를 국내적 이행수단 확보를 위하여 구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을 국내 제도로 반영하게 되었다. 동법 제정의 의의는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에 적절하게 환경, 경제, 사회 등 각 부문 별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제도가 수립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관련 기본계획과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그 성과 관리를 위한 평가 지표 등을 마련하여야 하는 부분이 제도화 되어 국내적으로 지속가능성의 관리가 이루어 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동법 제정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sup>42)</sup>

동 법에서 정의내리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개념에 관하여는 ① 포괄성으로 시간과 공간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 ② 연계성으로 경제, 사회,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으며, ③ 형평성으로 세대 간, 세대 내, 생물종 간, ④ 안전성으로 물리적 안전, 인권 민주적 참여권한, ⑤ 신중성으로 정치, 사회, 기술적 의사결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sup>43)</sup> 이러한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국가 성장 혹은 개발에 있어서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sup>44)</sup>이라고 보았으며, 이는 경제성장에 있어서 사회적 형평성의 개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복지국가론에 환경보호라는 개념이 더해짐으로써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목표라고 할 수 있다.<sup>45)</sup>

41) 정영근·장민수, 앞의 논문, 70-1면 참조.

42) 최윤철, “지속가능발전원칙과 지속가능발전 기본”, 입법정책 제2권 제2호, 한국입법정책학회, 2008, 100-105면 참조.

43) 김은경,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추진 성과와 과제”, 국회 지속가능발전특위 심포지엄 국가지속가능발전 체계 재정립과 도약을 위한 향후 과제 2014년 12월 11일 제2세션 발제문 35페이지 참조.

44) 김병완, “녹색성장을 넘어 지속가능발전으로 - 국가비전과 이행체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회토론회 2013년 6월 13일, 13면.

45) 이러한 발전의 개념에 관하여 ‘성장’은 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양적 팽창임에 비하여, ‘발전’이란 부의 형성과정과

동법의 제정 이유는 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이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하고, ②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그 이행계획의 수립·추진,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운용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④ 경제성장·사회통합·환경보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sup>46)</sup>

동법에서는 우선 지속가능발전의 기본 원칙을 제3조에서 명확히 하였다. 동법 제정 이전에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명확한 정의나 개념 정리 없이 몇몇 법률 하에 사용되어 왔으며, 이에 동법에서 기본법으로써 그 원칙을 명시한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UN 등에서 채택된 7대 원칙을 바탕으로 국내법에 수용한 내용이라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제기준과 요구에 맞는 이행 수단을 확보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제 3 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장려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새로운 기술지식을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경제제도를 정비하고 기업경영의 혁신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촉진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를 정비하고 사회의 정의·안전과 통합을 촉진한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능동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결과로 인한 삶의 질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한다(김은경, 앞의 발제문, 35면 참조).

46) 한국법제연구원,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 등 관련 법체계 연구」, 국무조정실, 2014, 58면.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은 기술혁신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잠재적인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높은 수준의 주의를 기울이는 방향으로 기술발전을 추진한다.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유연성과 자기교정능력(自己矯正能力)이 있도록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7. 국가는 공정한 국제무역이 지속될 수 있는 국제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8. 국민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공유(共有)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제발전, 환경보호, 사회통합의 균형있는 추진을 위하여 20년마다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추진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제 4 조(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추진) ① 정부는 의제21(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이행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에너지·교통·국토이용·농업, 빈곤·건강·교육, 생태·물·해양·산림 등 경제·사회·환경 분야를 모두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전략과 원칙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의 기본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지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

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14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국가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국가기본전략의 수립방법·절차와 정부 내의 업무분담 체계 및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밖에도 제6조~제9조에서는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시행을 위하여 5년마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매 2년마다 그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것을 정하였으며, 관련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그 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였다(구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13조 및 제14조). 또한 제15조에서 제19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관한 설치 근거 규정을 담고 있었으며, 동 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운영되었다.

당시의 구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당시 정립되어 있지 않던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의 개념 등 그 범위를 정확히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관련 기본계획과 이행계획 등의 수립과 그 실행을 위한 지표와 성과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여 이행하도록 하였다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나. 최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제도 현황

이전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2009년부터 ‘녹색성장’의 개념을 통하여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라는 정책 추진에 발맞추어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되었으며, 기존의 기본법이 일반법으로 그 지위가 변경되었다. 현행 법체계 하에서 기본법이란 지위에 관하여는 논의의 여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민법」, 「형법」 외 각 영역별로 그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과 원칙 등을 정하고 있다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sup>47)</sup> 기본법에 관하여는 다양한 분야와 수많은 기본법 명칭의 법제가

47) 박영도, “기본법의 법제상의 위치”, 『최신외국법제정보』, 한국법제연구원, 1993. 12, 274면.

제·개정되어 적용되면서 본래 특정 분야에 관한 제도·정책·기준 등을 정한 기본 방향과 원칙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보고 있으나, 최근에는 일정한 분야에 대한 특별법 또한 기본법과 같은 형태나 지위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본래적인 의미에서 기본법이란 한 분야에 관한 제도·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법률이라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sup>48)</sup>

녹색성장기본법이 제1조에서 “이 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위한 국가의 주요 시책 등을 다루도록 정하게 되면서 기존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현행과 같은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그 지위가 변경되었다. 이에 기존의 총 22개 조문 중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9조의 제3항과 제4항, 제12조가 삭제되었으며, 이러한 내용들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으로 이동하였다.<sup>49)</sup>

현행 지속가능발전법은 그 목적에 관하여 제1조에서 “이 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에 관하여는 제2조 제1호에서 “현재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로, ‘지속가능발전’이란 동법 제2조 제2호에서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의미한다”라고 정하여 국제 사회에서 말하는 경제성장, 사회통합, 환경보전의 세 가지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48) 기본법은 첫째, 국가의 주요 시책의 전체 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종합화하는 기능, 둘째, 행정에 대한 지속적 압박 기능 및 시책의 실시 담보기능, 셋째, 종합조정입법기술, 넷째, 법제도의 연구 기능 등을 한다고 보고 있다(박정훈 “입법체계상 기본법의 본질에 관한 연구”, 『법조』 Vol.58 No. 12, 2009, 277면).

49) 함태성,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의 관계정립에 관한 법적 고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 제정에 관한 법적 논쟁과 관련하여.”, 『환경법연구』 제31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09, 355-9면 참조.



2017년에 7월 송옥주 의원실에서는 현행 「지속가능발전법」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녹색성장촉진법’으로 개정하는 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는 현행 녹색성장기본법의 경우 종합적인 법으로 경제·환경·사회 모든 분야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환경의 경우, 특히 기후변화에 있어서는 대응과 적응의 부문별 이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대응법제를 새롭게 제정하고,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삶의 질과 사회적 형평성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제도를 보다 체계화하여 지속가능발전의 목표에 보다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동 개정안에 있어서 주목할 부분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경우 국가차원의 위원회로 그 지위를 승격하여 전부처간의 협업과 체계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는 점이며, 아울러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 차원의 협업과 체계적 기반 마련을 통한 유기적 연계를 강조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 제2절 주요 국가의 SDGs 제도 현황

### 1. 독일

#### 가.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 및 운영 체계

독일의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헌법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에서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하여 제20a조에서 “국가는 입법을 통한 헌법합치적인 질서 속에서 법률과 법의 영역에 따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가운데 자연적 생존기초와 동물을 보호한다”면서 국가목표규정으로 국가의 환경에 대한 보호의무를 정하고 있다.<sup>50)</sup> 즉, 동 기본법 제20a조는 “국가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헌법질서의 범위 내에서 입법에 의하여 그리고 법규의 척도에 따라 집행권과 사업권에 의하여 자연적 생활기반과

50) 고문헌,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비교헌법적 연구”, 환경법연구 제32권 제3호, 한국환경법학회, 2010, 132-133면 참조.

동물을 보호한다”라고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포괄적인 원칙과 관련 모든 법체계 수립과 이행에 있어 지켜야 할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sup>51)</sup>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독일은 1947년에 그 법적근거로 현재세대가 미래세대에 관하여 지켜야 할 책임이라는 형태로 헌법에 규정하는 형식으로 선언하는 형태를 취하였다.<sup>52)</sup> 즉, 독일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국가적 전략 수립의 기초를 헌법에 규정하고, 이를 관련 모든 부처에서 기본계획 등 정책 추진에 있어 세대 간 형평, 삶의 질에 관한 반영, 국제적 책임, 그리고 관련된 사항에 있어 재원 마련 등을 반영하여 이행하도록 정한 것이다.<sup>53)</sup> 아울러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각 분야별 구체적 이행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이 가운데 시민단체 등 관련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등 민관 및 산학 협력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유기적 연계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sup>54)</sup>

따라서 독일의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및 시행 등은 연방총리실에서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계획 수립에 있어 관련 부처, 학계, 시민단체, 기업 등 이해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55)</sup> 아울러 지속가능발전전략 이행에 있어서는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절차를 거쳐 각 부문별 균형있는 목표 수립과 추진을 관리하고, 관련 지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관련 목표 수립에 있어서 또한 규제영향평가제도를 통하여 관련 법개정 등에 있어 반영하도록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sup>56)</sup>

51) 고문현, 독일 환경법, 2006, 45-50면.

52) 홍준형, “환경법의 기본원리로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공법연구 제25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1997, 259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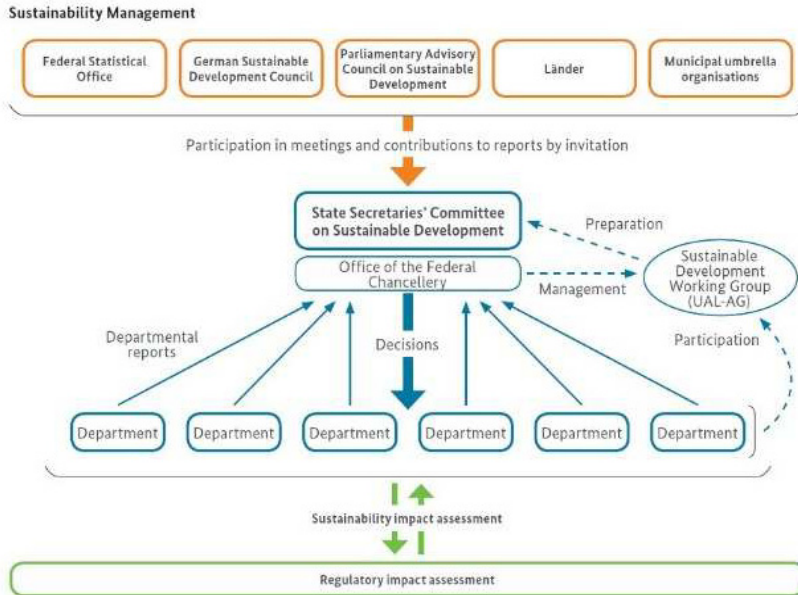
53)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 분야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에너지개발법을 제정해 중소단위로 생산하는 전기를 한국전력과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뒷받침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그 일을 추진하는 세력들에게 어느 정도의 재정지원을 하여 주는 방안을 모색할 때 더욱 활발하게 진전될 가능성은 언제나 높다”라고 보고 있다(정인환·복진국·박정현·김정욱·박정순·유문중, “독일 및 영국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사례, 2005 유럽연구보고서,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2005, 35-38면).

54) 장인호, 앞의 논문, 172-187면 참조.

55) 독일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전략 개정을 위하여 2016년 2월 연방총리실에서는 주 정부의 장관들, 사무관들 그리고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공무원들과 학계, 시민사회, 기업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이 모이는 지역 단위 대규모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하여 결정하였다.

56) 독일은 절차법(Joint Rules of Procedure of the Federal Ministries)의 개정을 통해 2009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그림 3-1> 독일의 지속가능성 관리 시스템<sup>57)</sup>



독일의 지속가능발전 에 관한 목표 수립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기본법 체계 하에서 그 근거를 두고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 전 부처의 협력을 유도하여 그 성과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데 효과적인 체계라 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은 전 부처, 즉 전 부문과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연방 총리 차원에서 이를 관장하며,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 운영에 있어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각 부처별로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관련 협력 조정관(Ministry Coordinators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두도록 정하고 있다.

법과 규제에 대해 지속가능성 영향평가(Substantiality Impact Assessment)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절차법 제44조 1항은 ‘법안이 가져올 수 있는 장·단기적 영향이 지속가능발전의 목표와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7) German Federal Government. German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New Version 2016, at 26. ([https://www.bundesregierung.de/Content/DE/\\_Anlagen/Nachhaltigkeit-wiederhergestellt/2017-06-20-nachhaltigkeit-neuauflage-engl.pdf?\\_blob=publicationFile&v=2](https://www.bundesregierung.de/Content/DE/_Anlagen/Nachhaltigkeit-wiederhergestellt/2017-06-20-nachhaltigkeit-neuauflage-engl.pdf?_blob=publicationFile&v=2).)(2018.10.26. 방문)

아울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그 위원장을 총리로 정하고, 전부처의 장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각 부처별로 관련 보고서 제출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sup>58)</sup> 아울러 관련 기업,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위하여 공청회와 같은 의견 수렴 절차를 공식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sup>59)</sup> 2004년부터 활동한 지속가능발전 국회 자문 위원회 (Parliamentary Advisory Council on Sustainable Development) 를 통하여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관련 제도 도입 및 운영과 지속가능성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독립기구인 자문 위원회는 총리에 의해서 임명되는 15명의 자문단은 기업, 정치, 사회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그간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과 이행에 있어 자문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그 임기는 3년이다.<sup>60)</sup>

독일은 SDGs의 17개 목표 달성을 위한 63개의 개별 목표들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지표 수립에 있어서 경제, 환경, 사회 각 분야별 조화와 공통의 목적을 위한 기준과 그 영향력을 통하여 관련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sup>61)</sup>

#### 나. SDGs의 이행 성과점검 및 환류

독일의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의 이행에 관한 평가는 연방정부와 의회 단위의 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연방정부에서는 관련 보고서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제출하게 되고, 이를 독일 통계청에서는 2년마다 관련 지표에 반영하여 성과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추진 성과 보고서를 4년마다 발간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지표별 목표 달성도의 정도는 아래와 같이 4단계로 구분된다.<sup>62)</sup>

58) 장인호, 앞의 논문, 177면.

59) 김기성, “독일의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환경정책통합” 사회과학논집 제41집 제2호,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0, 75-6면.

60) 박정호·정소운·김은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2017, 한국행정연구원, 135-6면.

61) 독일의 경우에는 2008년 연방공통사무규칙 제4조 제1항 개정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제정되는 법률안들이 지속가능성과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성 전략에 맞도록 지속가능성 목표·지표에 따른 입법안에 대한 환경·경제·사회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다(장인호, 앞의 논문, 178면).

62) German Federal Government. Report of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to the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16, 12 July.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10686HLPF-Bericht\\_final\\_EN.pdf](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10686HLPF-Bericht_final_EN.pdf). at 35 (2018.10.26.방문)

<표 3-1> 지속가능발전 평가의 4단계<sup>63)</sup>

목표달성정도	의미
맑음(☀️)	• 목표가 거의 달성됨
흐림(☁️)	• 목표한 방향으로 진행 중이지만 달성수준이 80%에서 95%정도에 머무름
구름(☁️)	• 목표한 방향으로 진행 중이지만 달성수준이 80%에 미치지 못함
천둥번개(⚡️)	• 목표한 방향과 다르게 진행 중임

## 2. 영국

### 가.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 및 운영 체계

산업혁명 등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자본주의를 탄생시킨 국가인 영국은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겪게 되었다. 이후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석유 공급의 문제에 관한 인식과 함께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국제적 논의 확산에 따라 본격적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검토하게 되었다.

영미법 국가 중 하나인 영국의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기 보다는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하여 환경에 있어서는 「환경보호법」, 에너지 관련 분야에 있어서는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에너지법」, 도시 관련 문제에 있어서는 「도농계획법」, 「건축법」, 「주택법」, 「신도시법」 등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여 그 이행을 하고 있다.<sup>64)</sup> 이 밖에 「지방정부법」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에 관련하여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sup>65)</sup> 관련 정부조직 개편을 통하여 지속가능발전의 유기적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sup>66)</sup>

63) 박정호·정소윤·김은주, 앞의 보고서, 136면.

64) 장인호, 앞의 논문, 218-220면.

65) 영국의 기후변화법 제3조제2항.

66)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하여 에너지기후변화부(현재는 해체됨)를 신설하였으며, 환경, 농업, 식품을

영국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수상자문기구로 2000년에 설립되었으며, 그 구성은 정부계, 기업 등 산업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로 전체 14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sup>67)</sup> 동 위원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의 이행과 성과를 위하여 관련 전략과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및 각 부처의 이행계획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sup>68)</sup> 아울러 각 부처마다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담당하는 담당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은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과 의무사항 등을 반드시 부처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발생할 편익, 환경비용, 인력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sup>69)</sup>

### 나. SDGs의 이행 성과점검 및 환류

영국은 지속가능발전의 이행과 그 성과를 위하여 모니터링제도를 통한 관리감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각 부문별로 지속가능발전의 이행을 위한 내용을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분기별로 검토하고 있다.<sup>70)</sup> 영국의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의 성공적 실현을 위하여 4가지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첫째, 과학적인 정보에 기반한 정책들을 수립하는 것, 둘째, 사전예방원칙을 준수할 것, 셋째, 자연생태계 자정능력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한계용량에 대한 기준의 원칙을 지키는 것, 넷째, 재생 가능한 천연자원과 재생 불가능한 천연자원을 합친 환경자본축적 원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관련 전략 실현에 있어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sup>71)</sup> 즉,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각 부문 별 지속가능발전의 전략 수립과 이행에 있어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넓히고, 관련된 국민인식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 구조를 수립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담당하는 부서를 통합하여 환경·식품·농업부를 만들었다.

67) 장인호, 앞의 논문, 222면 각주 826.

68) 장인호, 앞의 논문, 222면.

69)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한 발전보고서」, 2005, 35-6면.

70) 장인호, 앞의 논문, 224면.

71) 김지현·송형만·조승현, “영국의 국가발전전략으로서 지속가능발전의 성과와 한계, 환경사회학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환경사회학회, 2007, 121-123면.

### 3. 캐나다

캐나다는 지속가능발전 이행에 있어 환경부 산하에 지속가능발전국을 설치하여 3년마다 연방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작성하여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연방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에 관한 목표와 세부 이행방안 등은 지방정부인 각 주별로 세부 이행을 촉구하는 작용을 하게 되며, 각 주별로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세부 목표에 관한 이행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연방차원의 경우에는 2008년에 내각 소속으로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수립과 이행을 담당하고 있다.<sup>72)</sup>

대표적으로 퀘벡주의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지속가능발전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법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제2조에서 “지속가능발전이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능력을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을 손상시키지 않고,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한다. 지속가능발전은 개발 활동의 환경적, 사회적 및 경제적 차원의 복잡성을 고려한 장기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관련 부처에 있어서는 정부나 장관이 임명하거나 지명되는 자로 정하여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sup>73)</sup>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전략과 이행 방안 모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원칙을 기준으로 동법 제6조에서는 제시하고 있다.

- (a) “건강 및 삶의 질”: 사람, 건강 및 삶의 질적 향상은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관심 사이다. 사람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 권리를 가진다.
- (b) “사회적 평등 및 결속”: 발전은 세대 내 및 세대 간 평등, 사회 윤리 및 결속의 정신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 (c) “환경 보호”: 지속가능발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환경보호는 발전과정의 없어서는

72) 노태호, “유엔의 SDGs 체제로의 전환과 국제동향”, 국가 지속가능발전 체계 재정립과 도약을 위한 향후 과제, 국회지속가능발전특위 심포지엄 2014년 12월 11일, 19면.

73) 퀘벡주 지속가능발전법 제3조.

안 될 절대적인 부분을 구성하여야 한다.

- (d) “경제적 효율성”: 퀘벡 주 및 그 지역의 경제는, 사회적 발달에 도움이 되고 환경을 소중히 하는, 혁신 및 경제적 번영에 방향을 맞추어야 하며 효율적이어야 한다.
- (e) “참여 및 헌신”: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규정짓고 환경적, 사회적 및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시민과 시민단체의 참여 및 헌신이 필요하다.;
- (f) “지식에 대한 접근”: 혁신을 북돋우고 자각을 불러 일으키며 지속가능발전의 이행에 대한 공중의 효과적인 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 정보 및 연구에 대한 접근에 호의적인 조치들이 장려되어야 한다.
- (g) “보완원칙”: 권한 및 책임은 적절한 수준의 기관에 위임 되어야 한다. 의사결정의 중심은 적절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관계 시민 및 커뮤니티와 밀접해야 한다.
- (h) “정부 간 협력 및 교류”: 정부는 환경적, 사회적 및 경제적 관점에서 발전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일정한 영토 내에서 행하여지는 조치들의 대외적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 (i) “예방”: 알려진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예방적이고 완화적이며 교정정책적인 조치들이 원천적 조치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 (j) “경계”: 심각한 또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의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충분히 과학적인 확실성의 결여가 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의 채택을 연기하는 이유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k) “문화 유산의 보호”: 재산, 유적, 풍경, 전통 및 지식으로 이루어진 문화 유산은 한 사회의 동일성을 나타낸다. 그것은 한 사회의 가치들을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하며 이러한 유산의 보존은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한다. 문화 유산의 구성요소들은 그것들의 고유한 희소성과 취약성을 고려하여 동일성이 확인되고 보호되며 강화되어야 한다.
- (l)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호”: 생물학적 다양성은 현재 세대 및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종, 생태계 및 생명을 유지하는 자연적 과정들은 인간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 (m) “생태계 지원 용량의 고려”: 인간의 활동들은 생태계의 지원 용량을 고려하여야 하며 생태계의 영속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n) “책임 있는 생산 및 소비”: 특히 쓰레기를 피하고 자원의 이용을 최적화하는, 최대



한 환경을 해치지 않는 접근을 통하여 더욱 생육 가능하고 사회적 환경적으로 더욱 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생산과 소비의 패턴이 바뀌어야 한다

- (o) “오염자 부담”: 오염을 야기하거나 자신의 행위가 다른 방식으로 환경을 저하시키는 자는 환경 피해를 방지, 경감, 관리 및 완화하기 위한 조치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 (p) “비용의 내면화”: 상품 및 서비스의 가치에는 디자인부터 최종 소비 및 처리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의 전 라이프 사이클 동안 사회에 발생시키는 모든 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아울러 동법 제7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에 있어서 이에 대한 세부 기준뿐만 아니라 그 이행에 있어 담당관 및 모니터링에 관한 내용들도 특정할 것을 정하고 있으며, 관련 기본계획은 관련 부처와의 협의 후 5년마다 수립되어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26조에서는 관련 자금 마련을 위한 기금에 관한 조항을 두어 재정적 지원 방안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 등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제4장

# ● SDGs 국내 이행을 위한 개선방안

제1절 지속가능발전 이행환경 개선방향

제2절 델파이조사 결과 분석

제3절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안



## 제4장

# SDGs 국내 이행을 위한 개선방안

### 제1절 지속가능발전 이행환경 개선방향

우리나라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이행 메커니즘 구축을 위하여 2018년 4월 26일 작업반에 민간전문가 192명, 23개 부처 공무원 238명을 섭외하고, 작업반 보고서 초안을 5월 18일에 공개하였다. 이후 제1차와 제2차 보고서 보완회의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완료하고 동 보고서안에 관한 지역별 토론회를 개최하며 관련 지표 수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SDGs 2030에 관한 지표 개발에 있어서는 관련 주요 단체 및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MGoS(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sup>74)</sup> 참여 체계를 새롭게 구성하여 2030년까지 계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K-SDGs에 관한 인덱스 등 마련에 있어 관련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구성된 이해관계자 그룹(MGoS)은 SDGs 이행 목표 수립을 위한 보고서 작성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게 되어 각 부문별 전략 이행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고, 이를 개선 보완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특히, MGoS의 운영은 기존의 전문가 중심의 정부위원회 체계를 보완하고, Bottom-up방식과 같은 시민의견수렴의 절차를 기반으로 계획이 구축된다는 점에서 보다 실질적인 이행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 보기 때문이다. MGoS에서 제안된 구체적 이행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74) 한국에서 운영되는 MGoS 그룹은 여성, 청소년, 농어민, 노동계, 산업계, NGOs, 과학기술계, 지방정부, 회계, 자선단체재단, 교육기관, 장애인, 자원봉사단체, 노인, 지역공동체, 이주민 등 총 16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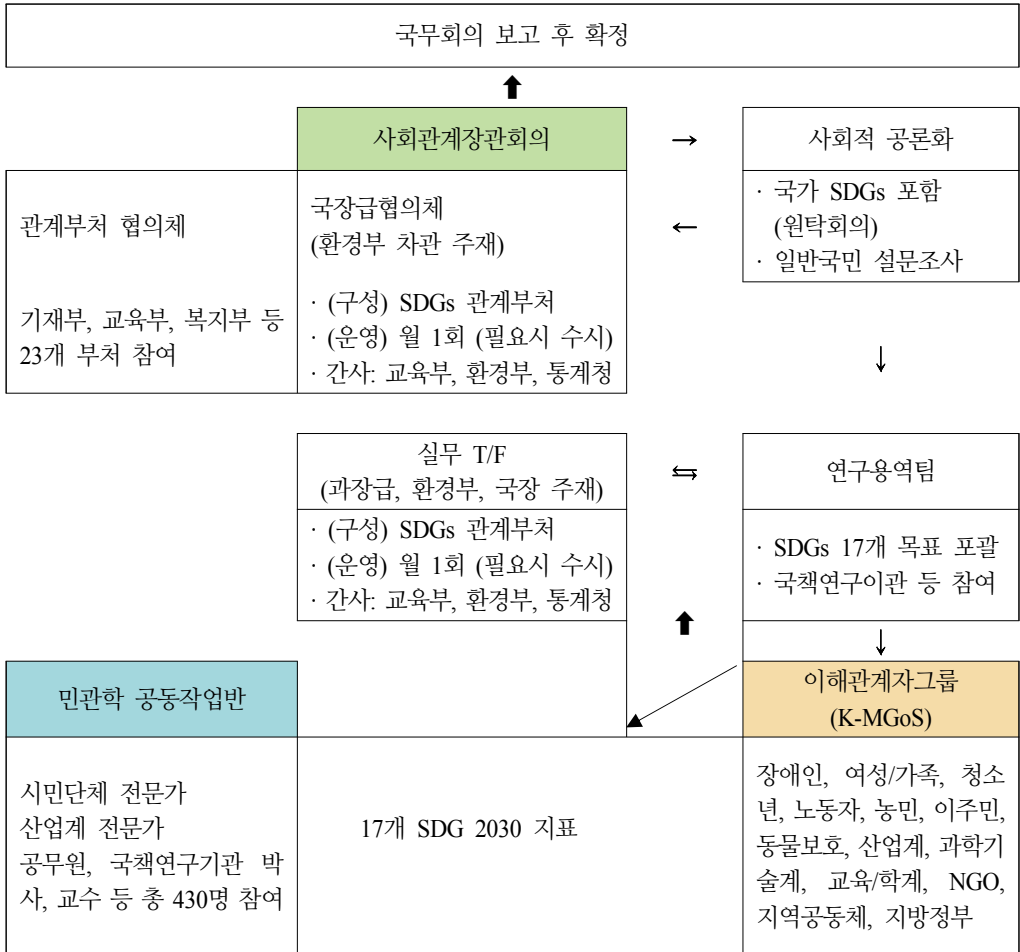
<표 4-1> MGoS별 논점<sup>75)</sup>

부문	개선 필요 사항	반영 결과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부목표 및 지표에 UN-SDGs와 유사한 수준으로 장애인 포함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 세부목표 지표 확대 - 1.1/4.1/4.2/4.4/7.1/8.5/8.6/10.1/10.3/10.4</li> </ul>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성평등 단어를 지양하고, 이주민, 여성, 장애인 등 한국사회 내 취약계층의 통계 강화</li> <li>여성과 관련된 지표 등에 성별을 구분하여 산출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성평등 - 성평등</li> <li>5.2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철폐 - 성폭력 유형별 피해율 가정폭력 건수 성폭력 신고/검거율</li> <li>5.5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기회 보장 - 공공부문, 장관급 여성 비율</li> <li>포괄적 재생산 건강, 권리에 대한 접근 보장 - 성교육 실적 성건강 보건서비스 이용경험 임신중절 접근성</li> </ul>
산업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법률 및 정부의 국정과제와의 정합성을 고려</li> <li>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정량화된 지표 설정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정과제 적합성 제고 - 7.3/7.4</li> </ul>
NG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의 질과 관련된 지표 추가, 고령화 대비 필요</li> <li>사전예방적인 환경 관련 목표 부재, 주거비 부담 문제 심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질의 일자리 - 좋은 일자리</li> </ul>

이와 같이 국내에서는 기존의 위원회 중심의 보고서 작성 후 이에 대하여 공청회 형식으로 관련 사항을 전달하던 기존 체계를 바꾸어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계획 수립단계에서 반영할 수 있는 체제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민관화 공동 작업반과 이해관계자 그룹의 의견을 반영한 보고서 초안은 이후 실무 T/F를 거친 후 관계부처의 협의 후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게 된다. 다음은 한국의 SDGs의 이행체제에 관한 절차이다.

75) 환경부·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한국의 SDGs 이행체제 구축현황”, 2018.7.26. SDSN 지속가능발전민간포럼 자료집, 12-6면.

<표 4-2> 2018 K-SDGs 수립 추진<sup>76)</sup>



UN의 SDGs 관련 세부 목표와 우리나라의 SDGs 세부 목표 수립에 있어서 현재 세부목표 147개와 지표 265개를 도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주요 신규 사항과 삭제된 목표는 다음과 같다.

76) 환경부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앞의 포럼 자료집, 3면.

<표 4-3> 주요 신규 및 삭제 세부목표<sup>77)</sup>

제외된 UN 세부목표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추가된 신규 세부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 1일 생계비 1.25달러 미만 인구 근절</li> <li>• 3-8 보편적 건강보장 서비스 제공(필수 백신)</li> <li>• 6-5 국경간 통합 물 자원 관리</li> <li>• 9-3 개발도상국 금융서비스 접근 가능성 강화</li> <li>• 10-5 글로벌 금융시장 모니터링 개선</li> <li>• 10-6 개발도상국의 입장 반영 강화</li> <li>• 9-c 보편적 인터넷 접근성 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 농가소득 증대 도모</li> <li>• 3.1 만성질환 관리 강화</li> <li>• 3-8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li> <li>• 6.3 물순환 개선 및 물 재이용 활성화, 수생태계 건강성 제고</li> <li>• 7-3 발전분야 오염물질 저감</li> <li>• 7-4 친환경차 확대</li> <li>• 9-2 산업의 다양성 추구</li> <li>• 12-8 환경교육 예산 확대</li> <li>• 14-4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li> <li>• 16-12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한 협력 증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남북 안보위협 감소 노력 사업의 수와 수준</li> <li>2.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공동 협력 사업 여부 및 수</li> </ol> </li> </ul>

SDGs 2030의 경우 기존의 MDGs와 달리 전 회원 국가를 대상으로 하며, 그 범위 및 적용 대상이 보다 세분화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국의 상황에 맞는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또한 국내에 맞으며,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이행방안과 이를 위한 지표 개발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본다. 다만, 그 지표의 경우 각 목표간의 상호 연계성이 매우 중요하며, 또한 특정 지표의 경우에는 정량화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이행보고서에서 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보다 구체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다.

77) 환경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앞의 포럼 자료집, 20-1면.



기존의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관한 지표를 살펴보면 총 84개의 지표로 사회·경제 분야에서 8개의 구분을 통하여 제시하여 왔으나, 이에 대한 정량화 과정에 관한 분석과 이행과정이 제시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논의 중인 SDGs 이행 성과 및 주요 지표 수립에 있어서는 정량화 및 매년 변동 사항을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으로 구분하고, 이를 연계할 수 있는 분석틀 개발을 통하여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제2절 델파이조사 결과 분석

### 1. 델파이조사 개요

SDGs의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각 부문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며, 현재까지 지속가능발전의 세부 목표가 환경 보호라는 측면에 치중되어 있던 부분 등이 환경·사회·경제 전 부문에 맞추어 균형있게 운영될 수 있는 체계 정립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MGoS와 같이 각 부문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하여 이행 목표 수립에 있어 반영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속가능발전의 이행목표 수립에 있어 근거인 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는 미비한 상태이며, 2030년까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한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운영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기존에 운영 중인 SDGs의 이행 체계에 있어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에 관하여 각 부문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델파이조사를 통하여 진행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에서 제안할 제도 개선안에 반영하는 방식을 통하여 그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동 델파이 조사는 총 3차례 진행되었으며, 2018년 6월부터 8월까지 제1차, 9월에 제2차, 10월에 제3차로 진행하였다.

동 델파이 조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으며, 그 조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 기후변화가 단지 환경에 관한 관리와 보존의 문제가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 보존과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적·제도적 대안의 마련은 전지구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필수 과제라 할 것
- 이에 본 연구원에서는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 수립에 관한 연구”라는 과제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의 대응을 위한 국내 법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
- 본 연구를 통해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실효성있는 제도 마련을 위하여 정부가 갖추어야 할 역할, 역량, 정책간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향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전문가의 고견을 수렴
- 본 연구는 3차에 걸쳐 델파이 방식으로 정책결정이나 사업기획을 위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고안된 조사방법의 하나로 진행
  - 조사대상 : 대학교, 공무원, 연구기관 전문가
  - 조사내용 : 지속가능성, 지속가능발전, SDGs 관련 AHP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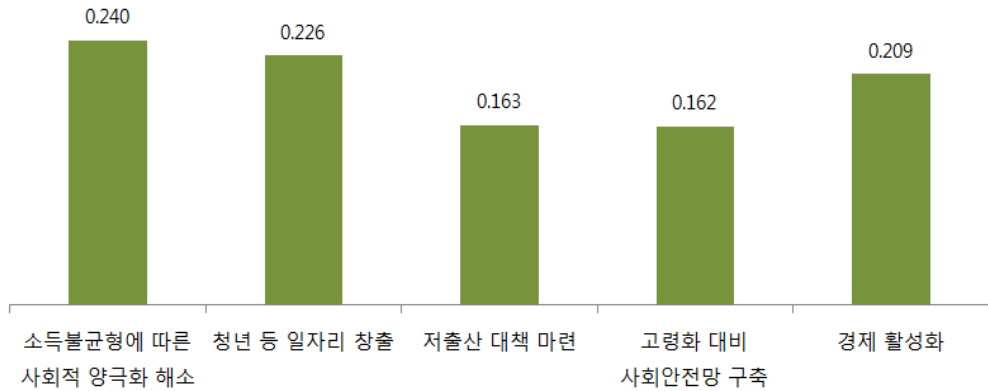
## 2. 델파이조사 결과

### 가. 경제분야

‘경제분야’의 경우에는 소득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 해소, 청년 등 일자리 창출, 저출산 대책 마련,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 경제 활성화 5가지 항목의 중요도 결과, 소득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 해소가 0.240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 등 일자리 창출이 0.226, 경제 활성화가 0.2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경제 상황

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부분으로 개선을 위한 시급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다.

<그림 4-1> 경제분야 중요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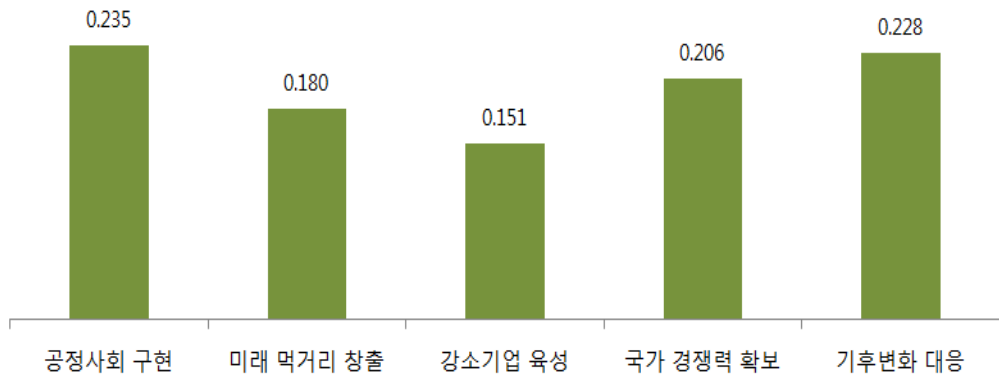
측정항목	중요도	우선순위
소득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 해소	0.240	1
청년 등 일자리 창출	0.226	2
저출산 대책 마련	0.163	4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	0.162	5
경제 활성화	0.209	3

\* 일관성지수(CI) 평균 : 0.0448

## 나. 사회분야

‘사회분야’의 경우에는 공정사회 구현, 미래 먹거리 창출, 강소기업 육성, 국가 경쟁력 확보, 기후변화 대응 5가지 항목이 중요하다고 선정되었으며, 그 중요도 결과를 살펴보면 공정사회 구현이 0.23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0.228, 국가 경쟁력 확보가 0.2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사회분야 중요도 결과



측정항목	중요도	우선순위
공정사회 구현	0.235	1
미래 먹거리 창출	0.180	4
강소기업 육성	0.151	5
국가 경쟁력 확보	0.206	3
기후변화 대응	0.228	2

\* 일관성지수(CI) 평균 : 0.0369

이와 같이 델파이조사 결과를 살펴볼 때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단지 환경에 국한된 의 미라기 보다는 경제와 사회 및 환경의 세 가지 축을 기준으로 조화를 통한 성장을 위한 기본 이념으로 보고 있으며, 그 추진 방향에 있어서도 경제와 사회분야와 함께 기후 변화 대응에 관한 논의가 균형있게 진행되어야 함을 함의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지속가능발전법」의 개정 방향 또한 이에 맞게 기후변화와 아울러 경제 성장과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기준을 담는 내용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제3절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안

현행 법체계를 살펴보면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법」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녹색성장기본법의 경우 기후변화·에너지·산업 등 전 부문을 포괄하는 기본법으로 각 부문별 이행계획 간의 정합성을 통합하여 관리 한다는 목적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녹색성장’의 개념이 기후변화 혹은 온실가스 감축 등의 의미로 많이 해석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에너지 전환 등의 문제 또한 함께 논의되고 있다. 또한 산업 등의 측면에 있어서도 녹색경제라는 패러다임 하에서 친환경 기업 혹은 친환경에너지원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기업 등으로 한정되어 관리 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논의했던 바와 같이 ‘지속가능발전’은 환경과 산업에 관한 측면 외에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차원의 많은 쟁점들 또한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와 이행방안 수립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이행계획과 추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현행 「지속가능발전법」에서 다루고 있어 그 역할에 관한 중복과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전략과 이행방안 그리고 그에 대한 지표개발과 성과 확산, 그리고 환류라는 절차를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담당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현행 「지속가능발전법」을 활용하는 것이 그 적용범위 및 관리적 차원에서 보다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의 「지속가능발전법」을 현재 논의 중인 관련 목표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범부처적이며, 각 부처간 유기적 연계성을 가지고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이 수립되고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기존의 제도화 필요성에 관한 검토 의견과 델파이조사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제안한다.

2010년에 삭제되었던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추진(제4조),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추진(제5조), 이행계획의 수립·추진(제6조) 등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에 다시 포함하고,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들은 삭제한다.

개정안 제3조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원칙은 관련 지속가능발전목표수립 및 관련 지표와 이를 기반으로 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세부 이행방안 수립에 있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으로 그 방향성을 명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특히, 델파이조사 등에서 제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의 경우 경제·사회·환경 부문에 있어 중시되어야 할 기준을 포함하여, 환경에 있어 미래세대를 위한 이용에 관한 부분을 명시하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내용을 정의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가와 국민, 기업의 의무에 관한 사항 또한 정의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장려하여 그 이행력을 담보한다.

<표 4-4> 지속가능발전 기본원칙 관련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 3 조 삭제	제 3 조 (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새로운 기술지식을 계속 생산할 수 있

현행	개정안
	<p>도록 경제제도를 정비하고 기업경영의 혁신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촉진한다.</p> <p>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제도를 정비하고 사회의 정의·안전과 통합을 촉진한다.</p> <p>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제도를 정비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 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하여 환경보전을 촉진한다.</p> <p>4.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환경에 있어 지속가능발전의 촉진을 위하여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하고, 새로운 문제 상황 대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행정제도의 정비와 혁신을 촉진하여야 한다.</p> <p>5. 국민과 기업은 국가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p> <p>6. 국가는 공정한 국제무역이 지속될 수 있는 국제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지속가능발전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논의와 이행의 경우에는 국가차원의 비전과 관련 과제로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이행과 성과를 위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이행이 요구되며,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이행에 관한 의무 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이는 구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상 삭제되었던 조항을 복원하여 SDG 2030의 달성을 위한 체계적 국가 전략 수립 방향과 내용을 명시하여 그 이행을 의무화하며, 각 부처별 노력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표 4-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관련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 4 조 삭제	<p>제 4 조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추진) ① 정부는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제시된 지속가능발전 구현을 위한 목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에너지·교통·국토이용·농업, 빈곤·건강·교육, 생태·물·해양·산림 등 경제·사회·환경 분야를 모두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p> <p>③ 국가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li> <li>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에 관한 사항</li> <li>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추진전략과 원칙에 관한 사항</li> <li>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의 기본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li> <li>5.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지표에 관한 사항</li> <li>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현행	개정안
	<p>④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⑤ 정부는 제14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국가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의 수립방법·절차와 정부 내의 업무분담체계 및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제 5 조 삭제	<p>제 5 조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추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본전략”은 “지방기본전략”으로,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는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로 본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제 6 조 삭제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이를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방법 및 절차와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p>제 6 조 (이행계획의 수립·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가이행계획(이하 “국가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p>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이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방이행계획(이하 “지방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이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⑤ 지방이행계획에 대하여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p>

현행	개정안
<p>제9조(추진상황의 점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삭제</p> <p>④ 삭제</p> <p>제12조 삭제</p>	<p>제9조(추진상황의 점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지방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지방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이행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p> <p>제12조 (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① 국가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법령의 제·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또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그 지위 및 역할, 전담조직 및 인력 확충 등을 동 법안에 명확히 하여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과 이행성과에 있어 구체적인 효과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안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특히, 현행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환경부 산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체계 및 운영 상 범부처적인 지표와 성과에 관한 부분에 미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세부 이행력 확보를 위한 위원회의 지위에 관한 검토가 시급히 요구된다. 이에 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안 제17조, 제17조의2)하고, 관련된 평가제도체계를 지방정부까지로 확산하여 지방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의 성과관리 등을 자발적으로 관리하도록 정한다(안 제13조). 아울러 지속가능발전의 추진에 있어 필요한 재정 지원(안 제22조)에 관한 근거 규정 또한 아래 개정안과 같이 마련되어야 한다.

&lt;표 4-6&gt;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를 위한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5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개 정>	제15조(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신 설>	제15조의2 (지속가능발전지원단) 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속가능발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격상되는 개정안에 따라 그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조항 또한 개정이 요구된다. 이는 대통령 산하 위원회라는 지위에 따라 관련 당연직위원의 구성을 현행 고위공무원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그 밖의 시민단체, 하계, 사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각 계층별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위원회의 업무 범위 등에 있어서 또한 현행의 ‘분야별로’라는 부분을 ‘환경·산업·사회·건강·국제개발협력 등’으로 열거하여 각 부문별 역할을 강조하고, 이에 연구와 검토를 위한 근거로 활용한다.

<표 4-7> 장관급 위원 선임과 전문위원회 설치를 위한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위원회의 기능)(생략)</p> <p>1. ~ 9. (생략)</p> <p>10.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 정책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해결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p>	<p>제16조(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p> <p>1. ~ 9. (현행과 같음)</p> <p>10.----- ----- ----- 관계부처 장관에 ----- -----</p>
<p>제1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생략)</p> <p>② 당연직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p> <p>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p> <p>④(생략)</p> <p>⑤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분야별로 전문적인 연구·검토를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둔다.</p> <p>⑥(생략)</p>	<p>제1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현행과 같음)</p> <p>② -----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 ----- ----- -----.</p> <p>③ ----- 대통령과 제2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p> <p>④(현행과 같음)</p> <p>⑤ ----- 환경·산업·사회·건강·국제개발협력 등에 관한 ----- -----.</p> <p>⑥(현행과 같음)</p>

&lt;표 4-8&gt; 위원회 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위원회의 구성 등) <신 설>	<p>제17조의2(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5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회의의 시기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지속가능발전의 경우 중앙정부 외에 지방정부의 역할과 성과가 지표 및 목표 달성에 있어 중요한 만큼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관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혹은 자발적인 부분으로 맡겨 놓기 보다는 이에 대한 제도적 의무화를 통하여 그 운영과 결과에 관한 체계성과 통일성을 구축한다. 이러한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거버넌스는 동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관련 별개의 조항을 통한 그 이행의 촉진하는 것은 향후 세부 이행에 있어 관련 부문 별 성과관리 차원에서 의미가 볼 수 있다.

&lt;표 4-9&gt;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을 위한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신설>	<p>제00조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5조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li> <li>2. 제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이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li> <li>3. 제9조 제3항에 따른 지방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li> <li>4. 제9조 제4항에 따른 행정계획의 검토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li> <li>5. 제12조에 따른 이행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li> <li>6. 제13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li> <li>7.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li> <li>8. 제21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li> <li>9. 제22조에 따른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li> <li>10.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li> </ol> <p>③ 지방위원회의 명칭·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국내외 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제21과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협력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간협력단체가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22조(국내외 협력 등)</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협력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간협력단체·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지속가능성지표 설정에 있어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따라 지방위원회에 관한 보고서 작성과 제출에 관한 부분 또한 추가하여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체계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한다.

<표 4-10>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성지표 설정을 위한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p> <p>②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p>	<p>제13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p> <p>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 -----.</p> <p>② ----- 국가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p>



현행	개정안
<p>③ (생략)</p> <p>제14조 (지속가능성보고서) ①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년마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4조 (지속가능성보고서) ① 국가위원회는 2년마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과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과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p> <p>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각 부처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중요성과 이행 확보를 위하여 그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이나 부처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속적 혹은 체계적인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필요 시 운영되는 조직 혹은 담당자가 아닌 일관성있게 운영되고, 각 부처별 필요 시 협조를 위하여 담당관 지정을 통한 운영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기로 한다. 이는 정부 부처 별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 차이, 이행 방법, 그리고 업무 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한 협업을 통하여 중장기

목표 달성과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의 도모를 위한 조직적 제도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다.

<표 4-11>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의 담당관 지정을 위한 개정안

현행	개정안
<p>&lt;신설&gt;</p>	<p>제00조 (지속가능발전책임관의 지정)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 및 그에 따른 이행계획, 제13조에 따라 작성한 지속가능발전지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p>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제5장

### 결론



## 제5장

## 결론

UN SDGs 2030의 경우 그 적용 범위가 전 국가로 확장되고, 그 대상 또한 사회·환경·경제 전 부문으로 확대함으로써 전 세계의 지속가능발전 체제 정립을 도모하고, 이에 따른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이에 발맞추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맞는 세부 이행목표와 관련 지표를 개발하여 국내적으로 균형있는 발전과 국외적으로는 국제기준에 타당한 수준의 양질의 성장에 동참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행체계는 사람, 지구환경, 번영, 평화 및 파트너십 등을 통하여 사회적 발전과 환경보호 그리고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MDGs의 체제 하에서 2000년 초부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내법 제정을 통하여 관련 이행방안 마련과 평가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2015년부터 SDGs 2030체제 하에서는 넓어진 범위와 보다 세분화된 지표에 적합한 국내 지표와 평가관리 체제를 활용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그룹의 의견 수렴 등 목표 수립단계에서부터 달라진 절차를 통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경우 SDGs 관련 지표의 개발은 UN에 제출하게 되는 국내 성과에 관한 평가 결과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으며, 이와 함께 국내적 상황의 개선이라는 실질적 효과를 도모하는 틀이라는 점에서 보다 중요성을 가진다고 본다. 이러한 지표의 개발은 단지 정량적 수치 외에 정성적 평가 항목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부분이며, 타 부처의 업무 등 타 부문과의 유기적으로 연계된 항목이 많다는 점에서도 관련 쟁점들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전략 수립과 이행방안 마련, 그리고 성과관리 등에 있어서 EU내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헌법과 같은 기본법 등의 단계에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관련 이행목표 수립과 성과관리를 위한 위원회 설립과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밖의 세부적인 이행방안은 개별법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와 달리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명시적인 법체계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그 중요성과 국제적 기준 등을 고려하여 관련 개별 법령에 이에 관한 내용을 담고, 내각 차원에서의 위원회를 통하여 구체적인 이행을 담당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퀘벡주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지속가능발전법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있다고 보여 지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경우에는 내각 차원에서 운영되며, 그 담당국을 환경부 산하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논의된 바와 같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이 환경보호라는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점차 그 범위가 확장되어 사회적 형평성과 미래세대를 고려한 성장이라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목표 수립과 이행에 있어 운영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각국의 상황과 정부조직체계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항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동 목표의 범위와 대상이 전 부문으로 관련 모든 부처와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 등 국민의 의견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를 담당하는 관리는 범부처적인 입장에서 이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내의 경우 환경부에서 이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장기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성과 관리를 위해서는 대통령 산하의 위원회로 승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각 부문별 종합계획과 기본계획 등이 작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계획별 우선순위나 그 해석상 정합성적인 측면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별 순위나 각 이행 계획별 우선적용에 관한 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보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이행계획과 위원회의 의견이 우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 중 녹색성장법 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다시 지속가능발전법에서 적용되도록 개정하고, 지방의회 등의 역할 강화와 자율적 노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동 지속가능발전

운영체제와 정책에 관한 정보가 민간에게 그 수립과 논의 과정에 관한 사항까지 투명하게 공개되어 그 원칙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절차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속가능발전의 경우 세부 이행의 경우 개별법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국가정책 수립과 이행에 있어 대원칙으로 작용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헌법 전문에 이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 또한 유의미한 작업이 되리라고 본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참고문헌**



## 참고문헌

- 고문현,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비교헌법적 연구”, 환경법연구 제32권 제3호, 한국환경법학회, 2010
- 관계부처합동,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 2016.1
- 김기성, “독일의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환경정책통합」 사회과학논집 제41집 제2호,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0
- 김기숙,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법적 지위와 적용사례분석”, 국제법학회논집 제52권 제3호, 2007
- 김병완, “녹색성장을 넘어 지속가능발전으로 - 국가비전과 이행체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회토론회 2013년 6월 13일
- 김은경,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추진 성과와 과제”, 국회 지속가능발전특위 심포지엄 국가지속가능발전 체계 재정립과 도약을 위한 향후 과제 2014년 12월 11일 제2세션 발제문
- 김인 외 24인,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등에 관한 연구, 환경부
- 김태균, SDGs 시대의 출범과 한국개발협력의 당면 과제, 국제개발협력학회동계학술대회, III-3세션
- 김태완 · 이주미,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추진 전략과 주요 내용: 빈곤 및 불평등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16 (10)
- 김성배,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정의의 기초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 김지현 · 송형만 · 조승현, “영국의 국가발전전략으로서 지속가능발전의 성과와 한계, 환경사회학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환경사회학회, 2007

- 노태호, “유엔의 SDGs 체제로의 전환과 국제동향”, 국가 지속가능발전 체계 재정립과 도약을 위한 향후 과제, 국회지속가능발전특위 심포지엄 2014년 12월 11일
- 박성현,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UN의 밀레니엄 발전 목표(MDGs)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관한 고찰”, 품질경영학회지 42(4)
- 박영도, “기본법의 법제상의 위치”, 『최신외국법제정보』, 한국법제연구원, 1993. 12
- 박정호 · 정소윤 · 김은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7
- 박정훈 “입법체계상 기본법의 본질에 관한 연구”, 『법조』 Vol.58 No. 12, 2009
- 오정화 · 박영실,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에 대한 국가통계 대응방안 수립, 통계개발원
- 이성훈, Post-2015 개발의제란 무엇인가: 한국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Issue Brief, 한국개발협력민간협의회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2014
- 임소진, 국제사회의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수립동향 및 한국 ODA의 기여방안, KOICA 개발정책 포커스 (14)
- 정영근 · 장민수, “지속가능발전의 논의와 발전방향”, 질서경제저널 제10권 1호, 한국질서경제학회, 2007
- 장인호, “헌법상 과제로서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 정인환 · 복진국 · 박정현 · 김정옥 · 박정순 · 유문종, “독일 및 영국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사례, 2005 유럽연구보고서,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2005
- 지속가능발전포털 (<http://ncsd.go.kr>, 방문일자 2018년 10월 24일)
- 최윤철, “지속가능발전원칙과 지속가능발전 기본”, 입법정책 제2권 제2호, 한국입법정책학회, 2008

- 한국법제연구원 율김(gyula Bándi, Marcel Szabo & Akos Szalau 지음), 지속가능성, 법 그리고 공공선택, 한국법제연구원, 2016
- 한국법제연구원,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 등 관련 법체계 연구』, 국무조정실, 2014
- 함태성,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의 관계정립에 관한 법적 고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안) 제정에 관한 법적 논쟁과 관련하여-”, 『환경법연구』 제31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09
- 홍준형, “환경법의 기본원리로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공법연구 제25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1997
-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12~’14)』, 2016.8
-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한 발전보고서』, 2005
- 환경부·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한국의 SDGs 이행체제 구축현황”, 2018.7.26. SDSN 지속가능발전민간포럼
- German Federal Government. Report of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to the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ainable Development 2016, 12 July.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10686HLPF-Bericht\\_final\\_EN.pdf](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10686HLPF-Bericht_final_EN.pdf).
- German Federal Government. German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New Version 2016 ([https://www.bundesregierung.de/Content/DE/\\_Anlagen/Nachhaltigkeit-wiederhergestellt/2017-06-20-nachhaltigkeit-neuaufgabe-engl.pdf?\\_blob=publicationFile&v=2](https://www.bundesregierung.de/Content/DE/_Anlagen/Nachhaltigkeit-wiederhergestellt/2017-06-20-nachhaltigkeit-neuaufgabe-engl.pdf?_blob=publicationFile&v=2). 방문일자 2018년 10월 24일)
- MDGs 최종보고서(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15)
- SDGMUN, 2016-2030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no.1 SDGMUN, 2015
-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부 록





## 부 록

### 1차 델파이조사

#### I. 과업의 목적

- 기후변화가 단지 환경에 관한 관리와 보존의 문제가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 보존과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적·제도적 대안의 마련은 전지구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필수과제라 할 것
- 이에 본 연구원에서는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 수립에 관한 연구”라는 과제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의 대응을 위한 국내 법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하고 수행
- 본 연구를 통해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실효성있는 제도 마련을 위하여 정부가 갖추어야 할 역할, 역량, 정책간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향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자 함.
- 본 연구는 3차에 걸쳐 델파이 방식으로 정책결정이나 사업기획을 위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고안된 조사방법의 하나로 진행함.

#### II. 과업의 내용

- 조사대상 : 대학교, 공무원, 연구기관 전문가
- 조사내용 : 지속가능성, 지속가능발전, SDGs

## 1차 전문가 조사 결과

## 1.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에 있어 우리 정부가 지향하여야 할 가치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역량/가치	내용 및 제안 이유
1	서울 시청	행정 심판 2팀	행복	궁극적으로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이 지구상에서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기후변화에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삶을 살도록 본질적 가치로서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함
			대응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시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대처해야 할 때를 놓치면 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봄
			능력	기후변화에 대응키 위해서는 왜 기후변화가 야기되었는가, 문제점이 무엇인가 등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이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법을 동원하는데 있어서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2	경기 대학교	환경 에너지 공학과	기후변화 및 영향에 긴급대응	<p>기후가 변함에 따른 세계 모든 국가들 간의 공동 대응이라는 대전제하에 또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기후변화 대책을 국가 정책에서 어느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 내지는 국제적은 통합 관리가 절실하다고 사료됨.</p> <p>또한 국가적으로 기후변화에 근본적인 대책이 어려울 경우 (아무리 각 국가가 노력한다고 해도 기후변화 자체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각 국가별로 기후변화 위험요소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교육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p> <p>이렇게 하기 위해 선진국과 저 개발 국가 간의 협력이 절실하고 지금 당장 기후변화에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국제기구들로부터 재정적, 기술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함.</p>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역량/가치	내용 및 제안 이유
3	동국대학교 (바이오 메디 캠퍼스)	바이오 환경 과학과	형평성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대응을 위한 전략과 방향성은 그 동안의 우리 삶의 방식의 상당부분을 대전환해야함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그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희생, 불편함, 불이익 등이 특정계층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보완정책들의 적극 활용이 필요
			효과성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대응에 있어서 효과성은 대응성의 가치, 국제협력가치, 책무성 등 다른 가치를 실현하고 아우르는 가치이며 모든 대응의 1차적 목표임.
			사회복지	국민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고 그 결과 적절한 대응에 의해 발생하는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되돌아갈 수 있게 한다.
4	성결대학교	국제 개발 협력 학부	환경적 가치 본질적 가치	환경은 비가역적 자원으로 한번 파괴하면 되돌릴 수 없으며, 환경파괴는 반드시 시간을 두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됨. 문제는 이 경우 환경을 파괴하는 사람과 그 피해를 보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이 더 문제임. 환경파괴의 피해는 사회적 약자가 더 심하게 보게 됨.
5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환경 공학부	본질적 가치 수단적 가치 등	본질적 가치: 지속가능에 대한 개념 정리 필요. 행복에 대한 정의 (소득 수준만 높이는 것이 행복한가? 인간의 행복 뿐 아니라 지구행복을 고려한 지구행복지수 향상에 대한 교육 및 정책 수립 요망 (지구행복지수 HPI Index: Happy Planet Index 참조 요망) 사회정의 및 환경정의- 소득간 야기되는 환경 불평등 문제.. 소득간 불균형으로 야기되는 사회 불평등 문제 해결 요망 도시집중 및 중앙집권 보다는 분권화 요망 (환경 및 기초 시설도 대형시설 보다 소규모 분산 기초시설 투자 요망
6	충북대학교	환경 공학과	행복 시장경제 경제성장 사회복지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대응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역량이라고 판단.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역량/가치	내용 및 제안 이유
7	세종대학교	기후변화센터	1. 정부와 시민과의 소통	기후변화라는 범지구적 문제의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정책을 뒷받침 하는 것은 국민의 인식과 지지입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더라도, 국민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지지하지 않으면 정책은 실패 할 수 밖에 없기에, 정부는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끊임없이 알려야 할 것입니다.
			2. 능력에 따른 실천	국내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및 재생에너지 3020 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에너지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에너지 정책 등은 현실적인 상황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에너지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이 궁극적으로 인류에 이로운 가치라고 하여도, 현실적인 대안을 갖추고 차차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8	KDI (한국개발연구원)	거시경제연구부	경제성장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게 되더라도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판단.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은 어떠한 형태로든 예산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며 지속적으로 예산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우리 정부가 지향하여야 할 가치로 생각함.
			고용·임금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정책을 수립하더라도 이를 따르는 국민들이 없으면 정책의 효용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함. 따라서, 우선은 국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을 때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선진국 형태의 고용여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9	KDI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현실부합성 내지 적용가능성	- 현재 기후변화 문제의 주요 요인은 경제활동으로 촉발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국민, 기업,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 하지만 대부분의 경제주체들은 기후변화 문제에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지만, 본인들의 편이성, 습관적 행태, 경제적 이익 등으로 인해 협조적인 행태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이익, 편이성 등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기후변화 문제에 협조할 수 있는 대안을 정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본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으로 판단됨.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역량/가치	내용 및 제안 이유
10	KDI (한국 개발 연구원)	공공 투자 관리 센터	행복/ 본질적 가치	수생태계 보호 및 복원 역량 강화(산, 산림, 습지, 강, 대수층 및 호수 등 물 관련 생태계를 보호 및 복원): 인류가 오래 동안 지속가능 하려면 수생태계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자연을 훼손하는 개발을 최소화하고 기존 생태계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음
			지속가능성 /수단적 가치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기후관련 위험요소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 및 탄력성 강화): 인류의 멸망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을 최소화하여 지구온난화속도를 최대한으로 늦출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사회복지/ 자본적 가치	식량안보 역량 강화(지속가능한 식품생산 및 생산량을 증대하는 회복력 있는 농업 경영 이행): 모든 생물은 먹고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식량을 무기화할 경우 전쟁 등을 유발하여 모든 지역이 황폐화될 수 있으므로 인류가 지속가능하려면 식량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11	KDI (한국 개발 연구원)	공공투 자관리 센터	수단적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대응에 있어 일반적으로 지향하여야 할 세부역량으로써 “국제협력”과 “효율성” 그리고 “책임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li> <li><input type="checkbox"/> 기후 변화 및 활용 가능 자원 변화 등에 따른 지속가능성 환경의 변화는 관련 이벤트가 발생하는 국가에만 국한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국가들에게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협력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됨.</li> <li><input type="checkbox"/> 지속가능성은 미래세대와 현재세대의 개발 또는 발전 필요성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제한된 자원을 고려할 때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배분을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li> <li><input type="checkbox"/> 아울러 현재세대의 개발은 미래세대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바,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개발에 대한 책임감 즉 책임성을 지향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li> </ul>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역량/가치	내용 및 제안 이유
12	KDI (한국 개발 연구원)	공공 투자 관리 센터	본질적 가치: 환경, 형평성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대응에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환경에 대한 가치가 우선시 되어야 함. 환경을 훼손시키고 이런 발전은 인정
			수단적 가치: 계층간 협력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또한 국가간 계층간 협력이 필수적임. 계층간 갈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전쟁, 지역감정 등) 들로 인해 지속가능성이 훼손 자기의 이득보다는 구성원 전체의 평등한 발전을 위한 협력 및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협력없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는 없음.
13	KDI (한국 개발 연구원)	산업· 서비스 경제 연구부	형평성	노약자,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의 취약계층은 기후변화에도 매우 민감함. 이는 환경에 대한 접근 기회의 불평등에서 야기되며, 이러한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형평성의 가치가 고려되어야 함.
			효율성	일반적으로 기후변화는 매우 다중적으로 일어나며 그 영향도 상이함. 제한된 예산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책목표를 세분화하고 명확하게 설정한 후 가장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해야 함.
14	KDI (한국 개발 연구원)	산업· 서비스 경제연 구부	수단적 가치: 적절한 외교적 대응, 정책의 합리성 및 일관성, 소통	수단적 가치: 초미세먼지 등의 이슈에 있어 주변국가에 대하여 적절한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며,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환경 및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한국은 특히나 정책에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환경, 여성 인권, 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미흡함. 눈앞에 놓인 당장의 이슈들만큼 장기적으로 보살펴야 하는 가치들에 대하여 깊게 논하고, 일관성 있게 지켜가야 함. 더불어 특정계층의 이야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가치들(보건, 교육)을 공평하게 지킬 줄 알아야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임.
			- 본질적 가치: 안정적인 주택마련, 형평성, 평등 행복	본질적 가치: 우리나라는 가장 기본적인 주거공간 마련조차도 쉽지 않으며, 결국 주택마련을 위해 결혼, 육아 등을 포기하는 세대들이 생겨나고 있음. 내 집 마련을 위해 인생의 나머지 과정들을 포기하는 세대들은 그 어떤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도 관심을 가질 수 없고, 미래에 희망을 품고 계획을 세워나가기보다 당장의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국가전체의 부를 축적하는 문제 뿐만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음.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역량/가치	내용 및 제안 이유
15	KDI (한국 개발 연구원)	산업· 서비스 경제연 구부	수단적 가치 & 자본적 가치	<p>1. 국제협력 및 경제성장: 기후변화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만큼 제일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국제협력이라고 생각함. 이를 위해 국제협약을 통한 공동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는 그 기준이 우리의 미래사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p> <p>2. 효율성 및 일자리 창출: 새롭게 생기는 규제 또는 협약이 경제 성장을 가로 막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그 안에서 일자리까지 창출 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예를 들어 플라스틱 사용억제가 종이빨대 등의 친환경 사업으로 전환된다면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도 생겨날 것으로 기대됨.</p>
16	KDI (한국 개발 연구원)	인적자 원정책 연구부	국제 협력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문제는 국가 간 협력과 공조가 필수적
			경제성	현실적으로 모든 환경문제를 다룰 수는 없으므로, 비용 대비 편익이 충분히 큰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엄밀한 비용-편익 분석이 필요
17	건축 도시 공간 연구소	건축연 구본부	회복성 (resilience)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에 대응하고 회복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
			공공성	자원의 부족과 불균형 문제가 심화될 경우 사적영역에 대한 공공 차원의 분배, 균형, 조정의 가치가 중요
			국제 협력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의 문제는 개별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지구 전체의 문제이므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기반되어야 함
18	건축 도시 공간 연구소	건축연 구본부	주체별 책무성 (의무감)	기후변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및 환경을 조성하는 과제는 특정 국가, 단체, 계층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며 모든 구성원이 인식하고 공감하고 행동해야할 의무임 또한 각각 주체마다 가져야할 의무감 및 책무의 규모와 내용이 다르며 이를 형평성 있게 분배하여 각자 위치에서 가지고 있어야함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역량/가치	내용 및 제안 이유
19	건축 도시 공간 연구소	건축 연구 본부	본질적 가치	평등 및 형평성 지향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대응에 있어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수준에 관계없이 동등한 여건이 전제되어야 함
			수단적 가치	소통 및 대응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가적 대응역량 향상을 위해서는 상호 서통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 판단됨
20	건축 도시 공간 연구소	공간 문화 연구 본부	사회 복지 강화	차세대 기술(4차 산업) 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기술을 독점하는 소수 기업이 자본을 독점하는 양상이 가속화되고 사회적·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복지가 더욱 필요해질 것으로 생각됨
			환경 보전	전세계적으로(특히 개도국에서)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전지구적인 생태 및 도시 환경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 환경 보전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과 위생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라 생각됨
21	건축도 시공간 연구소	도시연 구본부	지속가능성	기후로 인한 재난재해 증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한 리스크가 과도하게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되고 있음 - 이는 국민이나 기업의 개별적 노력으로 해소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 대응이 시급
			효율성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행정적,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이 높은 정책 프로그램부터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역량/가치	내용 및 제안 이유
22	건축 도시 공간 연구소	도시 연구 본부	현대적 에너지 서비스 제공	우리나라 정부는 2007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창한 이후 에너지 생산시장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구조가 강세를 되어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에너지 서비스 기반을 운영함으로써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태양광발전 모듈가격 인하로 경제성을 확보 했지만, 아직 사회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에 대한 인식이 나빠 시설 확대보급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국가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기 위해 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노력하고, 더불어 에너지서비스 인프라 확대에 지원정책을 추진해야한다.
			탄력적 인프라 구축, 포용적 산업화 및 혁신 촉진	지난 40~50년간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해오던 중공업분야가 경쟁력을 잃고 있지만, 그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현재 없는 상태다. 고용률에 집착한 나머지 산업기반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한 덕에 부실하고 지속고용이 불확실한 임시직 직업군이 양산되었다. 강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1회성 지원사업에 그치고 있고, 금융기관은 리스크관리에 집중한 나머지 대출의 대부분을 부동산 대출에 집중하고 기업지원 대출은 축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현재 산업의 탄력성을 거의 잃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과거의 패러다임의 연속성을 포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산업기반이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부분을 모니터링해 그들이 기반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지원을 해야할 것이다.
			기후변화 및 영향에 긴급대응	우리나라정부는 기후변화를 인간의 노력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었다는 가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올 것인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건축물이 기후변화에 대한 극한의 영향이 왔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정책을 위한 계획이 실제 운영주체가 실행 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응방안에 대한 이행전략이 필요하다.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역량/가치	내용 및 제안 이유
23	과학 기술 정책 연구원	미래 연구 센터	- 지속 가능성 - 포용성	<p>지속가능성:</p> <p>1)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건강/환경의 관점은 간과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점차 증가되고 있음 (원래 없었는데, 새로 생긴 것도 있겠지만, 과거부터 사용하던 물질이지만, 과거에는 그 물질이 인간/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알려지지 않아, 피해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경우도 많음). 이러한 유해물질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기후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됨 (정화에 소모되는 물/에너지 사용, 토양오염 등)</p> <p>2) 그 외, 국토 난개발이 가져오는 환경파괴</p> <p>포용성</p> <p>1) 앞으로 고령화, 여성경제활동 증가로 노동자 권익보호, 여성 및 고령 노동자 권리 향상 등이 중요해짐</p>
24	국토 연구원	국토 인프라 연구 본부	<p>대응성 및 능력</p> <p>국제협력</p>	<p>기후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대응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성 (능력) 확보가 요구됨</p> <p>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서는 한 지역, 한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인근국가와 협업을 통해 또는 전 세계가 함께 협업하는 체계가 필수이므로 국제협력이 중요함</p>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역량/가치	내용 및 제안 이유
25	산업 연구원	국제 산업 통상 연구 본부	효율성	기후변화 문제는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하기 쉬운 사안임.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서 과학적 연구에 근거를 둔 효율성을 도외시 하는 경우 이해관계자 및 해당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치적 힘겨루기의 사안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 이 경우 비용은 과도하게 투입되면서 결과물은 투입된 비용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효율성의 문제는 자연과학적 성격과 정치적 이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후변화와 같은 사안에서 최우선적으로 앞세워야 할 가치임
			소통	정치적 이슈의 성격을 가지는 사안이기에 때문에 의사결정권자가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일부의 주장에만 귀를 기울여 일방통행식 정책수립 및 실행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러한 경우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은 물론 정책수립 및 집행에 대한 저항에 따른 비효율성 등을 초래하여 본래 의도된 정책목표와는 동떨어진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음
			국제협력	기후문제는 개별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한 국가라도 비협조적인 국가가 존재할 경우 죄수의 딜레마 게임의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음. 따라서 국제협력과 공조방안 모색은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
26	에너지 경제 연구원	기후 변화 정책 연구 본부	본질적 가치: 유연성	예측 불가한 기후변화 위험요인에 대해 사전적으로 예지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는 형태의 유연한 사회가 구현되어야 함
			수단적 가치: 신뢰성	사회전반의 신뢰가 결여되는 경우, 특히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구성원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경우 사회의 결집력이 떨어지게 되어 사회 전체 시스템 차원에서 대응력 확보가 어렵게 됨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역량/가치	내용 및 제안 이유
27	에너지 경제 연구원	기후 변화 정책 연구 본부	국민 수용성 확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시작하는 데, 국가적·사회적 비용이 발생함. 예를 들어, 탈화석 발전 인한 발전 비용 상승은 공급자인 발전회사와 소비자인 국민이 일정 부분만큼 나누어 부담해야 함. 기후변화대응을 지속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국민이 원활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후변화대응의 필요성 및 편익, 보상체계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법·제도 수립이 필요함
			신성장 동력확보	기후변화대응은 산업구조 변화를 동반함. 특히, 에너지산업 부문의 산업구조 변화가 크게 나타남. 예를 들어, 탈원전·탈석탄 등과 같은 정책은 원자력과 석탄 관련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반면, 새로운 산업이 발전할 기회도 나타나는데, 예컨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태양광, 풍력 등과 관련된 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됨. 그러므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대응에 있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 에너지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된 신산업을 적극 발전하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함.
28	에너지 경제연 구원	기후변 화정책 연구분 부	본질적 가치: 번영/행복	본질적 가치: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대응에서 번영/행복을 본질적 가치로 두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번영이라는 것은 양적인 수준에서의 성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번영/행복은 국민 생활 전반의 향상과 이에 부가되는 행복의 증가를 고려한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단적 가치: 균형	수단적 가치: ‘균형’이라는 가치 또는 역량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대응의 과정에서 특정한 가치나 역량이 지나치게 강조되어서 다른 가치나 영향이 훼손되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지속가능성은 리비히의 법칙이 작용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가장 약한 고리가 전체의 번영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가치가 균형을 가지고 고려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환경적 가치가 강조되는 것은 안전성, 환경성에 대한 그 동안의 부족한 동 분야 역량을 채우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됩니다만 그 과정에서도 전통적인 경제성장, 일자리 등에 대한 관심도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역량/가치	내용 및 제안 이유
29	에너지 경제 연구원	석유 가스 정책 연구 본부	수단적 가치 (윤리측면, 사회적 자본)	<p>과거에는 정부의 목표가 기업의 성장 위주였기 때문에, 기업들도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주주의 부를 증대하기 위해 운영되면서 환경의 훼손이 필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나 많은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하면서 주주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해관계자와 환경 측면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나 기업들은 경제적 책임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환경에 대해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하계 고려하여 기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p> <p>정부는 정책 입안과 조정을 통해 주어진 방향으로 사회를 이끌도록 리더십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했고, 전기차나 구매자에게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 활성화와 전기차에 필요한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조성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정책들이 필요합니다.</p>
30	에너지 경제 연구원	에너지 국제 협력 본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속 가능성과 환경성</li> <li>2. 국민의 행복</li> <li>3. 국제 협력</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지속가능성과 환경성이라는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임. 해당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와 동시에 다른 가치들을 병행해서 추구함으로써,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함</li> <li>2. 지속가능성과 환경성을 포함해서, 국가가 가치를 추구하며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는 국민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이 가치 추구는 경제 성장과 임금, 정의 등의 다른 가치를 포괄하는 것임.</li> <li>3.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국제 협력은 필수적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 상, 인접국과의 협력이 커다란 과제로 남아 있음.</li> </ol>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역량/가치	내용 및 제안 이유
31	에너지 경제연 구원	에너지 정보통 계센터	본질적 가치 (행복)	지구는 지금 플라스틱 공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수명단축, 생태계 파괴 등 그 충격파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류의 멸망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인간의 궁극적 목표가 행복이니 만큼, 환경에서 오는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제거해야 행복을 이루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강, 바다를 더 이상 플라스틱으로 오염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2	에너지 경제연 구원	에너지 정보통 계센터	후생적 가치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생활 위해, 자연 파괴, 생태계 교란, 식량생산 위협 등 인간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는 요소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추구
			기술적 역량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수용성 및 경제성을 갖춘, 효율적이며 비용효과적인 에너지시스템에 대한 기술개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역량/가치	내용 및 제안 이유
33	에너지 경제연구 연구원	전략정 책연구 본부	본질적 가치 : 평등과 형평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구는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영속적으로 살아가야 할 생활 터전이므로 국가, 빈부, 노소와 관계없이 누구라도 깨끗하고 건전하게 이용해야 하며 아름답게 보존할 의무를 지님.</li> </ul>
			수단적 가치: 효율성, 지속성, 소통, 합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전한 자연환경을 아름답게 보존하여 물려주기 위해서는 전지구의 누구라 할 것 없이 당연히 그래야 하는 당위성을 가지도록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야 함.</li> <li>-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은 급속하며, 공감대 형성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함. 그러므로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성과 지속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li> <li>- 경제성장의 단계에 따라 환경보전의 의무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중장기 전략 수립이 요청됨.</li> <li>- 이 때 성장과 환경보전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 중요하며, 정권의 변화에도 변함없이 정책의 큰 틀은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li> <li>- 이를 위해 법률로 지속가능 정책의 큰 틀을 마련하고 정권의 변화에도 지속되어야 함.</li> </ul>
			자본적 가치 : 사회적 자본, 사회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화를 위한 자연파괴를 당연시 하던 시절이 있었고, 그로인한 자연의 반응은 자연재해로 되돌아와 경제성장의 둔화는 물론 인류의 삶 자체를 위협하게 만들고 있음.</li> <li>- 그러므로 그간 성장을 위해 파괴했던 자연을 치유하는 정책과 경제성장 정책이 공존할 수 있는 구조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li> <li>- 자연과 함께하는 창조적인 성장 동력을 발굴함으로써 사회 복지적 차원에서 자연을 복원시키고 그 속에서 인간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 나감.</li> </ul>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역량/가치	내용 및 제안 이유
34	에너지 경제 연구원	전력 정책 연구 본부	형평성, 수용성, 민주주의, 경제안정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프레임은 경제 생태계를 변화시켜 산업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커다란 외부 충격이다. 따라서 특정 산업이나 특정 집단이 일방적으로 손실을 감당해야할 수 있어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대규모적인 계획을 효율적으로 이행하는데 무엇보다 국민들의 수용성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하에서 수용성을 높이는 것은 비용과도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와 경제안정을 보전하면서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35	에너지 경제 연구원	전력 정책 연구 본부	본질적가치 (형평성) 수단적가치 (권력의 정당성)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압축적인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과 비슷한 원인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둘 다 경쟁력있는 공급자의 능력을 극대화 시켜 국가 전체적인 부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개인들의 자유나, 재산권 등과 같은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성장이후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위한 노력을 간과하는 경향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발생하면서 전지구적으로는 기후변화라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특화된 정책이나, 기술적인 해결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경제성장과 지속가능성의 주체라는 인식이 생겨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개인의 기본권을 더 존중해나가는 과정에서 권력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36	육아 정책 연구소	아동 패널 연구팀	수단적 가치 (책무성) 수단적가치 (효과성)	기후변화 문제는 전세계의 모든 국민, 모든 정부가 책임감을 가져야 할 문제임. 정부는 기후변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역량/가치	내용 및 제안 이유
37	육아 정책 연구소	국제 협력팀	정주권/ 계속주거권	인간의 계속주거권의 문제는 과도한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문제는 주택뿐 아니라 상가 문제로까지 최근 번지고 있습니다. 과거 급속한 개발시기에는 도시 재개발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였습니다. 또한 생태환경적 측면에서도 개발로 인한 동식물의 생태환경이 파괴되는 것 역시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이 인간뿐 아니라 동식물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존의 주거 및 생활공간을 빼앗기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주권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양성 강화/보호 (소수자 의견 존중)	대량생산으로 대표되는 산업혁명은 균일한 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얻을 수 있는 효율성은 얻었으나 획일화된 결과 및 자원 남용과 이에 따른 회복하기 어려운 자연과 파괴를 경험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을지라도, 기득권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다수의 집단에 속하지 못한 소수자와 소수의견이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식물의 경우에도 종다양성을 지키지 못하면 흔히 캐번디시 바나나의 교혼과 같이 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남용(abuse) 하지 않기	법률과 관행에 의해서 보장된 권리라고 할지라도 권리를 남용하여 자원을 낭비하고 타인과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화폐 채굴을 위해 막대한 전기를 사용하는 고성능 컴퓨터로 의미 없는 수치연산을 수행하는 행위, 종량제가 아닌 정액제 인터넷 사용을 남용하여 음원의 온라인 순위를 조작하는 행위와 같은 것이 소위 “물쓰듯” 자원을 남용하는 예라고 하겠습니다.)
38	육아 정책 연구소	국제 협력팀	본질적 가치 (삶의 질), 수단적 가치 (대응성), 자본적 가치 (경제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의 변화에 따른 생활 환경의 변화로 저하될 수 있는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함.</li> <li>- 변화하는 기후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대응성이 중요.</li> </ul> 가장 기본적인 기후여건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필요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역량/가치	내용 및 제안 이유
39	육아 정책 연구소	국제 협력팀	본질적 가치 (행복)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긍정적 정서 및 정신건강과 연관된 가치라는 것과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및 자살률을 고려하여, 어떻게 기후변화에 대한 지속가능성 대응을 통해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킬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함.
			수단적 가치 (소통)	지속가능성의 여부는 얼마큼 대중과 충실히 소통했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여짐. 결국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에 대응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생활에서 제도를 접하며, 실행하게 될 주체가 국민들이기 때문임.
40	한국 교통 연구원	미래 교통 전략 연구소	“정의”라는 본질적 가치와 “시장경제”라는 수단적 가치 지향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는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사항인 세대간 형평성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본질적 가치이기 때문임</li> <li>- ‘시장경제’라는 수단적 가치를 활용하여 형평성에 의해 저해될 수 있는 효율성을 유지 필요</li> </ul>
41	한국 교통 연구원	도로 교통 본부	본질적 가치 (형평성), 자본적 가치 (경제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구성원인 국민들의 이익을 추구함에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추구해야 할 가치는 “형평성”으로 판단됨</li> <li>- 전반적인 경제지표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구성원간의 형평성으로 판단되며 현재 국민들이 가장 불만인 요소가 형평성의 불균형에서 오는 부익부 빈익빈의 차이 심화를 들 수 있음</li> <li>- 지형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경제성장으로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밖에 없는 환경임</li> <li>- 따라서 경제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li> </ul>
42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농업·농촌 정책 연구 본부	시민 참여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인간과 생태계가 훼손,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역량/가치	내용 및 제안 이유
43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농림 산업 정책 연구 본부	· 본질적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해방: 인간이 경제체제의 실질적 주인(주체)이 되는 것.</li> <li>- 이유: 현행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인간이 경제영역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주인이 되는 것이나, 이 체제 하의 역할담당자(노동자, 자본가, 소비자 등)로서 머물고 실질적인 주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 반면에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경제체제는 자체의 내적 논리에 따라 끊임없는 이윤 확대, 인간과 자연(자원)에 약탈, 이로 인한 전지구적 지속가능성을 파괴하고 있음.</li> </ul>
			· 수단적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경제 바깥의 다른 경제양식들(돌봄경제, 가정의 부양경제 등)을 강화시켜 시장경제를 견제할 수 있는 경제의 다른 축이 될 수 있게 함.</li> <li>- 지금까지 무가치한 것으로 인정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던 가사노동이나 자연의 활동에 대해 그 가치를 인정하고 여기에 대한 돌봄(케어)이 이루어지게 함.</li> <li>- 이를 위한 수단(이런 활동을 육성하는 수단)으로 기본소득 도입 등을 고려함.</li> </ul>
44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농림 산업 정책 연구 본부	식량안보 확보 및 취약계층의 식량 접근성 보장	<p>기후변화에 따른 식량 생산 패턴의 변화와 병해충 발생 등 식량 생산환경 변화 가능성 존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 지대별 식량 생산 예측 모형 개발 및 중장기 전망</li> <li>- 중장기 변화 추이를 반영한 작물별 품종 개발, 작부체계 확립 등 생산성 향상 필요</li> <li>- 가구 소득 격차 발생을 대비한 취약계층의 식량 접근성 보장</li> </ul> <p>본질적 가치 측면: 모든 국민이 적정한 가격에 충분하게 식량을 공급 받을 수 있어야 함. 이는 모든 국민이 형평성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임.</p> <p>자본적 가치 측면: 농업부문의 성장을 통한 경제성장에 기여 및 사회복지 실현이 가능</p>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역량/가치	내용 및 제안 이유
45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농림 산업 정책 연구 본부	평등 투명성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등: 경제(소득 불균형), 지역(도시-농촌 삶의 질, 소득 등) 불균형(불평등) 등 다방면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은 계층간, 지역 간 등 다방면의 상호 갈등을 초래하면서, 국가 전체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유지에 악영향을 미침.</li> <li>· 투명성: 급격한 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국가, 사회, 경제, 정치 등의 작동을 뒷받침해주는 프로세스가 효율성을 중시하면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다수의 불투명한 관여(개입), 활동이 결합되면서 사회, 국가적 불신이 확대됨. 이는 국가, 사회 등의 건전한 작동을 저해함.</li> <li>· 고용: 최근 발생하는 저고용(특히 청년층)은 저고용-저출산-저성장으로 이어지면서(순환되면서) 국가 발전의 선순환을 저해하는 근본적 요인으로 작용함. 또한 노후 보장(복지)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 현실에서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인층이 60대 이후 경제적 여건(소득 창출원, 일자리)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삶을 영위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국가적 또는 가계 부담이 되고 있음(청년의 부담으로 다시 전가 가능성 높음).</li> </ul>
46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농림 산업 정책 연구 본부	복지 및 사회적 자본	포용적 성장 관점에서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대한민국의 저출산과 인구고령화를 대비가 필요
			형평성	차별적인 법, 정책 및 관행 등을 철폐하여 동등한 기회 보장을 통해 불평등 해소
			지속 가능성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시스템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생태계에 대한 보전 및 유지관리가 필요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역량/가치	내용 및 제안 이유
47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농림 산업 정책 연구 본부	자본적 가치 (사회복지)	기후변화 대응은 실질적이며 인간의 생존과 연결된 문제임. 또한 기후라는 공공재 성격의 환경재를 잘 관리하지 못한 시장실패에도 그 원인이 있음. 따라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치 혹은 역량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함.
			수단적 가치 (시장경제/ 지속 가능성)	기후변화 노출과 민감도 그리고 적응 능력은 사회계층에 따라 다름. 일반적으로 저소득계층일수록 기후변화에 대한 노출과 민감도는 높이며, 적응 능력은 낮음. 따라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취약계층관련 정책 역량이 매우 중요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기존의 시장 매커니즘이 아닌 공적부분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 부분임. 하지만 그 방식은 시장 친화적이어야 함. 이는 정부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에도 연관이 되어 있음. 예를 들어, 공급위주의 환경정책과 산업정책은 미국의 바이오 연료 정책과 같이 의도하지 않은 정책효과가 발생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음. 따라서 시장에서 할 수 없는 장기적인 투자와 정보생산, 그리고 외부효과 교정을 위한 환경세 등과 같은 시장 친화적인 매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함.
48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농림 산업 정책 연구 본부	형평성	올해 폭염에서 보았듯이 사회적경제적 약자는 기후변화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들이 기후변화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기후변화 정책에서 정책대상으로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주요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구조 개혁 (지속 가능성)	1990년대 이후 대량생산대량소비를 지향하는 포디즘 체제가 많이 약화되기는 했으나, 에너지 소비량 및 쓰레기 발생량 증가 측면에서 우리 경제 발전은 기후변화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학교, 직장, 농촌, 도시 삶의 전 영역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생산·소비·경제 발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급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생활 주변에서 작은 실천	아직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러한 자각없이는 국민 개개인의 행동 변화와 더 나아가 국가정책에 대한 압력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실천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 교육, 직장 내 시스템 등이 바뀌어야 합니다.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역량/가치	내용 및 제안 이유
49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국제 농업 개발 협력 센터	공동의 책임의식과 부담	선진국, 개도국이 동일하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역량의 수준에 맞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실천하고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강제적 규제와 자율적 규제의 혼합	자발적 노력(가령 상호준수) 등 자율적 규제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경우 과감하게 법과 규정에 따라 강제적 규제를 도입, 강화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성 유지가 캠페인으로는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함.
50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국제 농업 개발 협력 센터	1. 참여적 접근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발전 의제 설정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절차적 투명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2. 포괄성	빈곤층, 아동, 장애인, 여성, 노인 등 하위 주체가 지속가능발전 계획 및 이행과정에서 소외,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51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연구 기획 조정실	본질적 가치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대응에 있어 일반적으로 지향하여야 할 가치는 본질적 가치이며, 그 중 ‘자유’와 ‘행복’이 우선이라고 생각함. 그 이유는 기후변화는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와 행복을 침해하는, 인류의 존재 자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임.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자유와 행복을 지속시켜야 하는 본질적인 가치가 우선되어야 이를 위한 수단적 가치와 자본적 가치가 의미 있어 질 것임.
			수단적 가치	다음으로는 수단적 가치이며, 이 중 ‘대응성’과 ‘국제협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기후변화는 모든 국가들이 함께 대응해야 하는 쟁점이므로 국제협력을 통해 기후분야와 지속가능성 관련 국가별, 분야별 단기 및 중장기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거나 대응의 방향성을 통합적으로 구축해 나갈 수 있음.
52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보건 의료 연구실	본질적 가치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저소득국가 국민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하는데 다각적인 노력과 지원을 반영하고 있음.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역량/가치	내용 및 제안 이유
53	한국 해양 수산 개발원	수산 정책 연구실	본질적 가치	- 공존, 분배, 형평 → 일류에게 필요한 자원의 한계 → 제한된 자원이 공평하게 분배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 = 형평성 달성
			수단적 가치	- 법치주의, 효율성(능률성), 효과성 → 목적과 성과의 정당성을 위해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능률성)과 효과성 확립 필요
			자본적 가치	- 성장과 복지, 주거 안정, 일자리 창출 → 성장을 바탕으로 복지와 주거 안정, 그리고 종신 고용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립형 참여 체계 확립
54	서울 연구원	안전 환경 연구실	합리성	특정가치를 위해 과도한 경쟁, 손실 등을 감수하는 정책 (행위)은 지양되어야 함
			지속성	성장, 발전의 개념이 아닌 지속성에 초점을 두어야 함
			회복력	지속적 성장이 아닌 대응력 강화 필요(특히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사회, 환경의 회복력이 가장 중요)
55	한국 과학 기술 기획 평가원	R&D 평가 센터	포용성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가치: 모든 사람이 참여하여 추구 하는 가치
			형평성	장애자, 여성 등 취약계층도 함께 혜택 받는 가치: 모든 사람이 참여하더라도 그 중 취약계층도 함께 혜택 받을 수 있는 가치
			지속가능성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후세대도 혜택 받는 가치: 시간의 변화에도 동일하게 혜택받을 수 있는 가치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역량/가치	내용 및 제안 이유
56	한국 과학 기술 연구원	고온 에너지 재료 연구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li> <li>- 지속 가능성</li> <li>- 사회복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는 인류가 부와 성장, 효율성 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기심과 탐욕을 제어하지 못해 생겨난 재난임. 이에 본질적 가치로서 정의가 중요한 가치로 생각됨.</li> <li>- 기후변화 대응을 논함에 있어서도 역시 이기심과 탐욕이 영향을 미쳐 단기적이고 편향적인 대응책이 쏟아지고 있어, 무엇보다도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응책을 심도있게 추구해야 함.</li> <li>- 기후변화에 따라 결과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취약계층임. 폭염/혹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고 에너지 빈곤 계층은 이에 대한 기본적인 생존권도 확보하기 어려움. 따라서 에너지 효율, 지속가능 에너지 등 여러 가지 기후변화 대응책의 혜택이 사회복지 측면에서 분배될 수 있어야 함.</li> </ul>
57	한국 환경 정책 평가 연구원	미래 환경 연구 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의</li> <li>사회적 자본</li> </ul>	<p>기후변화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 영향과 리스크, 피해 경험계층간의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은 온실가스 배출책임은 낮은 반면 기후변화 피해는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어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게 됨</p> <p>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체적 가치와 사회문화적 본질적 요소로서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자본의 보완재로서의 기능을 담당</p>

## 2.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관점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관점	내용 및 제안 이유
1	서울 시청	행정 심판 2팀	국제협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등의 문제는 전지구적인 문제이므로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공동대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함
			생태계 보존 등 개발제한	인간 거주영역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니깐 무분별하게 자연을 개발하지 말고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여 생태계 보존
2	경기 대학교	환경 에너지 공학과	물과 위생에 대한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p>사회적 관점 :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의 영향을 long-term simulation을 해 보면 강우의 경우 강우량은 증가하고 강우 일수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지금도 우리나라는 UN에서 지정한 물 부족국가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물 공급은 90%이상을 지표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이나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정량의 물 공급을 위해서 정책적 고려를 고민하고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함.</p> <p>이러한 기후변화의 원인으로서는 현재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에 근본 원인이 있는바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지향하는 정책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지금과 같이 급작스러운 원자력에너지의 비중을 축소하는 것은 후에 엄청난 부담으로 올 가능성이 큼.</p> <p>위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지표수가 가장 중요한 수자원인데 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량뿐만 아니라 수질을 유지내지는 개선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들에 대한 방류수질 개선과 확충을 위한 예산과 정책적 고려가 시급함.</p>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관점	내용 및 제안 이유
3	동국대학교 (바이오 메디 캠퍼스)	바이오 환경 과학과	1.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교육과 홍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 그리고 지지하에서 이행되는 모든 현안들은 보다 수월하게 이행되므로
			2. 부담금	모든 현안의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적절하고 형평성 있는 배분이 보장되어야 각 주체의 저항 없는 참여 속에서 목표달성이 가능함
4	성결대학교	국제 개발 협력 학부	환경적 경제적 정치적 관점	<p>환경보전은 당연하나,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추진되고 있음. 원자력 발전소가 그 예임. 충분한 대체에너지 수단을 확보하고 원자력 발전소 문제를 접근하여야 함. 또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 건설하지 않는 것이 원자력 연구의 소홀로 이어져서는 안됨.</p> <p>환경을 보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약함. 환경파괴행위에 대한 처벌도 약하고, 무엇보다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공급하는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음.</p>
5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환경 공학부	1. 식량 안보	Goal 2. 식량안보: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 저조함- 절대농지 확보 및 유지 필요. 식량자원의 다변화 필요. 농업 장려정책 필요
			2. 에너지 안보	Goal 7. 현대적 에너지 서비스 제공: 우리나라 미세먼지 (PM10, PM 2.5) 세계 최악 수준임. 이로 인한 환경문제..사회적 이슈. 등 문제점으로 대두.. 화석연료대신 청정 에너지 개발 시급 및 에너지 절감 정책 필요
			3. 지속 가능 사회 구현에 대한 인식 전환 요망	Goal 12 지속가능한 소비-생산패턴 우리나라는 최근 소득에 비해 소비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한 천연자원감소, 음식물 쓰레기 증가, 폐기물 증가로 인한 환경문제를 유발함. 또한 소득계층간 빈부 격차 점차 심각해지고 있음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관점	내용 및 제안 이유
6	충북대학교	환경공학과	사회적 관점	환경복지: 인간으로서의 환경복지의 극대화와 적절한 분배가 필요함. 기후변화나 환경오염으로 부터의 취약한 계층과 지역주민을 위한 혜택이 필요
			환경적 관점	재생에너지의 개발: 미래의 에너지 안보의 불확실성과 화석연료 기반 사회의 몰락에 대한 대비가 필요. 여러 관점에서의 재생에너지 개발이 있으며 이중에 폐자원 이용한 에너지화는 환경+에너지 안보를 확립할 수 있는 장점
			경제적 관점	기후변화대응산업 육성: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이에 대한 기후변화대응산업의 규모가 커질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기술의 선점이 중요함
7	세종대학교	기후변화센터	1. 에너지 안보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약 95%를 수입해서 사용하는 나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에너지안보를 우선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안보를 위해선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기술과 고효율 기술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에너지안보를 우선시하면, 다른 부분은 자연스럽게 함께 발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에너지 복지정책	기본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이란 환경뿐만이 아닌 빈곤구제 및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장기적인 발전이 목표이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틀 안에서 환경과 빈곤 두 가지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이 에너지 복지정책이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관점	내용 및 제안 이유
8	KDI (한국 개발 연구원)	거시 경제 연구부	기후변화 대응산업 육성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산업들이 부상될 가능성이 높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됨. 따라서 선진국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함.
			취약계층 지원	인구구조가 점차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됨. 특히 노령인구들은 일부 연금을 제외하고는 생계수단이 부족하며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함.
			국제협력	현대사회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발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함.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관계 정립을 통해 우리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외교방안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봄.
9	KDI (한국 개발 연구원)	경제 정보 센터	경제성과 국제사회의 협조	환경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도 경제적 이익과 편리성을 제공해 줄 수 있을 때 환경을 보존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임.  또한 기후 환경 문제는 특정 국가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님으로 주변 국가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
10	KDI (한국 개발 연구원)	공공투 자관리 센터	사회적 관점	사회적 관점(기후변화 등으로부터 취약계층보호): 빈곤과 취약한 상황에 있는 인구의 회복력을 키우고, 기후 관련 극한 상황 혹은 기타 경제/사회/환경적 충격 및 재난의 노출 및 취약성 감소
			정치적 관점	정치적 관점(형평성 확보): 법제도 등의 기준에 있는 법을 자금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각종 편법을 동원하여 특혜를 받는 일이 없도록 행정 및 법집행에 있어서 형평성 확보 필요.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사회적 갈등이 야기됨.
			경제적 관점	경제적 관점(정부정책 사업의 효과성): 중앙정부, 지방정부 막론하고 수장이 바뀌면 기존 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여 대체하려고 하니 정책의 연속성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는데 정부 정책이란 연속성이 있어야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고, 정책사업의 효과나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임.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관점	내용 및 제안 이유
11	KDI (한국 개발 연구원)	공공 투자 관리 센터	환경적 관점	<input type="checkbox"/> 지속가능발전의 가장 큰 약점은 자원 부족과 함께 기후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재의 개발환경으로 판단됨. <input type="checkbox"/> 이에 기후 변화는 미래세대의 개발환경 뿐만 아니라 생활환경에까지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 개발이 가장 시급할 것으로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아울러 자원 부족 문제를 고려하여 효율성 및 형평성에 기반한 현재세대의 개발 또는 개발제한에 대한 정책적 판단 및 방향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12	KDI (한국 개발 연구원)	공공 투자 관리 센터	경제적 관점: 일자리 창출 및 안정된 고용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발전 과정에서 구성원 전체의 참여 및 혜택 분배가 필수적임. 구성원 전체가 발전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회 발전에서 구성원의 참여를 위한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
			정치적 관점: 평등한 법치를 위한 제도 개선	법제도 및 법의 준수는 국가 등의 사회 공동체가 유지되고 발전해나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 법치에 있어서는 모든 계층이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함. 현재는 기득권층에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고수임료의 변호사 등)이나,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에게 동등한 법 적용 및 기회 보장이 필요함.
13	KDI (한국 개발 연구원)	산업· 서비스 경제연 구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 정책의 경우 구체적인 전략이 부족하고 피해발생 후 보상해주는 사후적 대책 위주로 되어 있음. 보다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국가 단위 뿐 아니라 지자체 단위에서 신속하고 밀착된 지원이 요구됨.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및 에너지 사용 패러다임 전환	기후변화 대응은 필연적으로 산업구조 변화를 수반함. 탄소배출 절감 및 친환경 에너지로의 이행 등은 산업계의 노력없이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임. 단순히 세액 공제(혹은 과세) 등 인센티브 부여 방식을 넘어 정부와 산업계 간의 명시적이고도 구속력 있는 합의 도출이 필요함. 이는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관점	내용 및 제안 이유
14	KDI (한국 개발 연구원)	산업· 서비스 경제연 구부	- 사회적 관점: 공중도덕 및 윤리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 제고, 배려하는 문화형성	사회적 관점: 최근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 한국의 문제는 한국인들의 공중 매너, 윤리성 상실 등임. 특히나 자라나는 세대들은 학교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올바른 인격 형성의 시기에 입시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음. 더불어 입시에 시달리고 사회에 나오더라도 일자리 부족 등과 같은 이중고가 더해짐.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이기주의를 부추기고, 공중의 많은 사람들에게 지켜야 할 가치를 잊게 함. 우리 정부는 일자리 및 주택마련 등과 같은 인간의 기본권을 지켜주고, 이러한 분위기 형성으로 한국인들이 개인의 삶을 각박하게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에도 신경쓸 수 있도록 해야함.
			- 환경적 관점: 친환경 에너지 개발	환경적 관점: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 대비 및 환경 보전과 같은 기조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생태계를 보존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해나가야 함.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 개발은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뿐만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창출 할 수 있음.
15	KDI (한국 개발 연구원)	산업· 서비스 경제연 구부	환경적 관점	자연은 회복되는데 있어 오랜 시간이 요구되는 관계로, 더 늦기 전에 친환경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다만 선진국들이 부담을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함. 현재의 기후문제는 개도국보다는 선진국들의 경제발전에서 더 많이 야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개도국에 전가시키는 행위는 옳지 않음.
			사회적 관점	기후문제는 전 국민이 동의 할 수 있고 의식 변화가 제일 중요한 문제로서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규제가 마련되어야 함. 과거 많은 정책 실행에 있어서도 급하게 마련된 정책은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할 수 있게 천천히 정책이 마련되길 희망함.
16	KDI (한국 개발 연구원)	인적 자원 정책 연구부	에너지 자원 확보	4차 산업혁명 등 급속한 기술발전예 대비하여 충분한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갈등 관리	최근 탈원전 논란과 같이 환경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상충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관점	내용 및 제안 이유
17	건축 도시 공간 연구소	건축 연구 본부	취약계층 보호	빈곤 등 취약한 상황에 있는 계층의 재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복력을 키우기 위한 지원 필요
			친환경적인 도시 구현	기후변화의 원인인 도시에서의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부담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적인 도시 구현 필요
			국제협력 선도	국제사회에서의 경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기후변화 정책의 국제협력을 선도하여 선진국과 최빈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 강화 필요
18	건축 도시 공간 연구소	건축 연구 본부	[국내] 법제도 개선	환경 및 경제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친환경(에너지) 산업의 성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사업의 실효성 확보, 자연 생태계 보존을 비롯하여 일상에서 탄소발자국을 최소화하는 생활 차원에서 변화를 함께 유도하기 위해서는 나라 전체의 체질개선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법이 다른 법령들에 보다 적극적으로 연계되어 작동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국외] 적극적인 국제 협력 및 갈등 관리	폭염, 가뭄, 미세먼지증가 등 다양한 기후변화의 문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큰 고민거리 이면서 대응관리 해야 할 주요 대상임. 이런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제어를 위해서는 좁게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나아가 다른 대륙 국가와 전세계적으로 적극적인 협력 및 관리가 우선 되어야함
19	건축 도시 공간 연구소	건축 연구 본부	사회적 관점	환경정의에 대한 대중의 합의를 통해 공통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 및 복원력 확보 방안 마련
			환경적 관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며, 생태계 보존과 동시에 친환경 에너지 확보 방안을 구축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관점	내용 및 제안 이유
20	건축 도시 공간 연구소	공간 문화 연구 본부	환경적 관점 (환경 복지)	환경 보전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누구나 깨끗하고 양호한 생태 및 도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함
			경제적 관점 (기후변화 대응산업 육성)	환경 보전 등 가치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산업의 발전이 동반되어야 할 것. 가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기술, 사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없으므로 해당 가치의 확산과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기후변화대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투자가 필요
21	건축 도시 공간 연구소	도시 연구 본부	사회적 관점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사회적 지속가능성 측면에 있어 위협 요인이 됨 - 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자구 수단이 부족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경제적 관점	기후변화 대응산업 육성 및 개별 경제주체에 귀속되지 않는 외부 불경제를 부담금 형태로 경제주체에 부과하는 제도 도입을 통해 시장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관점	내용 및 제안 이유
22	건축 도시 공간 연구소	도시 연구 본부	포용적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p>사회적 관점 : 국민 소득균형 유지, 빈부격차 완화, 지속 가능한 경제구조 구축, 실업문제 해결, 공무원에 집중되는 일자리 편중문제 해결</p> <p>정치적 관점 : 선진국의 경제모델 도입을 위한 협력체계 구성, 4차산업혁명에 따른 신규 경제부문의 지원제도 마련, 빈곤층 자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p> <p>경제적 관점 : 국내 주력산업 분야 변화에 대한 자생력 마련, 거시경제지표에 가려 확인 되지 않는 미시경제의 문제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한 진단으로 향후 보완점 정리</p>
			기후변화 및 영향에 긴급대응	<p>사회적 관점 :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 지원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객관적 기준 및 범위, 예상피해규모에 대한 구체적 지표 마련필요</p> <p>정치적 관점 : 선진국의 기후기술 도입에 관심을 갖고 국내 기술과 접목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 필요</p> <p>환경적 관점 : 기후변화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술을 접목,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정책 강화, 탄소 포집기술 역량 구축</p> <p>경제적 관점 : 기후영향에 대한 예방적 정책 실행으로 피해와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p> <p>기술적 관점 : 기상데이터와 건축물이 상호작용해 재해 발생시 건축물이 완충기능을 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기후 기술개발</p>
			해양 및 수산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	<p>사회적 관점 : 미세플라스틱의 농도가 수산자원 먹거리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문제 고려 필요</p> <p>정치적 관점 : 해양문제는 해류를 따라 연안에서 배출하는 각종 오염물질이 국제적으로 순환되므로 해류를 공유하는 국가간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협약 추진 필요</p> <p>환경적 관점 : 해양생태계의 파괴의 원인이 인간에서 시작되고 있으므로, 남획, 불법어업, 보호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임</p> <p>경제적 관점 : 바다사막화, 지구온난화에 따라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유형이 급격히 변화하므로 수산업의 경제구조 변화 고려</p>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관점	내용 및 제안 이유
23	과학 기술 정책 연구원	미래 연구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li> <li>-복원력 확보</li> <li>-포용성장을 위한 노동자 권익보호</li> </ul>	<p>기후변화의 취약계층인 독거노인, 대도시 저소득자 거주지역 주민, 농촌 인구 희박지역 주민들이 이상기온/기온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안전모니터링, 대응책 마련 필요</p> <p>복원력 향상: 도시화는 계속 진행되는데, 오래된 도시의 경우, 관리사각지대 주민의 피해 예방/사후 복원력 강화가 필요함. 노인, 저소득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이상기온/기후 피해 대응방안 교육 필요. 이와 더불어 대도시 낙후된 주거, 교통시설들의 개선을 통해 도시전체의 복원력을 향상시켜야 함</p> <p>노동자 권익보호 : 산업안전 예산투입 확대, 산업안전관리체계 강화 필요</p>
24	국토 연구원	국토 인프라 연구 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환경 기술개발</li> <li>정부 정책지원</li> <li>기후변화 대응산업 육성</li> </ul>	<p>기후변화에 취약한 부문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술 개발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함</p> <p>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부의 정책이 요구됨</p> <p>예. 전기차 개발 → 전기차 보조금 (정책) → 도입 활성화</p>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관점	내용 및 제안 이유
25	산업 연구원	국제 산업 통상 연구 본부	갈등관리	전술한대로 기후변화 문제는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되기 쉬운 사안이므로 여러 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함. 특히 문제에 접근하는 개개인의 정치적 신념이 투영되기 쉬우므로 참여한 관계자들 사이에서 참여한 대립이 발생하기 쉬움. 따라서 이러한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면서도 그 조정의 결과가 단순히 이해관계 대립의 무마에 그치지 않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함
			정부정책 사업의 효과성	기후변화 문제는 민간에게 맡겨서 해결되기 어려운 시장의 실패 이론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안임.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개입이 필요하긴 함. 다만 정부정책 사업의 경우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실제 투입되는 자원과 비용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비효율적인 전시행정에 그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정책 사업의 효과성을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의 개발이 중요함
			국제협력 국제협상 참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는 개별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함. 또한 여러 국가와의 공조를 위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주도권을 상실하여 우리의 이해관계와 정책 등이 선도국가들에 의해 좌우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따라서 적극적인 국제협력과 국제협상 참여를 통하여 우리가 기후변화 협상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룹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관점	내용 및 제안 이유
26	에너지 경제 연구원	기후 변화 정책 연구 본부	사회적 관점: 시장경제와 교육시스템 의 유연성 확대	외부 위험성에 유연한 사회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원리를 통해 사회가 자율적으로 동작하게 만들고 교육시스템 유연성 강화를 통해 시민들의 사고방식을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함
			정치적 관점: 미래 비전 공유와 갈등 관리를 위한 담론 형성 활성화	기후변화와 관련한 미래 비전을 공유할 수 있고 그 틀 속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담론 형성과정이 활성화되어야 함
27	에너지 경제 연구원	기후 변화 정책 연구 본부	갈등관리	지속가능발전 하에서 시행되는 정책에 대한 찬반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됨. 이를 위해서 갈등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한 후, 실제로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토론회, 공청회 등과 같은 소통이 필요할 것임. 특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갈등을 예측하여 다각적인 대응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기후변화대 응산업 육성 및 기존 산업 보호	기후변화대응산업을 발전시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면 지속가능발전에 도움이 될 것임. 아울러, 기후변화대응 속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기존 산업을 보호하면서 산업구조를 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할 것임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관점	내용 및 제안 이유
28	에너지 경제 연구원	기후 변화 정책 연구 본부	환경적 관점: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경제적 관점: 경제성  사회적 관점: 복원력 확보	<p>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대응을 염두하고 답변합니다.</p> <p>우선 환경적 관점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수단(예, 재생에너지 보급)의 강조가 아니라 경제전반의 체질을 저탄소형으로 이행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p> <p>이러한 과정에서 우선 ‘경제성’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경제성만을 고려하여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보다는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환경적 수단(친환경 기술, 재생에너지)이 경제적으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경제성(경제적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p> <p>사회적 관점에서는 앞서 언급한 경제성과 더불어 복원력의 확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복원력은 사회적 관점에서 제시한 것이긴 하나 사회적/환경적/경제적 관점에서 복원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p>
29	에너지 경제 연구원	석유 가스 정책 연구 본부	경제적 관점 (경제적 배분)  환경적 관점 (재생 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확보)	<p>한국은 그 동안 대기업 주도 성장의 ‘수출 의존형’ 국가로서, 대외 경제변수(환율)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임금 격차로 인해서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켰습니다. 현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추진 중이며, 소득주도성장에는 최저임금, 일자리 창출 등 여러 정책을 추진중입니다. 다만, 소득주도성장이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중소기업 육성·R&amp;D투자 등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잘 이루어진다면, 한국경제의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내수시장도 활성화 될 것입니다.</p> <p>정부는 현재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도입으로 CO<sub>2</sub> 배출량을 감소시켜 지구의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산업의 등장은 또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서 신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V2G(Vehicle to Grid)는 움직이는 에너지저장장치로 활용할 수 있는데, 경제적, 환경적, 산업적인 측면 모두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산업 간의 융합을 통해서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p>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관점	내용 및 제안 이유
30	에너지 경제 연구원	에너지 국제 협력 본부	에너지원 관점	석탄 발전의 비중을 축소하고, 디젤 비중 감소를 유도하는 등, 온실가스와 공기 오염물질 과다 배출 에너지원의 소비를 줄이는 정책이 시급하게 요구됨.
			정책적 관점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실행 (Implementation) 단계에 이르기까지 산업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들 간 원활하고 일관된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조정 (Coordination)하는 것이 중요함.
31	에너지 경제 연구원	에너지 정보 통계 센터	환경적 관점 (생태계 보존)	지금 지구는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안전하게 물을 마시고, 숨쉬기조차 힘든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공해로 인한 토지오염 및 바다 오염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플라스틱처럼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만들어진 공산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오염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환경개선 정책에 온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므로 줄여나가야 하며, 경유차 또한 대기오염의 주원인이므로 노후 경유차를 대체해 나가야 하며, 친환경자동차를 확대해야 합니다.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중국은 전세계적 재생에너지 투자금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생에너지에 신규 투자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 보존 및 숲 재건 활동에 힘써서 자연 친화적인 방식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숲이 공기정정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숲 재건에도 힘써야겠습니다.
32	에너지 경제 연구원	에너지 정보 통계 센터	외교적 관점	타 국가로부터 받는 기후변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 (예,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 황사, 오염물질 등의 해결을 위한 협상 개시)
			사회·경제 적 관점	지속가능발전 및 환경보호 가치를 감안한 에너지 비용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와 이에 따른 에너지 믹스 및 에너지 가격의 조정이 필요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관점	내용 및 제안 이유
33	에너지 경제 연구원	전력 정책 연구 본부	사회적 관점 : 복원력 회복 및 환경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원력 회복이 중요함. 만약 산림이나 강물이 훼손되거나 오염되었다면 인간의 삶에 직결됨. 훼손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렇게 되었다면 복원시키는 것이 시급함.</li> <li>- 환경복지는 경제성장 및 노동문제와 연결되어 있음. 취약계층에게는 환경문제보다 경제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임.</li> </ul>
			정치적 관점 : 갈등관리, 법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장과 자연보전의 균형 문제이므로 사회적 합의를 어디에 두어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 전략이 초당적으로 마련되어야 함.</li> <li>-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갈등해소에는 국회차원에서 협의가 필요함.</li> </ul>
			환경적 관점 : 친환경기술 개발, 생태계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해 환경을 파괴(태양광이나 풍력발전으로 인한 피해)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함. 우리 여건에 알맞은 친환경 기술을 도입 또는 개발하되 자연과 조화가 되어야 함.</li> <li>- 기존의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도 검토되어야 함. 열병합발전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여 효율적인 설비임에도 현행 비용중심의 전력시장에서는 잘 활용될지 못하고 있음.</li> </ul>
34	에너지 경제 연구원	전력 정책 연구 본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안보 친환경 기술 개발	<p>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관점에서의 대책으로서 우리나라와 같은 중소 국가에게는 국제 규범을 준수한다는 의미가 보다 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새로운 기후변화 체계로 발생할 수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안보를 개선하고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p>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관점	내용 및 제안 이유
35	에너지 경제 연구원	전력 정책 연구 본부	정치적 관점 (형평성 확보)/ 환경· 경제적 관점 (친환경 에너지 확보 및 기후변화 대응산업 육성)	<p>앞의 정부가 지향점에서와 같이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에서 발생한 현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들의 인식전환 및 정부의 관점 전환도 필요하다. 일례로 국가 에너지 정책이 공급 중심정책에서 수요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국민 개개인이 경제성장 및 지속가능 발전의 주체라는 관점이 필요하다.</p> <p>또한 현재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술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확보(또는 기후변화대응산업 육성)와 같은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 국가 에너지정책은 정부의 관점에 따라 상당기간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기존의 원자력발전, 석탄화력발전,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과 같은 대규모 공사를 통한 공급자 중심의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분산전원 증가 및 수요관리정책 등과 같은 부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일관되게 준비해 나가야 향후 10년, 20년 뒤에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구조 및 산업을 보유한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p>
36	육아 정책 연구소	아동 패널 연구팀	환경적 관점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개발 제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개발보다는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환경적 관점	친환경 에너지 확보: 장기적으로 석탄, 원자력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함.
			정치적 관점	법제도 개선: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법제도 마련이 필요함.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관점	내용 및 제안 이유
37	육아 정책 연구소	국제 협력팀	사회적 관점 (교육 접근성 향상, 특히 고등교육)	우리 사회의 가장 첨예한 문제 중 하나는 교육 접근성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공정한 기회는 많은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이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 대학 입시의 문제는 매우 첨예한 사안입니다. 교육의 가치적 측면에서 초중등 교육의 목적이 대학입시에 맞춰지면서 학생들이 교육에 투자한 시간과 비용이 개인과 사회의 발전이 아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기술에 과다하게 투자되고 있는 점은 제한된 교육의 접근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경제적 관점 (중앙 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의 대안이 되는 지역화폐 등의 활성화)	사회의 모든 가치들이 일률적인 화폐가치로 환산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만 유통되는 지역화폐의 가치는 단지 지역 경제의 활성화, 역내 자립도 강화뿐 아니라 대안적 가치에 눈을 돌리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비록 소득이 적더라도 다양한 가치로 그 부족한 소득을 대신할 수 있는 직업을 택하는 등의 행위는 이러한 대안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길 때 가능한 일입니다.
			사회적 관점 (느림의 미학)	한국 사회의 대표어가 “빨리빨리”이고, 한국의 노동시간이 OECD 수위권에 해당하는 장시간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효율과 능률의 관점뿐 아니라 여유와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8	육아 정책 연구소	국제 협력팀	사회적 관점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 경제적 관점 (기후변화 대응산업 육성)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지)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사회통합적인 정책 마련 및 효율적 시행이 가능 기후변화 대응 산업 육성을 통하여 미래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실현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관점	내용 및 제안 이유
39	육아 정책 연구소	국제 협력팀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확보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에너지 확보 및 생태계 보존 등 환경 보호와 관련된 기술 개발과 보존은 기후 변화에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에너지 기술은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에너지 원을 개발하는 일이므로 중요성을 가진다고 사료됨.
			기후변화 대응산업 육성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빠른 대응과 그와 관련된 사업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보여짐.
40	한국 교통 연구원	미래 교통 전략 연구소	“복원력 확보”라는 사회적 관점 및 “친환경 기술 개발”을 통한 환경적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원력(resilience) 확보’는 사회적 관점에서 가장 시급한 통합적인 사항임</li> <li>- ‘친환경 기술개발’을 통한 환경보호는 환경적 관점 및 경제적 관점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핵심 사항임</li> </ul>
41	한국 교통 연구원	도로 교통 본부	정치적 관점 : 형평성 확보, 갈등관리 환경적 관점 :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사회 구성원 간 형평성 확보 및 갈등관리라고 할 수 있음</li> <li>- 경제성장 및 복지 분배에 있어 부익부 빈익빈을 저감시킬 수 있는 형평성과 구성원 간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갈등관리가 필요</li> <li>- 향후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에 비해 에너지 자원은 고갈 될 예정이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및 친환경에너지 확보 필요</li> </ul>
42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농업·농촌 정책 연구 본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기후변화, 기술발전에 따라 자원과 이를 배경으로 한 생산활동의 사회적 경제적 중요성이 증가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관점	내용 및 제안 이유
43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농림 산업 정책 연구 본부	· 사회적 관점	◦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공유를 위한 담론의 장 확대 필요
			· 정치적 관점	◦ 국민에 대한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정치적 활동 (법률안 발의 등) 필요
			· 환경적 관점	◦ 자연을 자원으로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주체로 인식 (인간도 이 자연계의 일부라는 인식). 자연에 대한 돌봄(케어)이 필요하다는 인식
			· 경제적 관점	◦ 남성적 시장경제(생산성 영역)와 여성적 돌봄경제(재생산성 영역)의 균형 필요
44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농림 산업 정책 연구 본부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체계 확보	<p>환경적 관점: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 생태계 변화 초래 가능성 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 개발(농업지대 변화와 새로운 품종 개발, 새로운 병충해 출현과 대응 등)</li> <li>- 생태계 변화에 따른 대응(자연재해 및 수자원 고갈 가능성과 대응, 토지자원 개발 제한 등 생태계 보존 등)</li> </ul> <p>경제적 관점: 산업별, 농업 내 부문별, 작물별 소득 구조 변화 가능성 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적으로 기후변화에 열악한 식량생산 부문에 대한 관련 산업 육성 및 새로운 정부 정책 발굴</li> <li>- 기후변화 대응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므로 정부정책의 사업 효과성보다는 중장기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정부 재정 투입 및 공공성 확대(식량생산기반조성 사업, 농지보전사업, 농업용 수자원 확보 사업 등)</li> </ul>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관점	내용 및 제안 이유
45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농림 산업 정책 연구 본부	취약계층 지원 (계층간 불균형 해소) 환경지속성 확보 (환경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불균형 심화 등으로 지속적인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계층간 양극화가 심화됨. 또한 국민 전반의 평균적 삶의 질의 개선이 경제발전 수준을 따라가고 있지 못함. 취약계층 지원은 단순히 이들 계층의 삶의 여건(식품, 의복, 주택 등)의 향상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구 규모의 감소가 예상되고 또한 장기적인 저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가 또는 사회적으로 산업인력 공급원 또는 국내 수요(내수)를 뒷받침해줄 소비원으로서의 중요한 비중을 상실하는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짐.</li> <li>· 환경지속(가능)성의 저해는 경제(산업), 사회 등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 환경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음은 국민의 기본적인 농식품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국내 농어업 생산 환경 보존(확보) 실패를 의미하며, 국민 안전·건강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막대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킬 수 있음.</li> </ul>
46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농림 산업 정책 연구 본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일반인과 동등한 경제적 자원과 기초공공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고, 필요시 우선적으로 보장한다.
			출산 장려 정책	대한민국의 저출산과 인구고령화를 대비한다.
			고용 성장	청년 고용을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강화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관점	내용 및 제안 이유
47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농림 산업 정책 연구부 본부	사회적 관점 환경적 관점	<p>사회적 관점: 이번 여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이상기상 현상은 취약계층에 더욱 큰 영향을 끼침. 또한 이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과 복원력이 떨어져 기후변화의 영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이에 따라 기후변화 정책은 우선적으로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적응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함.</p> <p>환경적 관점: 환경적 관점은 사실 경제적 관점과 밀접히 연관될 수 밖에 없음.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후변화라는 것은 시장에서 인간의 생산과 소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외부효과를 내부화 못시키기 때문이라고 생각됨. 따라서 이러한 외부효과를 보정하고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친환경 기술에 대한 R&amp;D나 환경세 같은 세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p> <p>불확실성이 높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 등의 경제성은 비현실적일 수 있음. 기후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특히 이상기후에 대한 예측이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서 적응능력향상에 관한 정책이 반드시 경제성이 있기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응은 취약계층의 보호라는 가치제와 외부효과라는 시장실패를 보정해 주는 점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됨.</p>
48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농림 산업 정책 연구부 본부	에너지 전환	<p>현재의 중앙집권적 에너지 공급 방식(화석연료 기반)에서 벗어나 분산적·상호 연결된 에너지 그리드(신재생에너지 기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에너지 산업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p>
			사회정의와 형평성	<p>소득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많은 청년들이 고등교육을 받고도 제대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과 의욕 상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령 사회에서 청년층이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인 만큼 이들이 성장하고 꿈꿀 수 있도록 세대 내 경쟁을 완화하고, 세대 간 경쟁에서는 진입장벽을 조금씩 허무는 방향으로 사회·경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p>
			순환경제 도입	<p>‘생산-사용-폐기’가 아니라 사용 후 다시 생산에 재투입될 수 있도록 농업, 농식품, 각종 제조업의 변화가 매우 시급합니다.</p>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관점	내용 및 제안 이유
49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국제 농업 개발 협력 센터	신재생 에너지 등 대안적 방식의 기술개발과 적용을 위한 공동의 노력	대안기술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 경제적 발전에 기여한다는 가치를 확산할 필요가 있음.
			지속가능성 유지와 관련된 대안적 삶의 방식 확대	마을 등 소규모 지역단위에서의 새로운 삶의 방식 확대
50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국제 농업 개발 협력 센터	1. 정부 정책 사업의 효과성  2. 국제 규범 및 원칙의 내재화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 사업 시행의 목표 설정, 내용, 기대 효과의 구성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성과의 모니터링 및 점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지속가능성을 파악할 이론틀 또는 접근법이 연구되어야 함 이행을 위한 국내 실정에 부합하는 제도적, 정책적 체계 마련이 필요함
51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연구 기획 조정실	사회적 관점	환경정의에 대한 실현이 전제되어야 나머지 정치적, 환경적, 경제적 관점에 대한 논의나 개선/대응방안이 마련될 것이므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함. 즉, 환경정의에 대한 올바른 정립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나머지 관점에서의 체계적, 단계적, 효율적인 계획 수립, 실행, 점검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움직임이 가능할 것임.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관점	내용 및 제안 이유
52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보건 의료 연구실	사회적 관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복원력 확보, 환경정의 실현, 환경복지 등	사회경제적, 신체적으로 권익을 상실하기 쉬운 취약인구집단이 외부환경변화와 사회적 변화에 따른 피해를 적게 받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편적인 삶의 질 보장을 추구하고 있음.
53	한국 해양 수산 개발원	수산 정책 연구실	사회적 관점	- 기후변화 취약 계층 지원 → 지구의 지속가능성 달성은 인류 공통의 목표로 전 인류가 참여해야 하므로 기후변화 취약 계층 지원을 통한 자율적 참여 체계 확립
			정치적 관점	- 합리적인 국제협력 → 전 지구 규모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실천 가능한 국제 협력 필요
			환경적 관점	- 친환경 기술개발 및 보급과 생태계 보전 연계 → 이미 파괴된 환경의 복원과 미래 환경자원의 지속 가능한 수준의 활용을 위해 친환경 기술 개발과 합리적인 보급 절실
			경제적 관점	- 정책 타당성 체계 확립 → 지구의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해 환경 부담 정책사업을 계획할 경우 정책 타당성 분석 요인으로 반영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관점	내용 및 제안 이유
54	서울 연구원	안전 환경 연구실	기후변화 현황 파악 및 예측	대응이전에 현황(원인분석)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지원 필요)
			기후변화 대응 공간관리	기후변화는 취약계층만의 문제가 아님 모든 사람이 기후변화로부터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 도시계획 차원에서 지원 필요(관련 법제 마련 필요)
			생태계 보존 및 관리	
			관련산업 육성	
55	한국 과학 기술 기획 평가원	R&D 평가 센터	사회적 관점	취약계층 지원: 형평성과 포용성 가치의 구현을 위해 현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
			정치적 관점	법제도 개선: 환경이 변화하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형평성과 포용성 가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필요
			환경적 관점	친환경 기술개발: 악화되는 환경변화를 늦추거나 회복 가능한 기술이 필요
56	한국 과학 기술 연구원	고온 에너지 재료 연구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정책 사업의 효과성</li> <li>- 환경 정의 실현</li> <li>- 친환경 기술 및 에너지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 개발의 한계보다는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를 인프라/정부보조 등으로 전개하느냐의 문제가 큰 것으로 보임.</li> <li>- 생태복원, 개발 제한, 환경유해 제재 등 환경 정의 실현</li> <li>- 에너지 기술 현황 및 취약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장기적인 친환경 기술 및 에너지 확보에 노력해야 함.</li> </ul>
57	한국 환경 정책 평가 연구원	미래 환경 연구 본부	환경정의 실현	환경정의 현황을 공간적, 사회경제적 계층 측면을 포괄하는 사회-공간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적 능력, 사회적 자본 등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 발굴과 이행이 필요
			재생 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확보	에너지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기후 대응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믹스 정책의 전환이 필요.

### 3.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우선순위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영역	중요한 분야	
				분야	이유
1	서울 시청	행정 심판 2팀	국가적 (우리 나라) 차원	8. 포용적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8.1 및 8.5)	우리나라는 선진국 진입직전 단계에 있다는 생각이 들며 현재 이 상태에서 좀 더 노력을 하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지만 여기서 진입하지 못하면 끝없이 추락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듭
			세계 차원	1.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1.1 및 1.5)	아프리카 등 지구상에는 기아선상에 있는 아이들을 비롯한 많은 빈곤층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빈곤을 해결하여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도록 함
2	경기 대학교	환경 에너지 공학과	국가적 (우리 나라) 차원	포용적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현재 우리나라의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관심은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갈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세계 차원	물과 위생에 대한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물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이나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 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요소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3	동국 대학교 (바이오 메디 캠퍼스)	바이오 환경 과학과	국가적 (우리 나라) 차원	7.2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감축 목표달성과 에너지안보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
			세계 차원	13.3 및 13.b	개도국에서의 기후변화관련 대응정책의 효과적 이행을 도모하기 위함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영역	중요한 분야	
				분야	이유
4	성결대학교	국제개발협력학부	국가적 (우리나라) 차원	13.2	현실에 기초한, 그러나 일관성있고 장기적인 정책 필요.
			세계 차원	13.3	전 세계적인 공감대 형성과 공조가 없이는 불가능.
5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환경공학부	국가적 (우리나라) 차원	Goal 12 지속가능한 소비-생산패턴	우리나라는 최근 소득에 비해 소비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한 천연자원감소, 음식물 쓰레기 증가, 폐기물 증가로 인한 환경문제를 유발함
			세계 차원	Goal 11. 지속가능한 도시	전세계 인구의 절반이상이 이미 도시에 집중.. 이로인한 환경문제 (기후변화..에너지.. 생태계과괴등) 심각해 질 것으로 예견됨..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정책이 시급함
6	충북대학교	환경공학과	국가적 (우리나라) 차원	대기질-폐기물 관리를 통한 도시 환경영향 감소	미세먼지 이슈와 폐기물의 적절한 관리를 통한 국민 환경복지 확립
			세계 차원	글로벌 거버넌스에서의 개도국 참여 확대	현존하는 국제 이슈들(환경, 지속가능, 식량, 에너지 등)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거버넌스가 필요
7	세종대학교	기후변화센터	국가적 (우리나라) 차원	7.3	앞서 말한바와 같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이 어려운 국내에서는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 차원	10.4	세계 차원에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선 임금 격차를 줄이고, 개도국을 포함한 전지구적인 생활 수준을 높임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하기 위한 원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함.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영역	중요한 분야	
				분야	이유
8	KDI (한국 개발 연구원)	거시 경제 연구부	국가적 (우리 나라) 차원	영역(13.3)	기후 변화가 정확히 무엇인지와 이를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만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
			세계 차원	영역(12.8)	우리는 한정된 자원내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 여부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릴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9	KDI (한국 개발 연구원)	경제정 보센터	국가적 (우리 나라) 차원	- 청정기술 채택	-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청정한 삶의 환경을 제공하는 기술이 중요시 됨. - 이러한 청정기술은 향후 미래지향적인 기술임으로 수출 부분에서도 적지 않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세계 차원	폐기물 발생량 감소	- 국제사회의 가장 큰 협업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
10	KDI (한국 개발 연구원)	공공투 자관리 센터	국가적 (우리 나라) 차원	평등한 기회보장 및 소득으로 인한 불평등 감소(10.3)	우리나라 출산율이 최근 1.0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교육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되는데, 교육에 몰입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높은 교육을 받아야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현재의 사회체제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모든 분야의 하는 일은 달라도 소득차가 크지 않다면 개인의 적성을 살려서 일할 수 있으므로, 교육에 몰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줄어서 출산율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세계 차원	선진국의 ODA공약 구현(17.2)	GNI의 0.7%를 ODA로 제공하고 GNI의 0.15~0.2%를 최빈국에 제공하는 목표를 가진 다수의 선진국의 공약을 포함하여, 선진국의 완전한 ODA 공약 이행과 수혜국의 인력 및 자원의 우선 이용방안 강구 필요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영역	중요한 분야	
				분야	이유
11	KDI (한국 개발 연구원)	공공 투자 관리 센터	국가적 (우리 나라) 차원	8.2 및 8.3	<input type="checkbox"/> 국가의 생산성은 기술개발 수준과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를 바탕으로 할 때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기술개발에 따른 생산성 향상 및 사업 다각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세계 차원	17.6 및 17.7	<input type="checkbox"/>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친환경 경적 기술에 대한 국제적 공유가 필요하며, 국가간 격차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input type="checkbox"/> 아울러 지속가능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인 개발 부진으로 현재세대 중심의 개발 정책을 추구하는 개발도상국의 실질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우대 및 친환경 기술 보급이 필요함.
12	KDI (한국 개발 연구원)	공공투 자관리 센터	국가적 (우리 나라) 차원	8.5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8.3 생산적 개발 정책 활동 촉진 8.8 노동자 권리 보호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발전 과정에서 구성원 전체의 참여 및 혜택 분배가 필수적임.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고용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안전한 작업환경이 필요
			세계 차원	10.3 평등한 기회 보장 및 소득으로 인한 불평등 감소 10.4 임금, 사회 보장 정책의 평등 달성 10.a	현재 세계적으로 국가간 또는 국가내 불평등이 삶의 격차가 매우 크며, 이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음. 기존에 성장을 이룬 국가 및 계층의 경우 이미 받은 혜택을 통한 성장을 이룬 것이므로, 해당 계층에서 평등한 삶의 질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영역	중요한 분야	
				분야	이유
13	KDI (한국 개발 연구원)	산업· 서비스 경제연 구부	국가적 (우리 나라) 차원	9.4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산업의 기술 및 에너지 활용 구조를 개선하는 것임. 우리나라는 이런 측면에서 뒤처져 있으므로 청정기술 사용에 대한 산업계의 합의가 필요함.
			세계 차원	13.2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기후변화 대책에 무관심함. 기후변화는 전지구적인 현상이므로 공동의 대책 및 이에 대한 이행약속이 필수적임.
14	KDI (한국 개발 연구원)	산업· 서비스 경제연 구부	국가적 (우리 나라) 차원	11.6 17.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6: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간 초미세먼지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인 호흡조차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11.6을 선택함.</li> <li>- 17.14: 정권이 바뀔때마다 꼭 지켜져야 하는 가치들이 바뀌며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킴.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무엇인지 연구하고, 한번 확정된 정책사안에 대해서는 정권과 관계없이 지켜져야 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함.</li> </ul>
			세계 차원	3.7 3.8	3.7-8: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모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보편적인 의료정보와 혜택을 제공받아야 함. 의료혜택과 같은 이슈는 보통 비용측면에서 특정 계층에게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함.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영역	중요한 분야	
				분야	이유
15	KDI (한국 개발 연구원)	산업· 서비스 경제 연구부	국가적 (우리 나라) 차원	13.3 및 13.2	국민의 의식변화와 함께 국제협약에 적극적으로 가입하여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세계 차원	17.2 & 17.3	선진국들의 반성과 그들의 경제성장으로 야기된 환경 문제를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및 사례를 개도국에 공유해야 하며, 그들의 분담금을 개도국 지원으로 활용하여 개도국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함.
16	KDI (한국 개발 연구원)	인적 자원 정책 연구부	국가적 (우리 나라) 차원	8.2. 기술적 향상 및 혁신을 통한 경제 생산성 향상 달성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단기간 내 되돌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 1인당 생산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됨.
			세계 차원	7.3. 에너지 효율 증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 증대가 필수적
17	건축 도시 공간 연구소	건축연 구본부	국가적 (우리 나라) 차원	11.3 (지속가능한 도시)	기후변화의 원인이자 영향의 대상인 도시의 지속가능성 구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 필요
			세계 차원	17.7	세계적으로 일치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지원책 선행 필요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영역	중요한 분야	
				분야	이유
18	건축 도시 공간 연구소	건축 연구 본부	국가적 (우리 나라) 차원	4. 공평한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기회 증진 4.7 지속가능발전 교육 및 12.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패턴 보장 12.8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와 인식 공유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 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먼저 요구됨
			세계 차원	4. 공평한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기회 증진 4.7 지속가능발전 교육 및 12.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패턴 보장 12.8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와 인식 공유	우리나라 및 세계 차원에서도 동일한 중요영역으로 판단됨(상동)
19	건축 도시 공간 연구소	건축 연구 본부	국가적 (우리 나라) 차원	9.1 및 13.1	강도 높은 지진과 같이 급격하게 변 하는 기후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하 기 위해 충분한 기술개발을 통해지속 가능한 기반 구축이 필요
			세계 차원	9.4 및 9.a	장기적으로 선진국과 최빈국의 경제 적, 기술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개발 도상국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영역	중요한 분야	
				분야	이유
20	건축 도시 공간 연구소	공간 문화 연구 본부	국가적 (우리 나라) 차원	11.1 및 11.b	높은 주택 가격으로 인해 출산을 저하, 경제적 양극화, 사회적 불안감이 심각해지고 있어 근본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무분별한 주택 공급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으며 환경훼손을 가져올 수 있어 국토의 전반적인 개발 및 환경 보전을 위한 과상생 노력이 필요
			세계 차원	17.18 및 17.19	현재 사회, 기술, 경제는 점점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보조보다는 각종 데이터 구축이 파급효과가 클 것
21	건축 도시 공간 연구소	도시 연구 본부	국가적 (우리 나라) 차원	1.5.	급격한 고령화 진행으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적 준비가 필요
				7.2.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경제 수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개선이 시급함
			세계 차원	6.1.	식수 문제는 생존의 기본 조건으로서 타 목표에 비해 우선적으로 해소되어야 할 필요
				7.1.	식수 문제와 마찬가지로 다른 정책 수단의 도입 이전에 선결될 문제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영역	중요한 분야	
				분야	이유
22	건축 도시 공간 연구소	도시 연구 본부	국가적 (우리 나라) 차원	1. 기후변화 및 영향에 긴급대응 13.1, 13.2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기후변화 대책을 국가정책에 통합과 지방정책 과 연계 필요
				2. 포용-안전-탄력- 지속가능한 도시 및 정주환경 11.3, 11.5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 시계획체계 변경을 통해 자연재해로 부터의 피해 저감
				3. 포용적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8.2, 8.3	4차산업 혁명에 따른 기술적 향상 및 혁신을 모니터링과 지원을 통한 경제 생산성 향상 달성 필요
			세계 차원	1. 물과 위생에 대한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6.1, 6.3	기후변화에 따른 후진국의 안전한 식 수원 확보와 기존 식수원의 수질 개선
				2. 해양 및 수산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 14.1 14.4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 예방 및 감소 불법조업 및 남획 방지 필요
				3. 지속가능발전 이행 수단 강화, 글로벌파트너십 재정립 17.7, 17.16	탄소발생을 기반으로 한 선진국 모델 과 달리, 개도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확산필요
23	과학 기술 정책 연구원	국가적 (우리 나라) 차원	1-3 사회보장시 스템 구축 1.5 기후변화 등으로부터 취약계층 보호	고령화, 양극화 도시화, 이상기온/기후 증가	
			세계 차원	2.5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이익 공유	토양의 질 보호, 지속가능한 식량공 급. 글로벌 기업의 독점으로 인한 폐 해를 막기 위해 세계적 연대 필요
		3.b.		전염병 글로벌 확산 예방, 개도국 저소 득층 국민에게도 보편적 건강권 확보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영역	중요한 분야	
				분야	이유
24	국토 연구원	국토 인프라 연구 본부	국가적 (우리 나라) 차원	11.2 지속가능 교통시스템	교통부문의 지속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기술개발 및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극복 가능하며, 극복 시, 효과도 명확히 드러남
			세계 차원	17.6 과학, 기술과 혁신에 대한 지역 및 국제적 협력을 강화, 상호 합의된 조건의 지식을 공유	국가 간 지식 gap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그 중 특히 기술에 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25	산업 연구원	국제 산업 통상 연구 본부	국가적 (우리 나라) 차원	17. 17 공공, 공공-민간, 시민사회의 효과적 협력을 촉진	기후변화 문제를 잘못 다루면 침해한 정치적 주도권 다툼으로 변질되면서 본말이 전도되고 소기의 성과와는 동떨어진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관계자들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
				13.2 기후변화 대책을 국가정책에 통합	국가정책에 기후변화 대책을 통합함으로써 시장실패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세계 차원	17.6. 과학, 기술과 혁신에 대한 지역 및 국제적 협력을 강화, 상호 합의된 조건의 지식을 공유	기후변화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차원에서도 일어나는 문제임. 따라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통해서 기후변화 대책에 특히 민감한 개발도상국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함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영역	중요한 분야	
				분야	이유
26	에너지 경제 연구원	기후 변화 정책 연구 본부	국가적 (우리 나라) 차원	8.3	기후변화 대응의 구체적인 실현은 시장 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세계 차원	4.1	특히 저개발국의 발전 가능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 교육 기회 제공 확대가 필요
27	에너지 경제 연구원	기후 변화 정책 연구 본부	국가적 (우리 나라) 차원	7.1 및 13.3	- 국내의 에너지시장은 경쟁시장보 다 독과점 형태로 에너지가격이 시 장 메커니즘에 따라 결정되지 않아 가격 왜곡이 발생하여 비효율성이 발생하므로 정상화가 필요(7.1) - 국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 후변화대응의 필요성, 비용 및 편익 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13.3)
			세계 차원	7.2 및 7.3	- 기후변화대응의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이므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이 가장 큰 두 가지 수단인 재생에 너지 비중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 선이 무엇보다 중요함
28	에너지 경제 연구원	기후 변화 정책 연구 본부	국가적 (우리 나라) 차원	8.2, 8.3, 8.4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더불어 환 경파괴는 최소화하는 지속가능성장 전략 필요
				7.2, 7.3, 11.2, 11.3, 12.1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경제 이행을 위해 중요한 수단으로 필요
			세계 차원	7.1, 7.2, 7.3 13.1, 13.b 17.9	세계 차원에서는 중요한 영역을 선택 하기 어렵게 여겨짐. 이에 기후변화 대응을 감안 선택하였음.  개도국의 현대적 에너지 서비스 제공 과 기후변화 대응 역량의 강화가 필 요하며 이를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 필요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영역	중요한 분야	
				분야	이유
29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가스정책연구본부	국가적 (우리나라) 차원	7.2(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에 대해서 많은 제한이 있고(송배전 설비, 전력시장 구조 문제 등),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
			세계 차원	13.1(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최근에 기후변화로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개발도상국 참여를 위한 선진국의 지원과 각국의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함
30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국제협력본부	국가적 (우리나라) 차원	7.2 및 7.3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가속화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리 기후 협약 이행 수준에 맞추어 감소시켜야 함.  동시에 에너지 다소비 업종 위주의 산업 구조에서 효율적 에너지 소비 업종 위주의 산업 구조로 재편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세계 차원	13.2 영역	실제로 국제기구나 국가 간 협약을 통해 기후 변화 대응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정부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바탕으로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함,
31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보통계센터	국가적 (우리나라) 차원	7.2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한 환경개선
			세계 차원	14.1 및 14.2	인간 생존차원에서의 생태계 보존을 위한 범국제적 협조 필요
32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보통계센터	국가적 (우리나라) 차원	11.6, 12.4, 12.5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의 질이 일상생활을 저해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도달
			세계 차원	17.6, 17.7, 17.8	국가간 기술촉진 메커니즘을 통해 개도국은 경제 부흥과 함께 지속가능발전 및 환경보호를 위한 기술력의 축적이 가능하며, 이를 통한 국가간 기술 경쟁으로 범지구적인 지속가능발전 역량의 제고가 가능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영역	중요한 분야	
				분야	이유
33	에너지 경제 연구원	전력 정책 연구 본부	국가적 (우리 나라) 차원	에너지효율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효율 증대를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li> <li>- 새로운 시설의 도입에 우선하여 기존의 절약시설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li> </ul>
				안전하고 현대적 에너지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충을 위한 기술 개발 필요</li> <li>- 그러나 무분별한 시설도입으로 자연환경 파괴나 에너지시장 질서를 교란시켜서는 곤란함.</li> <li>- 전환기에 필요한 기술(열병합발전 등)을 적극 활용</li> </ul>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이용효율 화에 대한 공감대 확산 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와 환경, 성장과 환경의 공존 관계를 기초교육 과정에서부터 이 해시켜 나가야 함.</li> <li>- 지구환경을 고려한 성장 동력 발굴에 절대적으로 필요함.</li> </ul>
			세계 차원	개도국 발언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변화대응과 경제성장이 Trade-off 관계에 놓이게 되면 개도국의 참여가 어려움.</li> <li>- 개도국의 성장과 환경보전이 공존할 수 있는 기술 전파. 오염</li> </ul>
				글로벌 자원 효율 향상을 통한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파괴 비동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진국의 기술개발에 환경오염의 결과로 볼 수 있음.</li> <li>- 지구공동체의 관점에서 선진 기술의 개도국 보급이 필요함.</li> </ul>
				기후변화 등으로부터 취약계층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도국의 적극적인 참여만이 지구촌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임.</li> </ul>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영역	중요한 분야	
				분야	이유
34	에너지 경제 연구원	전력 정책 연구 본부	국가적 (우리 나라) 차원	7.3 에너지 효율 증대 13. 1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우리나라 여건에서 기후변화협약을 보다 비용 효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 으며, 동시에 에너지효율 시장을 통 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 또한 최근 이상 기후가 빈번하게 발 생하면서 기후로 인한 재화가 늘어나 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도 시급함.
			세계 차원	7.2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9.5 연구개발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 대되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 는 것이며, 세계적인 공동 연구개발 을 통해 청정에너지 기술의 진보를 보다 앞당기는 것이 필요함.
35	에너지 경제 연구원	전력 정책 연구 본부	국가적 (우리 나라) 차원	4.7. 지속가능발전 교육	우리나라의 인프라 및 경제 수준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지속가능발전 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수준으로 판 단됨. 따라서 더 필요한 것은 국민 개 개인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생활에서부터 정부 지도자 선 출에 까지 이를 반영하고, 추구에 나 갈 수 있어야 할 것임.
			세계 차원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서는 우선 빈곤 문제 해결이 가장 시 급해 보임. 기후변화협상에 중국이 미온적이었던 것처럼 개발도상국의 경우 당장의 국가 경제가 더 중요한 문제이며, 특히 빈곤 문제가 심각한 국가의 경우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필 요성은 대단히 낮을 수 밖에 없음.
36	육아 정책 연구소	아동 패널 연구팀	국가적 (우리 나라) 차원	13.2(기후변화 대책을 국가정책에 통합)	국가가 기후변화에 대한 책무성을 가 지고 정책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함.
			세계 차원	7.2(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전 세계적으로 동참해야 그 효과가 커질 것임.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영역	중요한 분야	
				분야	이유
37	육아 정책 연구소	국제 협력팀	국가적 (우리 나라) 차원	1.4	부동산 문제가 최근 첨예한 이슈입니다. 강력한 토지공개념 등을 중심으로 한 가치가 확산되지 않는 한 사회적 불안감은 계속 커져만 갈 것입니다.
			세계 차원	8.4, 8.1	세계 자원의 30~40%를 북아메리카에서 집중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구 자원의 고른 분배와 이에 따른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8	육아 정책 연구소	국제 협력팀	국가적 (우리 나라) 차원	13.3 교육 및 홍보	기후변화를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여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하여야 할 것임
			세계 차원	13. a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맞물린 기후변화로 악화될 수 있는 여러 생활환경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라고 봄.
39	육아 정책 연구소	국제 협력팀	국가적 (우리 나라) 차원	지속가능발전 교육	지속가능한 개발 및 라이프스타일, 인권, 성 평등, 평화 및 비폭력 문화는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는 우리 나라 교육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여겨짐.
			세계 차원	수생태계보호 및 복원	생태계 및 환경은 세계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보다 많은 국가들의 주의를 필요함.
40	한국 교통 연구원	미래 교통 전략 연구소	국가적 (우리 나라) 차원	영역(7.2 및 7.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인 에너지에 대한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기술 발전을 통해 에너지 안보 및 경제성 확보가 중요함
			세계 차원	영역(8.2 및 8.3)	기술 향상 및 혁신을 통해 저개발국가 또한 경제생산성 향상이 필요하고, 생산적 개발 정책활동이 촉진되어 일자리 창출 및 지속적 경제성장이 필요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영역	중요한 분야	
				분야	이유
41	한국 교통 연구원	도로 교통 본부	국가적 (우리 나라) 차원	7.2(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향후 에너지에 대한 Needs는 증가할 예정이지만 우리나라의 지리적 여건 상 불리하므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증 가시켜 증가하는 에너지 Needs에 대 비해야 함
			세계 차원	13.1(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향후 기후변화의 변동폭은 증가할 것 이며 이에 대한 자연재해 또한 증가 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적응 역량 강화 필요
42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농업· 농촌 정책 연구 본부	국가적 (우리 나라) 차원	10.2 나이, 성별, 장애, 인종에 관계 없는 사회-경제-정치 적 통합	우리사회에 만연한 기회 양극화와 그 로 인한 갈등
			세계 차원	2.4. 식량안보	기후변화, 기술발전 등에 따라 자연과 이를 배경으로 한 생산활동의 사회적 경제적 중요성이 증가
43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농림 산업 정책 연구 본부	국가적 (우리 나라) 차원	12 (12.1 및 12.2)	◦ 지속가능성의 유지 및 확대가 가장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농식품에 대한 지속가능한 생산과 지속가능 한 소비가 우리 국가 차원에서 가 장 우선하는 과제라 생각
			세계 차원	13 (13.1 및 13.2)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이 전지구적, 세계적 차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다 루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영역	중요한 분야	
				분야	이유
44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농림 산업 정책 연구 본부	국가적 (우리 나라) 차원	영역(13.1 및 2.4)	잠재적인 향후 자연재해, 생태계 변화 등 기후변화와 관련한 위험요소 극복을 위한 적응능력 강화와 이를 통한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농업부문에 대한 정부의 정책수립 필요
			세계 차원	영역(2.1 및 2.4)	세계 모든 인구가 충분한 식량을 적정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전 지구적인 식량안보 확보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최빈국을 포함한 개도국, 선진국 간의 실질적인 식량안보를 위해 중장기 식량 수급 목표 설정과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구체적인 플랜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45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농림 산업 정책 연구 본부	국가적 (우리 나라) 차원	10.3. 평등한 기회보장 및 소득으로 인한 불평등 감소	경제발전과 함께 계층 간 절대적·상대적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음. 취약 계층의 경우 다방면에서 공정한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으면서 경제사회적 지위가 고착되고 이것이 다시 취약계층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등 악순환에 빠질 수 있음. 향후 저성장 시대에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보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세계 차원	8.2. 기술적 향상 및 혁신을 통한 경제 생산성 향상 달성	국가 간 경제적 불균형은 국가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개도국에서의 다양한 경제적 문제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등으로 다양한 문제를 촉발시킴. 개도국의 경제적 문제가 고착되지 않도록 기술적 향상, 혁신을 유발할 수 있는 지원이 국제적 연계·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영역	중요한 분야	
				분야	이유
46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농림 산업 정책 연구 본부	국가적 (우리 나라) 차원	11.5.	빈곤층이나 취약계층 일수록 수해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음
			세계 차원	17.1	개도국에 대한 재원 동원 강화를 통해 개도국의 공적개발원조 규모 확대가 가능함
47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농림 산업 정책 연구 본부	국가적 (우리 나라) 차원	13.1	이는 기후변화 대응에 필수적인 항목임. 특히 기후변화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만의 정책으로는 그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국내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함.
			세계 차원	13.a 13.b	최빈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은 물, 에너지, 자원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를 촉진시키며 이는 기후변화를 더욱 가속화 시킬 수 있음. 또한 이러한 산업화는 빈곤층의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떨어뜨릴 수 있다.
48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농림 산업 정책 연구 본부	국가적 (우리 나라) 차원	7.2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9.4 정정기술 채택 12.1 지속가능 소비, 생산 관련 10년 계획	앞에서 서술하였으므로 생략
			세계 차원	1.5 기후변화 등으로부터 취약계층 보호 2.4 식량 안보 14.2 해양생태계 보호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필요 식량 위기에 대한 대비 필요 지속가능한 생산 방식 고려, 기아층 고려 바다는 계속해서 심각한 파괴가 진행되므로 더 늦기 전에 보호 필요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영역	중요한 분야	
				분야	이유
49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국제 농업 개발 협력 센터	국가적 (우리 나라) 차원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효율성 증대	기후변화는 에너지 사용과 가장 직접 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아직 재생에너지 비중이 매우 낮음.
			세계 차원	기아 및 빈곤 경감과 궁극적 해소	기아, 빈곤은 자원배분의 불평등에서 기인함. 불평등은 지속가능성을 근본 적으로 저해하는 요인임.
50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국제 농업 개발 협력 센터	국가적 (우리 나라) 차원	13.1	기후 관련 긴급 재난대응 및 증가하 는 장기적, 복합적 재해에 대한 국가 적 대응 능력 개선이 필요
			세계 차원	9.1, 9.a	개도국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의 근간이 되는 기술, 재정 지원뿐 아니 라 환경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산업 발 전 도모가 필요
51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연구 기획 조정실	국가적 (우리 나라) 차원	13.2. 기후변화 대책을 국가정책에 통합	기후변화는 보건의료, 사회, 경제, 복 지, 환경 등 전 영역에 걸쳐 국가와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므로 통합적 관점의 정책계획 수립 및 아젠다 설 정 필요
			세계 차원	17.16.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 성을 지원하 기 위해 복수 이해관계자 파트너십을 통하여 지식 공유, 기술 및 재정지원 등 글로벌 파트 너십을 강화	기후변화는 현재 모든 국가에서의 일 어나고 있는 중요한 이슈일뿐만 아니 라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임. 따라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각 국가별 지속가능개발 목표를 달성 하도록 지속 협력 필요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영역	중요한 분야	
				분야	이유
52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보건 의료 연구실	국가적 (우리 나라) 차원	인권 평화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변화와 정치경제적 혼란으로 이주민과 난민의 유입은 증가할 전망이다.</li> <li>- 인구문제해결을 위해 이주민, 난민에 대한 시민권 부여를 심도있게 다루어야 함.</li> </ul>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주민노동자의 인권 보호, 환경보호 등의 노력이 지원되어야 함.
			세계 차원	국제협력	기후변화와 정치경제적 갈등속에서 세계적인 인권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의 노력은 더 강화되어야 함.
53	한국 해양 수산 개발원	수산 정책 연구실	국가적 (우리 나라) 차원	14.2 해양생태계 보호	2020년까지 회복력 및 복원활동을 강화하여 해양 및 연안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 및 보호 조치 실행
			세계 차원	14.1 해양오염 예방 및 감소	2025년까지 해양 폐기물과 영양분 오염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해양 오염 방지 및 감소
54	서울 연구원	안전 환경 연구실	국가적 (우리 나라) 차원	13.1	-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가 구체화된 후 전략 및 계획에 통합 가능
			세계 차원	13.a	지구차원에서는 개도국의 참여유도가 중요
55	한국 과학 기술 기획 평가원	R&D평가센터	국가적 (우리 나라) 차원	9.5 연구개발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성장이 여전히 요구되는 시점에 연구개발을 통해 환경 보호와 경제성장을 병행할 수 있음
			세계 차원	17.6 지식공유	개도국과 함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선진국의 지식공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후 기술이전(17.7) 등 좀 더 구체적인 활동이 요구됨

응답자	기관명	부서명	영역	중요한 분야	
				분야	이유
56	한국 과학 기술 연구원	고온 에너지 재료 연구 센터	국가적 (우리 나라) 차원	13.2	기후 변화 대응 및 에너지 관련 이슈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움.
			세계 차원	13.a, 13.b	전세계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어 자발적-도의적 참여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개도국 및 최빈국의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강력한 경제적 지원 필요
57	한국 환경 정책 평가 연구원	미래환경 연구 본부	국가적 (우리 나라) 차원	13.2	기후변화 정책의 주류화 및 내재화를 통해 정책 부합성 제고 필요
			세계 차원	1.2	개인 및 가구와 더불어 집합적 측면에서 근린과 도시(지역) 수준의 기후 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필요

##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 수립에 관한 연구”을 위한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1차 델파이 조사 설문에 참여해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차 조사에서 보내주신 의견을 정리하여 이번 2차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1차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셨더라도 2차 설문에 응답이 가능합니다.)

2차 조사 설문은 조사에 참여해주신 선생님들께서 제안해주신 어젠다에 대한 등급을 정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나열방식은 조사에 참여해주신 선생님들의 의견을 사례수가 많은 순서에 따라 나열하였으며 동수의 어젠다인 경우에는 가나다 순서대로 나열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선정된 어젠다는 이후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 수립에 관한 연구”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결과를 통계처리 하여 제도 개선안 마련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는 간단하게 등급만 정하는 방식입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셔서 귀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8년 월

## 2차 델파이조사

지속가능발전은 국내외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성장 전략으로 각종 정책과 제도 수립에 있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15년 파리협정 이후 190여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는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각국의 목표와 이행방안 수립에 있어 우리나라 또한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많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국내에서 다루어야 할 항목과 이 중 기후변화는 어느 정도의 위치나 수준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관한 각계 각층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차 델파이조사 질문에 대한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수렴, 종합한 2차 델파이조사 설문지입니다. 각 항목을 읽으시고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중요 어젠다 5개(경제, 사회, 환경 중 구분 없이 5개, 총 85개 항목 중 5개 선택)에  $\sqrt{\text{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빈도(n)는 1차 델파이조사 결과 나타난 의견 중 언급된 횟수입니다.



# 경제, 사회, 환경 분야 총 85개 항목 중 분야 상관없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항목 5개만 체크해 주십시오.

분야	항목	빈도 (n)	체크 (V)	항목	빈도 (n)	체크 (V)
경제	청년 등 일자리 창출	18		국고보조금 개편 방안	1	
	소득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 해소	17		국민발안 제도 도입	1	
	저출산 대책 마련	13		국정운영개선 방안	1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	12		교육의 공공성 확립	1	
	가계부채 해소	11		교육제도 개편	1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	11		대학 등 각급 교육기관 재정비	1	
	민주주의 가치 회복	11		대학자율화	1	
	재벌중심 경제구조 개혁	10		민유방본(민유방본)사상의 천명	1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8		북한 민주화	1	
	공교육 강화 사교육비 절감	8		사회적 규제의 강화	1	
	경제활성화	7		예산 배분 효율성 제고 시스템 구축	1	
	보육지원 강화	5		예산집행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감사체계 강화	1	
	세대갈등 완화	4		지방교부세 개편 방안	1	
	잠재성장율 제고	4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부 재정 지원 방식의 변화	1	
	국민복지 증진	3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연계 통합	1	
	방산비리 등 국비리 근절	3		지방분권 국가 구현	1	
	삶의 질 향상	3		지방분권 실현 및 지방자치 정착	1	

분야	항목	빈도 (n)	체크 (v)	항목	빈도 (n)	체크 (v)
	경기침체, 투자부진 대책 마련	3		제왕적 대통령과 고위공직자 견제장치 도입	1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기반 조성	3		투명한 의사결정	1	
	언론개혁	2		합리적 권한배분	1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의 방향	1		헌법 개정	1	
	국가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및 보강	1		현재 대외관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외교팀 구성	1	

분야	항목	빈도 (n)	체크 (v)	항목	빈도 (n)	체크 (v)
사회	공정사회 구현	19		지역간 균형발전	4	
	미래 먹거리 창출	17		기후변화 대응	4	
	강소기업 육성	15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산업 발굴	3	
	국가 경쟁력 확보	14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수출구조 개혁	3	
	젊은 인재 양성	12		안전사회 구현	3	
	교육개혁	10		외교 및 대외협력 역량 강화	2	
	소상공인 지원	10		공교육 및 직업교육의 강화	2	
	권력형 비리 근절	10		공기업 관리 방안 개편	2	
	정부개혁과 행정혁신	7		교육연구투자 확대와 기초학문 육성	2	
	분권과 자치의 강화	7		경제체질 개혁과 혁신형 창업생태계 육성	1	
	대북정책 원칙 마련과 남북관계 개선	5		기후변화 적응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1	
	투명한 기업경영환경 구축	5		다문화 사회 대비동북아 경제공동체	1	
	장기 구조적 실업 문제 해소	5		대학 교육 정책 전환	1	

분야	항목	빈도 (n)	체크 (V)	항목	빈도 (n)	체크 (V)
환경	성과 중심으로의 정부혁신 (행정개혁)	1		주민자치의 내실화	1	
	신냉전 시대의 대한민국 생존과 번영 모색	1		지방 분권 형 개헌	1	
	ODA 사업 수행 방식 개편	1		지방재정분권	1	
	인구안정 기반 국가비전 수립	1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성장	1	
	자주국방 구축	1		투명 사회 구현	1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 구현	1		통일시대를 대비한 비용부담 공감대 형성	1	
	전 정부조직에 총액인건비제도 적용	1		혁신형 사회복지 국가	1	
	정부예산법(법률)의 시행	1				

## 2차 전문가 조사 결과

분야	항목	1차 빈도	2차 빈도	항목	1차 빈도	2차 빈도
경제	청년 등 일자리 창출	18	18	국고보조금 개편 방안	1	0
	소득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 해소	17	27	국민발안 제도 도입	1	0
	저출산 대책 마련	13	14	국정운영개선 방안	1	0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	12	5	교육의 공공성 확립	1	1
	가계부채 해소	11	1	교육제도 개편	1	1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	11	14	대학 등 각급 교육기관 재정비	1	2
	민주주의 가치 회복	11	1	대학자율화	1	1
	재벌중심 경제구조 개혁	10	4	민유방본(민유방본)사상의 천명	1	0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8	2	북한 민주화	1	0
	공교육 강화 사교육비 절감	8	3	사회적 규제의 강화	1	0
	경제활성화	7	11	예산 배분 효율성 제고 시스템 구축	1	3
	보육지원 강화	5	0	예산집행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감사체계 강화	1	1
	세대갈등 완화	4	0	지방교부세 개편 방안	1	0
	잠재성장율 제고	4	2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부 재정 지원 방식의 변화	1	0
	국민복지 증진	3	3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연계 통합	1	0
	방산비리 등 국비리 근절	3	0	지방분권 국가 구현	1	1
	삶의 질 향상	3	6	지방분권 실현 및 지방자치 정착	1	0
	경기침체, 투자부진 대책 마련	3	3	제왕적 대통령과 고위공직자 견제장치 도입	1	0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기반 조성	3	5	투명한 의사결정	1	2	

분야	항목	1차 빈도	2차 빈도	항목	1차 빈도	2차 빈도
	언론개혁	2	1	합리적 권한배분	1	0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의 방향	1	1	헌법 개정	1	0
	국가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및 보강	1	2	현재 대외관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외교팀 구성	1	0

분야	항목	1차 빈도	2차 빈도	항목	1차 빈도	2차 빈도
사회	공정사회 구현	19	20	지역간 균형발전	4	6
	미래 먹거리 창출	17	11	기후변화 대응	4	16
	강소기업 육성	15	5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산업 발굴	3	1
	국가 경쟁력 확보	14	6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수출구조 개혁	3	0
	젊은 인재 양성	12	0	안전사회 구현	3	5
	교육개혁	10	7	외교 및 대외협력 역량 강화	2	1
	소상공인 지원	10	0	공교육 및 직업교육의 강화	2	2
	권력형 비리 근절	10	3	공기업 관리 방안 개편	2	0
	정부개혁과 행정혁신	7	4	교육연구투자 확대와 기초학문 육성	2	2
	분권과 자치의 강화	7	0	경제체질 개혁과 혁신형 창업생태계 육성	1	0
	대북정책 원칙 마련과 남북관계 개선	5	3	기후변화 적응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1	12
	투명한 기업경영환경 구축	5	0	다문화 사회 대비동북아 경제공동체	1	0
	장기 구조적 실업 문제 해소	5	0	대학 교육 정책 전환	1	0

분야	항목	1차 빈도	2차 빈도	항목	1차 빈도	2차 빈도
환경	성과 중심으로의 정부혁신 (행정개혁)	1	1	주민자치의 내실화	1	1
	신냉전 시대의 대한민국 생존과 번영 모색	1	1	지방 분권 형 개헌	1	0
	ODA 사업 수행 방식 개편	1	1	지방재정분권	1	0
	인구안정 기반 국가비전 수립	1	0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성장	1	1
	자주국방 구축	1	0	투명 사회 구현	1	0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 구현	1	4	통일시대를 대비한 비용부담 공감대 형성	1	1
	전 정부조직에 총액인건비제도 적용	1	0	혁신형 사회복지 국가	1	1
	정부예산법(법률)의 시행	1	0			

## 3차 델파이조사

### 제 1 장 조사 개요

#### I. 조사 배경 및 목적

- 기후변화가 단지 환경에 관한 관리와 보존의 문제가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 보존과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적·제도적 대안의 마련은 전지구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필수과제라 할 것
- 이에 본 연구원에서는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 수립에 관한 연구” 라는 과제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의 대응을 위한 국내 법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하고 수행
- 본 연구를 통해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실효성있는 제도 마련을 위하여 정부가 갖추어야 할 역할, 역량, 정책간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향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자 함.
- 본 연구는 3차에 걸쳐 델파이 방식으로 정책결정이나 사업기획을 위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고안된 조사방법의 하나로 진행함.

#### II. 과업의 내용

- 조사대상 : 대학교, 공무원, 연구기관 전문가
- 조사내용 : 지속가능성, 지속가능발전, SDGs 관련 AHP조사



구분	빈도	퍼센트
정치/경제	18	43.9
사회/복지	5	12.2
과학/기술	7	17.1
교육/문화	2	4.9
노동/환경	9	22.0
전체	41	100.0

### Ⅲ. AHP조사 개요

□ 본 조사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을 이용하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생활인프라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더 중요한지를 분석하고자 실시됨

#### ■ AHP의 개요

- AHP는 한명 혹은 여러 명의 의사결정자가 참여하는 '다기준 의사결정(Multiple-criteria Decision-making)' 문제에서 평가기준과 고려되는 평가항목들을 계층화한 다음, 평가 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여 사업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적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임.
- AHP는 대안들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으로 대안들이나 평가기준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척도로 평가하여 최종적인 중요도를 도출함
- AHP는 정성적이거나 정량적인 평가기준을 처리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의 중요도가 되는 쌍비교 행렬의 고유벡터 (Eigenvector)와 판단의 일관성을 측정하는 일관성 비율 (Consistency ratio, CI)이 주요 특징임.
- 자료가 완비되지 않은 여건하에 계획수립을 가능케 하며, 시간적으로 촉박한 상황 하에서 의사결정을 지원함.

## ■ AHP의 공리

- AHP 분석 시 다음과 같은 공리를 만족시켜야 하며, 본 과업은 다음의 AHP의 공리를 모두 충족함.

공리	내용
1. 이원비교 (reciprocal comparis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사결정자의 두 대상에 대한 이원비교가 반드시 가능해야 하며, 중요성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함. 이 중요성의 정도는 반드시 역조건을 성립시켜야 함. 즉 A가 B보다 x배 중요하다면, B는 A보다 1/x배 중요시되어야 함.</li> </ul>
2. 동질성 (homogene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요성의 정도는 한정된 범위 내의 정해진 척도(bounded scale)를 통해 표현되어야 함.</li> </ul>
3. 독립성 (independ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대적인 중요도를 평가하는 요인들은 특성이나 내용 측면에서 서로 관련성이 없어야 함.</li> </ul>
4. 기대성 (expec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층구조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완전하게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함.</li> </ul>

## ■ 중요도 측정방법

- AHP기법을 적용하여 쌍대비교를 통해 기중치 산출함. 본 조사에서는 4점 척도를 사용함

척도	1	2	3	4
용어	동등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설명	동등하게 중요 (equal)	약간 더 중요 (weak)	더 중요 (strong)	대단히 더 중요 (very strong)

**예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제도 수립 평가 기준」이라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A)’과 ‘저출산 대책 마련(B)’을 비교할 때 ‘일자리 창출(A)’이 대단히 더 중요(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척도 ‘4’에 ‘○’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측정 항목(A)	← A가 더 중요			동등 (=)	B가 더 중요→			측정 항목(B)
	매우중요	중요	약간 중요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일자리창출	④V	③	②	①	②	③	④	저출산 대책 마련

### ■ 일치성 지수

- AHP 분석을 할 경우는 쌍대비교를 통해 얻어진 행렬의 논리적 모순성 정도를 검증하기 위해 일관성을 측정해야함.
- 일치성 지수(CI)는 비교수행자가 얼마만큼의 일관성을 가지고 결과를 적었는지 보여주는 지표임
- 통상 CI가 0.1 이상이면 응답자의 답변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보며, 0.1 미만인 경우에 응답자의 답변을 신뢰할 수 있다고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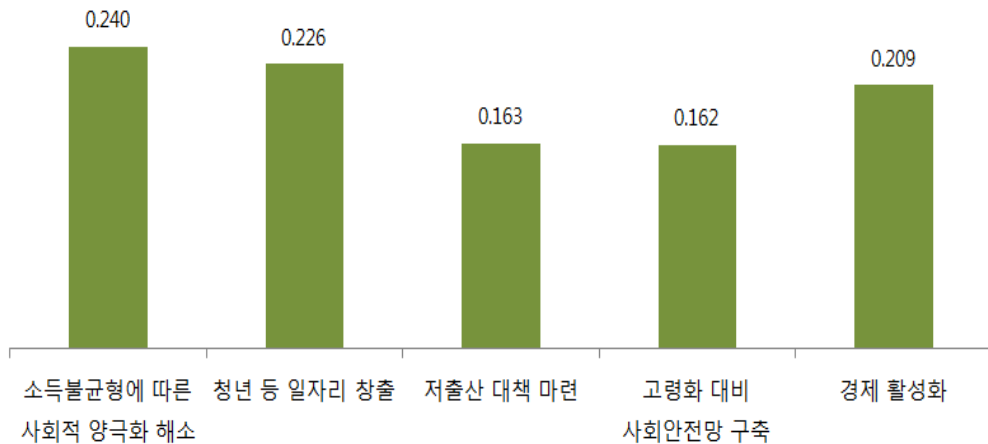
## 3차 전문가 조사 결과

## 제2장 AHP 조사 결과

### 1. 경제분야

- ‘경제분야’의 소득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 해소, 청년 등 일자리 창출, 저출산 대책 마련,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 경제 활성화 5가지 항목의 중요도 결과, 소득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 해소가 0.240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 등 일자리 창출이 0.226, 경제 활성화가 0.2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1> 경제분야 중요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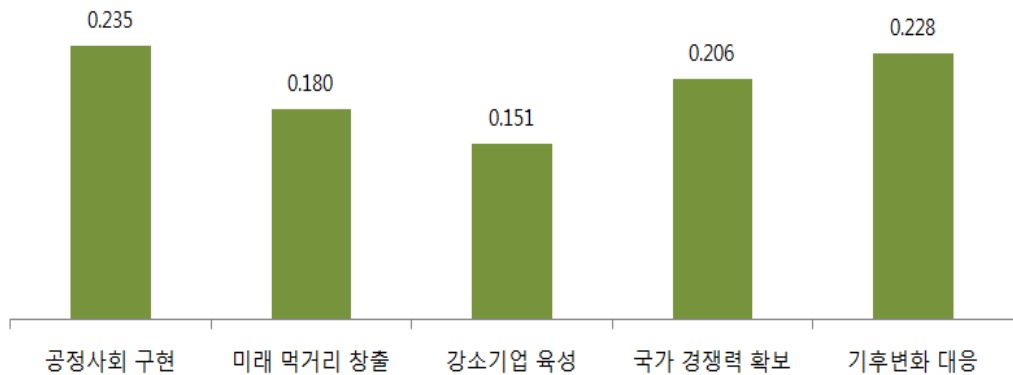
측정항목	중요도	우선순위
소득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 해소	0.240	1
청년 등 일자리 창출	0.226	2
저출산 대책 마련	0.163	4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	0.162	5
경제 활성화	0.209	3

\* 일관성지수(CI) 평균 : 0.0448

## II. 사회분야

- ‘사회분야’의 공정사회 구현, 미래 먹거리 창출, 강소기업 육성, 국가 경쟁력 확보, 기후변화 대응 5가지 항목의 중요도 결과, 공정사회 구현이 0.23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0.228, 국가 경쟁력 확보가 0.206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2> 사회분야 중요도 결과



측정항목	중요도	우선순위
공정사회 구현	0.235	1
미래 먹거리 창출	0.180	4
강소기업 육성	0.151	5
국가 경쟁력 확보	0.206	3
기후변화 대응	0.228	2

\* 일관성지수(CI) 평균 : 0.0369

## [부 록] AHP 결과 및 설문지

No	소득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 해소	청년 등 일자리 창출	저출산 대책 마련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	경제 활성화	CI
1	0.222	0.111	0.222	0.222	0.222	0.0000
2	0.415	0.258	0.087	0.152	0.087	0.0091
3	0.490	0.064	0.142	0.213	0.090	0.0646
4	0.118	0.192	0.275	0.160	0.255	0.0992
5	0.192	0.214	0.107	0.228	0.259	0.0401
6	0.256	0.405	0.173	0.064	0.102	0.0478
7	0.244	0.220	0.120	0.196	0.220	0.0255
8	0.324	0.248	0.105	0.186	0.138	0.0489
9	0.161	0.271	0.365	0.083	0.121	0.0475
10	0.164	0.098	0.069	0.257	0.411	0.0287
11	0.101	0.328	0.139	0.243	0.188	0.0742
12	0.251	0.084	0.132	0.367	0.165	0.0401
13	0.104	0.079	0.491	0.140	0.187	0.0489
14	0.064	0.406	0.282	0.090	0.158	0.0313
15	0.122	0.216	0.122	0.086	0.454	0.0890
16	0.483	0.168	0.137	0.116	0.096	0.0748
17	0.072	0.309	0.222	0.154	0.243	0.0786
18	0.062	0.130	0.467	0.179	0.163	0.0730
19	0.132	0.192	0.123	0.271	0.282	0.0302
20	0.129	0.396	0.083	0.188	0.204	0.0712
21	0.394	0.085	0.085	0.212	0.223	0.0369
22	0.311	0.170	0.076	0.180	0.263	0.0204
23	0.187	0.187	0.109	0.187	0.332	0.0147
24	0.192	0.223	0.125	0.166	0.295	0.0488
25	0.291	0.447	0.099	0.080	0.084	0.0675
26	0.289	0.373	0.146	0.118	0.074	0.0716
27	0.106	0.219	0.219	0.091	0.364	0.0147
28	0.339	0.203	0.108	0.124	0.227	0.0921
29	0.146	0.372	0.109	0.136	0.237	0.0244
30	0.138	0.308	0.091	0.066	0.397	0.0815
31	0.296	0.091	0.069	0.350	0.194	0.0529
32	0.340	0.184	0.245	0.095	0.137	0.0367



No	소득불균 형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 해소	청년 등 일자리 창출	저출산 대책 마련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 망 구축	경제 활성화	CI
33	0.415	0.258	0.152	0.087	0.087	0.0091
34	0.260	0.351	0.119	0.125	0.145	0.0451
35	0.396	0.124	0.117	0.083	0.281	0.0261
36	0.250	0.250	0.125	0.125	0.250	0.0000
37	0.084	0.273	0.360	0.111	0.172	0.0326
38	0.384	0.174	0.082	0.247	0.113	0.0446
39	0.128	0.370	0.110	0.208	0.183	0.0139
40	0.415	0.087	0.152	0.087	0.258	0.0091
41	0.355	0.123	0.133	0.165	0.224	0.0727

No	공정사회 구현	미래 먹거리 창출	강소기업 육성	국가 경쟁력 확보	기후변화 대응	CI
1	0.250	0.125	0.250	0.125	0.250	0.0000
2	0.415	0.152	0.087	0.258	0.087	0.0091
3	0.457	0.080	0.143	0.106	0.215	0.0521
4	0.125	0.166	0.142	0.142	0.425	0.0146
5	0.288	0.142	0.107	0.218	0.245	0.0292
6	0.192	0.191	0.139	0.419	0.059	0.0788
7	0.125	0.398	0.133	0.077	0.267	0.0181
8	0.315	0.194	0.194	0.102	0.194	0.0917
9	0.135	0.298	0.086	0.420	0.061	0.0479
10	0.180	0.162	0.130	0.459	0.069	0.0391
11	0.281	0.092	0.281	0.158	0.187	0.0293
12	0.222	0.124	0.078	0.182	0.394	0.0577
13	0.087	0.130	0.063	0.484	0.236	0.0851
14	0.085	0.410	0.163	0.268	0.074	0.0207
15	0.076	0.111	0.076	0.251	0.486	0.0780
16	0.364	0.091	0.091	0.091	0.364	0.0000
17	0.087	0.125	0.223	0.238	0.327	0.0261

No	공정사회 구현	미래 먹거리 창출	강소기업 육성	국가 경쟁력 확보	기후변화 대응	CI
18	0.174	0.309	0.080	0.324	0.112	0.0147
19	0.221	0.133	0.303	0.155	0.189	0.0728
20	0.144	0.070	0.176	0.186	0.424	0.0645
21	0.298	0.089	0.158	0.158	0.298	0.0033
22	0.279	0.088	0.262	0.117	0.253	0.0247
23	0.133	0.252	0.170	0.279	0.166	0.0401
24	0.195	0.260	0.128	0.195	0.221	0.0292
25	0.099	0.452	0.213	0.122	0.113	0.0971
26	0.266	0.093	0.067	0.132	0.442	0.0537
27	0.291	0.180	0.086	0.317	0.125	0.0195
28	0.350	0.186	0.114	0.163	0.186	0.0130
29	0.107	0.365	0.241	0.180	0.107	0.0181
30	0.087	0.076	0.366	0.291	0.180	0.0509
31	0.231	0.231	0.121	0.231	0.186	0.0917
32	0.344	0.210	0.096	0.210	0.139	0.0219
33	0.369	0.206	0.206	0.109	0.109	0.0033
34	0.475	0.108	0.108	0.108	0.201	0.0050
35	0.115	0.230	0.122	0.122	0.412	0.0033
36	0.369	0.109	0.109	0.206	0.206	0.0033
37	0.147	0.195	0.223	0.145	0.290	0.0340
38	0.222	0.060	0.099	0.132	0.486	0.0803
39	0.332	0.094	0.094	0.332	0.147	0.0195
40	0.298	0.298	0.089	0.158	0.158	0.0033
41	0.388	0.085	0.170	0.082	0.275	0.0689

설문지 번호

--	--	--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 수립에 관한 연구” 를  
위한 3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설문**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1차와 2차 델파이 조사 설문에 참여해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차와 2차 조사에서 보내주신 의견을 정리하여 이번 3차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1차와 2차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셨더라도 3차 설문에 응답이 가능합니다.)

3차 조사 설문은 조사에 참여해주신 선생님들께서 제안해주신 어젠다에 대한 중요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중요도 산출을 위해 AHP 설문 방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산출된 어젠다의 중요도는 이후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 수립에 관한 연구” 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결과를 통계처리 하여 제도 개선안 마련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셔서 귀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다시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8년    월

**[보내주실 곳 및 문의처]**

※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전송하시면 됩니다.(팩스 전송시 확인 전화 요망)

지속가능발전은 국내외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성장 전략으로 각종 정책과 제도 수립에 있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15년 파리협정 이후 190여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는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각국의 목표와 이행방안 수립에 있어 우리나라 또한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많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국내에서 다루어야 할 항목과 이 중 기후변화는 어느 정도의 위치나 수준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관한 각계 각층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 1.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제도 수립 중요도 평가 (AHP) 방법

이 조사는 평가항목 간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여 각 항목별 중요도(가중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 설문 응답 방법

◀ 본 설문에서 사용되는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평가척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척도	1	2	3	4
용어	동등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설명	동등하게 중요 (equal)	약간 더 중요 (weak)	더 중요 (strong)	대단히 더 중요 (very strong)

예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제도 수립 평가 기준」이라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A)'과 '저출산 대책 마련(B)'을 비교할 때 '일자리 창출(A)'이 대단히 더 중요(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척도 '4'에 '○'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측정 항목(A)	평가 척도							측정 항목(B)
	A가 더 중요함	동등	B가 더 중요함					
일자리 창출	④	3	2	1	2	3	4	저출산 대책 마련

## II.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제도 수립 평가 기준에 대한 가중치 파악

- 1) 경제분야 : 소득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 해소, 청년 등 일자리 창출, 저출산 대책 마련,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 경제 활성화 등 5가지 항목
- 1) 사회분야 : 공정사회 구현, 미래 먹거리 창출, 강소기업 육성, 국가 경쟁력 확보, 기후변화 대응 등 5가지 항목

【문1】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제도 수립에 관한 평가 기준’ 중 **경제분야**에서 어떤 기준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 평가해 주십시오.

측정 항목(A)	평가 척도								측정 항목(B)
	A가 더 중요함		동등		B가 더 중요함				
【문1】	소득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 해소	4	3	2	1	2	3	4	청년 등 일자리 창출
【문2】		4	3	2	1	2	3	4	저출산 대책 마련
【문3】		4	3	2	1	2	3	4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
【문4】		4	3	2	1	2	3	4	경제 활성화
【문5】	청년 등 일자리 창출	4	3	2	1	2	3	4	저출산 대책 마련
【문6】		4	3	2	1	2	3	4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
【문7】		4	3	2	1	2	3	4	경제 활성화
【문8】	저출산 대책 마련	4	3	2	1	2	3	4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
【문9】		4	3	2	1	2	3	4	경제 활성화
【문10】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	4	3	2	1	2	3	4	경제 활성화

【문2】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제도 수립에 관한 평가 기준’ 중 사회분야에서 어떤 기준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 평가해 주십시오.

측정 항목(A)		평가 척도							측정 항목(B)
		A가 더 중요함			동등	B가 더 중요함			
【문1】	공정사회 구현	4	3	2	1	2	3	4	미래 먹거리 창출
【문2】		4	3	2	1	2	3	4	강소기업 육성
【문3】		4	3	2	1	2	3	4	국가 경쟁력 확보
【문4】		4	3	2	1	2	3	4	기후변화 대응
【문5】	미래 먹거리 창출	4	3	2	1	2	3	4	강소기업 육성
【문6】		4	3	2	1	2	3	4	국가 경쟁력 확보
【문7】		4	3	2	1	2	3	4	기후변화 대응
【문8】	강소기업 육성	4	3	2	1	2	3	4	국가 경쟁력 확보
【문9】		4	3	2	1	2	3	4	기후변화 대응
【문10】	국가 경쟁력 확보	4	3	2	1	2	3	4	기후변화 대응

### Ⅲ. 응답자 특성

#### ※ 응답자 현황(필수기재 항목임)

성명		소속	
전문분야	① 정치/경제 ② 사회/복지 ③ 과학/기술 ④ 교육/문화 ⑤ 외교/안보 ⑥ 노동/환경		
e메일			
명단공개여부	(① 공개되어도 무방함. ② 공개되지 않기를 원함)		

### Ⅳ. 개인정보제공 동의

[별문] 답례품 발송을 위한 귀하의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① 동의함

②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안내]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주)GRI리서치		
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 수립에 관한 연구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휴대전화번호, 성명		
라.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조사완료 및 최종보고결과 보고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즉시 폐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답례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상품권 발송용입니다	휴대폰 번호	(            ) - (            ) - (            )
	성명	
귀하의 개인정보는 답례품 발송외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입력하신 휴대전화번호를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대전화 오입력으로 인한 답례품 미지급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의해서 정확하게 적어 주십시오.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후변화법제 연구 18-17-⑦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법제연구 : 제도  
-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법체계 개선방안 -

2018년 10월 28일 인쇄  
2018년 10월 31일 발행

발행인 | 이익현

발행처 |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전화 : (044)861-0300

등록번호 | 1981.8.11. 제2014-000009호

홈페이지 | <http://www.klri.re.kr>

값 8,000원

1. 본원의 승인없이 전재 또는 역재를 금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 978-89-6684-918-5 93360



---

**저자명**

김 은 정

**학 력**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  
(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실적 및 논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후변화협약 이행방안  
연구 (2017)

The Implementation of Climate Change Mitigation  
Policy after Paris Agreement (2016)

Post-기후변화협정에 대비한 신 에너지시장  
환경조성을 위한 법·경제적 연구 (2016)

에너지가격규제에 관한 법·경제적 융합 연구  
(2015)

EU 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 정책에 관한 연구  
(2015)

탄소배출권의 회계처리 방식과 후생효과에 관한  
연구 (2014)

GCF의 운영제도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14)

기후변화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연구  
(2013)

국제 탄소시장의 현황과 향후 전망에 관한 연구  
(2012)

국제탄소시장 연계에 대비한 법제 연구 (2012)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시장 연계가능성에 관한  
연구 (2012)

#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법제연구 : 제도

##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법체계 개선방안

**KLRI**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ISBN 978-89-6684-918-5

값 8,000원